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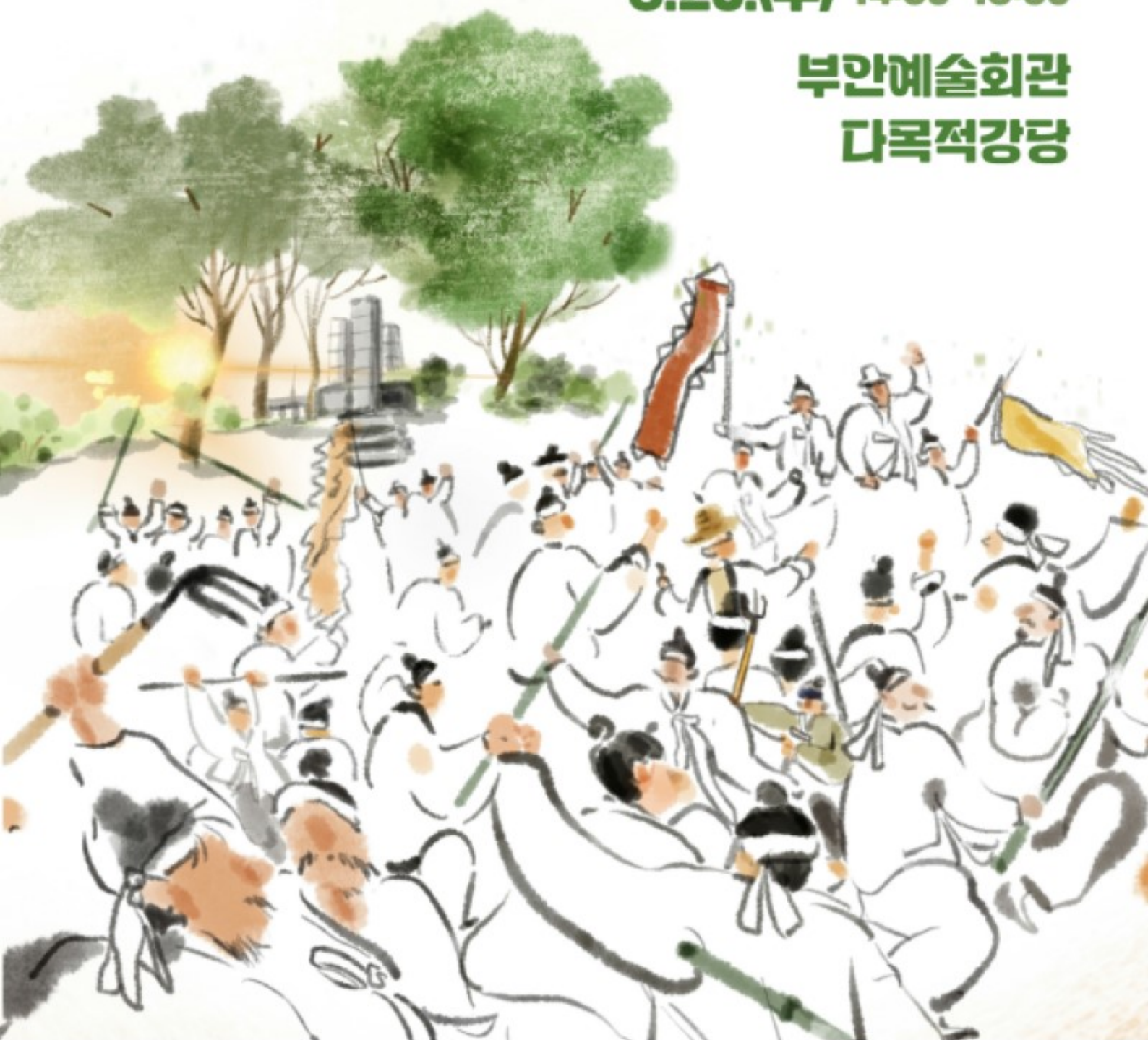
2 0 2 5 년 부 안 동 학 농 민 혁 명 학 술 대 회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2025.

8.20.(수) 14:30~18:30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



주최_ 부안군 주관_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2 0 2 5 년 부 안 동 학 농 민 혁 명 학 술 대 회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30	[접수 및 등록]
14:30-14:50	[개회식] 사회: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권익현 (부안군수)
14:50-15:15	[기조강연]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강연: 신영우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5:15-15:40	[발표 1]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발표: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15:40-16:05	[발표 2]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발표: 유바다 (고려대학교 교수)
16:05-16:15	휴 식
16:15-16:40	[발표 3]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실체와 장소성 발표: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6:40-17:05	[발표 4] 근대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발표: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7:05-17:15	휴 식
17:15-18:30	[종합토론] 좌장: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토론: 홍성덕 (전주대학교 교수) 김대보 (원광대학교 교수) 조재곤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김경성 (부안문화원 사무국장)
18:30-	[폐회]

차례

[기조강연]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 신영우 7

1. 동학농민혁명 이해의 기준 / 8
2.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의 중요한 유산 / 8
3. '시민혁명의 전당'과 관련한 문제 / 10
4. 갑오년 항일전쟁의 의미 / 12
5. 세계로 가야 하는 부안 동학농민혁명 / 14

[발표 1]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 원도연 17

1. 백산성지와 부안 / 18
 2. 백산의 장소성과 시민혁명 / 19
 3.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의 현황과 활용 / 24
 4. 부안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방향과 활용 / 30
- 토론문 / 36

[발표 2]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 유바다 39

1. 머리말 / 40
 2. 전 세계 혁명에서 천명된 租稅法律主義와 罪刑法定主義 / 43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의 신분제 철폐, 租稅問題의 釐整 요구 / 53
 4. 백산대회 개최 경로 및 백산대회 격문에 대한 분석 : 저항권의 재확인 / 60
 5. 맺음말 / 63
- 토론문 / 65

[발표 3]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실체와 장소성 | 박준성 ————— **71**

- 1. 머리말 / 72
- 2. 백산대회의 실체 / 73
- 3. ‘백산대회’의 장소성 / 81
- 4. 맺음말 / 82
- 토론문 / 84

[발표 4]

**근대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 전경목 ————— **87**

- 1. 머리말 / 88
- 2. 근대전환기 부안현의 모습 / 88
- 3.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96
- 4. 맺음말 / 106
- 토론문 / 107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신영우(충북대학교 명예교수)

1. 동학농민혁명 이해의 기준

동학농민혁명사는 단계별로, 또 지역별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부안의 백산봉기가 갖는 중요성은 “앞으면 죽산(竹山), 서면 백산(白山)”이란 말로 잘 알려져 있다. 동학농민군은 처음 봉기할 때 무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수가 죽창을 들었지만 바로 관아에서 보관한 화승총이나 천보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면 죽산(竹山)”이란 말은 총이 없는 동학농민군이 다수였던 초기 상황을 보여준다. 백산봉기는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첫 단계를 말하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인식은 2023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에 기록물이 등재된 이후 크게 높아졌다. 이 사업의 명칭은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 MOW)’이다. 유네스코의 기록물 심사 기준을 보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성을 이해하는 관점을 알려준다.

첫째 동학농민혁명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록물이 세계의 중요한 유산으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 기록물은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기록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세계사의 중요한 장소의 정보와 함께 인류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의 정보를 전해준다는 점이다.

이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변화의 시기를 반영하는 시간성(Time) ②역사발전에 기여한 장소나 지역관련 정보(Place) ③역사에 기여한 개인의 업적(People) ④세계사의 주요 주제(Subject/Theme) ⑤형태나 스타일에 있어 표본(Form and Style) ⑥사회적, 정신적, 문화적 중요성(Social/Spiritual/Community Significance).

대체로 이러한 기준이 부안 백산의 세계시민혁명 전당에서 보여주는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동학농민혁명은 세계의 중요한 유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이는 역사가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의미이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시대에 따라 새롭게 연구되었고, 역사 사건의 설명도 현저히 달라졌다. 각 시대의 역사가가 해석한 성격이 왕조단계와 일제 침략을 받았던 단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대사건을 반란으로 보고 있지 않다. 왕조대의 용어 그대로 동학란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 전공자 중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한 집단행동을 의미하는 농민 봉기라는 용어를 쓰는 사례도 줄어들었다. 국사교과서의 용어에 따라 운동을 붙여서 동학운동이나 동학농민운동으로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 2004년 3월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흐름을 바꿔놓았다. 1994년 백주년기념사업 이후 동학농민혁명이란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특별법이 통과되자 공식 용어로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선정된 제목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다. 심사위원들은 등재 여부를 검토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내용을 살폈다. 신청서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설명한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동학농민혁명은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농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역사적 대사건이다. 1894년 4월부터 1895년 4월까지 혁명이 전개되었던 약 1년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이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왕조체제가 무너졌고,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도 해체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지향하였던 평등사회, 정의사회 등 여러 가치체계는 20세기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적 자산이 되었다.”

“안으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층에, 밖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며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의 농민들이 스스로 일으킨 역사적 대사건”인 사실을 공인했다는 것이다. 이 대사건은 혁명으로서 당시 지향하였던 평등사회와 정의사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19세기 이래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연표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 주요 연표(225년)

1801 ~ 1863	안동김씨 집권기 63년 / 1차 아편전쟁(1839~1842) 2차 아편전쟁(1856~1860)
1864 ~ 1873	흥선대원군 집권기 10년 / 양무운동(1861) 명치유신(1868)
1873 ~ 1895	여흥민씨 집권기 22년 - 1894년 동학농민혁명 7월 23일(일본군 경복궁 점령)
1895 ~ 1905	일제 침략기 10년
1905 ~ 1945	일제 강점기 40년 - 1919년 3.1운동
1945 ~ 1948	미소 군정기 3년 - 1945년
1948 ~ 1960	이승만정부 11년 9개월 - 1950 ~ 1953(한국전쟁)
1960 ~ 1962	민주당정부(장면 윤보선) 1년 7개월
1962 ~ 1979	박정희정부 17년 7개월
1979 ~ 1980	최규하 과도정부 10개월
1980 ~ 1988	전두환정부 7년 5개월
1988 ~ 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37년

한국 근현대사와 산업혁명 연표(225년)

1801 ~ 1863	안동김씨 집권기 63년 / 고려 최씨정권 4대 62년
1864 ~ 1873	흥선대원군 혁신 시도 10년 - 중화세계 일원
1873 ~ 1895	여흥민씨 집권기 22년 - 산업혁명 소외지역 - 세계질서 편입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 근대의 시작
1895 ~ 1905	일제 침략기 10년
1905 ~ 1945	일제 강점기 40년 - 세계 후진지역의 식민수탈 일제의 15년전쟁(1931~1945) : 만주사변 ~ 태평양전쟁
1945 ~ 1948	미소 군정기 3년 - 1945년
1948 ~ 1960	광복 군정 정부 수립 1950 ~ 1953(한국전쟁) : 세계 최빈국
1960 ~ 1962	민주당정부(장면 윤보선) 1년 7개월
1962 ~ 1979	박정희정부 17년 7개월 - 1차 2차 산업혁명
1979 ~ 1980	최규하 과도정부 10개월
1980 ~ 1988	전두환정부 7년 5개월 - 서울올림픽
1988 ~ 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37년 - 3차 산업혁명

동학농민혁명은 사회체제를 전환시킨 동력인 동시에 또한 근대사회의 방향을 제시한 대사건이었다. 조선의 양반 중심 신분제를 부정하고 스스로 신분 해방을 전개함으로서 근대 세계혁명의 특징인 평등사회를 지향한 대사건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놀랍게 발전했다고 말한다. 특히 일제 침략을 받아 망국 과정을 걸었던 한국에서 이런 발전은 경이롭다고 평한다. 이는 서구 선진국이 300여 년 걸쳐 이룩한 경제면의 성취를 불과 반세기 만에 이룩한 것에 한정해서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최근에는 사회와 문화면에서 발전한 모습을 보고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사회의 근대 전환이 시작된 사건이고, 또한 오늘의 경이로운 발전의 시작이다. 세계의 중요한 유산인 동학농민혁명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3. ‘시민혁명의 전당’과 관련한 문제

위키피디아 사전은 시민혁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시민혁명(市民革命)은 봉건제 또는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평등한 시민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적·사회적 변혁이다. 마르크스주의 사관에 따르면 이는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내지 근대 민족국가로의 역사적 이행기를 상징하며 주로 시민계급(bourgeoisie)에 의하여 수행되므로 부르주아혁명(영어: bourgeois revolution)이라고도 부른다.”

시민(市民)은 계급으로서 부르조아지를 가리키는 말이고, 조선사회에서 쓰던 시민(市民)은 저자거리에서 사고팔던 상인이란 뜻으로 매우 다르다. 사회 계급은 사람을 일정한 범주로 나누어 직업이나 재산, 교육과 사회 연결망에 따라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의 주체로 사용한 용어는 농민이었다. 조선사회에서 농민을 불러오던 용어는 농부 농군 작인 등 다양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는 스스로 신분과 토지에 묶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성격을 가졌다. 노비는 스스로 신분제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했다. 당시 달라진 위상이 계속 이어졌다고 해도 유럽의 농노해방에 비해서 많이 늦었다.

유럽의 농노 해방 시기

14세기 후반 - 스코틀랜드
 15세기~16세기 - 영국 웨일즈
 15세기 말 - 프랑스
 1781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1차 / 1848년 9월 7일 - 2차
 1788년 - 덴마크
 1807년 - 프러시아
 1861년 2월 19일 - 러시아

‘시민혁명의 전당’ 또는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이란 용어를 1894년의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용어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활동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역사 사건은 역사학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 접근해왔고, 사안에 따라 서로 수용하지 않는 내용도 있다.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의 세계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동학농민혁명과 백산집회, 그리고 세계 시민혁명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과 세계의 혁명을 함께 검토하는 학술발표회는 몇 차례 개최된 바 있다. 2017년 10월 전북대 인문역량강화사업으로 <세계 5대혁명의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열렸던 학술발표회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에서 일어난 혁명에 관해서 검토했다.

① 1970년대 프랑스에 있어 카미자르 항쟁(1702-1704)

② 독일의 농민전쟁(1524~1525) : 사실과 수용 그리고 새로운 접근

③ 동학농민혁명과 동아시아 사회의 변천 — 세계적 관점에서의 동학농민운동

④ 1920년대 한국 청년운동의 발전에 있어 러시아혁명의 영향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비교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각기 주요 내용만 정리한 것을 발표하였다. 시민혁명의 범주 안에서 본다면 이 발표회에는 제외해야 할 분야도 있었다.

시민혁명을 부르조아 시민이 국왕이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한 정치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유주의 신념 위에 민주주의를 지향한 변혁운동이다. 식민지나 예속국가에서는 독립전쟁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전형적인 형태는 영국의 명예혁명(1688)과 미국 독립혁명(1775~1783), 그리고 프랑스혁명(1789)이다. 세계 시민혁명 전당의 구성과 규모를 위해서는 서로 비교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시민혁명으로 설정해서 전당을 구성할 때 여러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 세계성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준으로 연구 실적을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시민혁명으로 메시지를 제시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

필자가 방문한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미국혁명박물관은 실감 나는 부조, 모형, 그림, 각종 실물 무기, 복장, 깃발, 문서, 패널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명확히 전해주고 있다.

- ① 자유를 위한 투쟁 ② 대표 없이 조세 없다. ③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④ 혁명 ⑤ 무기와 전투 ⑥ 남부의 전쟁 ⑦ 헌법 제정 ⑧ 왕이 없는 미국인의 삶
- ⑨ 미국혁명은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⑩ 미국에 집결하는 세계 자유인

4. 갑오년 항일전쟁의 의미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성은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서울 도성과 경복궁 장악, 그리고 내정간섭에 맞서 싸운 대규모 항일전쟁에서 확인된다. 구미의 시민혁명은 독립전쟁 성격을 띠지만 동학농민혁명은 항일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항일전쟁은 시민혁명 전당에서 중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

항일전쟁의 기록은 매우 많다. 갑오 9월 10일 진주성에 게시한 충청대도소의 방문에 “북쪽 3도는 모두 호적(胡賊, 청국)의 땅이 되었고, 남쪽 5도는 왜적(倭賊)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총과 검을 들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청국과 일본이 군대를 보내서 위기에 처한 실상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심각한 사태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스스로 막아내자는 주장이 전

국에서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이끌었다. 세계사상 정부군이 외세 침범에 대항하는 중심이 아니라 농민군이 나서서 물리치려고 한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봉기한 수십만 명의 동학농민군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갑오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종료되었다. 왜 실패하였는가? 무엇보다 무기의 열세가 현저했기 때문이었다.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은 오랜 내전으로 단련된 군대였다. 동학농민군은 민간에 있던 무기를 모으고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해서 사용했지만 구식 화승총과 창이나 칼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농민들이 참여해서 조직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이 가진 신식 후장총의 위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했다.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가진 전투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동학농민군의 무장과 전투역량은 조선국가의 관군이 갖춘 무장과 전투역량 수준에 비례하는 것이었다. 도성인 서울을 지키는 조선의 경군은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에게 기습을 받고 막아내지 못하였다. 국왕이 정사를 보는 경복궁과 군영을 점령당하고 국왕은 인질이 되고 경군은 무기를 빼앗기고 무장해제가 되었다. 일본군이 빼앗아간 무기를 보면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그것은 조선의 국왕을 보위하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었다.

서양의 산업혁명이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고, 기술력을 발전시켜서 소총과 기관총을 만들고, 대포를 장착한 철갑 군함을 보유해서 대양을 항행하여 동아시아까지 들어왔다. 청국과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들어올 때 청국은 양무운동,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대응할 때 조선은 근대화에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에서 핵심은 군사력 강화였다. 일본의 육군은 1888년 사단체제로 바꾸고 7개 사단을 확보하였다. 전시편제의 1개사단은 4개연대와 포병연대, 그리고 기병 공병 탄약 치중병 등 병과로 구성된 18,492명이 정원이었다. 해군은 요코스카와 구레, 그리고 사세보에 진수부를 두고, 서해와 동해를 담당하는 상비함대를 편성했다. 그 주요 사단은 청일전쟁에 보냈지만 동학농민군 진압에는 3개중대로 이루어진 후비보병 1개대대만 증파했다.

조선이 일본의 침략 대상으로 만만하게 된 것은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강력한 군사력에는 훈련된 군대와 우수한 무기가 필수이다. 근대식 군대의 무장은 개인무기가 중요하고 군사력의 강약은 개인무기인 소총에 달려있다. 조선의 군사력이 약했던 것은 결국 신식소총을 갖지 못했던 까닭이었다.

일본군이 진압군의 주력이 된 이후 동학농민군은 막대한 희생을 내야 했다.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에서 벌어진 전투는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용감하게 싸웠다. 가장 큰 전투가 우금치전투이다. 논산에서 공주로 진군한 동학농민군은 죽고 또 죽어도 산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서 처절하게 쓰러졌다. 제국주의 열강이 세계 각지를 침략할 때 많은 저항을 받았지

만 우금치전투처럼 치열하고 처절한 전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군이 주력인 진압군과 각지에서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의 용감성과 그 결과로 나온 막대한 희생이 동학농민혁명을 드러내는 핵심 주제가 된다. 이러한 감투와 희생이 없었다면 광복 이후 당당하게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시민혁명의 전당에는 그 의미를 충실히 담아낸 메시지가 표현되어야 한다.

5. 세계로 가야 하는 부안 동학농민혁명

결국 조선왕조는 무너졌고 이른바 36년 간 식민지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한 세대가 넘는 적지 않은 기간이었다. 그렇지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식민지 기간과 비교하면, 그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식민지 기간

라오스	: 프랑스 60년
미얀마	: 영국 63년
베트남	: 프랑스 63년
캄보디아	: 프랑스 90년
인도	: 영국 190년
인도네시아	: 네덜란드 350년
말레이시아	: 포르투갈 130년, 네덜란드 183년, 영국 133년(계 446년)
필리핀	: 스페인 333년 미국 48년(계 381년)
대만	: 일본 50년(1895~1945)

광복 이후 한국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배경 중의 주요한 부분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주목해야 한다. 혁신지식인과 농민층 결합한 실천운동, 신분제 부정 논리와 투쟁, 여성과 어린이 인권 강조, 유무상자(有無相資)의 서로 돕는 세상 지향, 비천한 계층에 대한 지원, 농민들의 자발적인 봉기 참여, 집강소의 민주체제 경험, 무능 부패한 지배체제에 대한 항쟁, 외세 침략에 대한 경계와 전국에 걸친 대규모 반침략 전쟁 등.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구상해서 그려보아야 한다. 미래는 과거처럼 어둡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 밝은 면을 강조하면서 그려야 한다.

근대학문으로서 한국사 연구는 조선왕조의 말기에 시작되어 망국의 처절한 과정을 거쳐 일제 치하

에서 발전하였다. 나라가 흥성한 유래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쇠망의 원인을 찾아보고 결과를 확인하는 학문으로 존재한 것이다. 그 후유증은 최근까지 오래 계속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선진사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경제 발전과 민주 체제의 정립에 자신을 갖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려온 나라를 방문해도 사회운영과 생활 수준이 그들 나라보다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누리면서 세계에 전파하는 한국문화의 선도 역할은 놀라울 정도다.

이제 한국사 연구는 한국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처럼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주요 주제로 연구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경험 이 오늘날의 발전에 이바지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세계성을 획득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물론 왕조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무능 부패한 지배층의 문제, 그리고 일제 침략에 대등하게 맞서지 못하고 압도당한 문제를 덮어두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대로 파헤쳐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이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은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이 전라도와 충청도, 즉 양호라고 했다. 그래서 진압 지휘부를 양호도순무영이라고 했다. 그 시작과 최대 참여지역은 전라도였고, 당시 행정구역인 고부와 부안 그리고 무장과 정읍이 핵심이었다. 그위에 고창과 홍덕, 김제와 금구가 가세해서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시민혁명의 전당은 이 지역과 인물이 시대 과제를 두고 수행한 역사적 기여를 중시해야 할 것이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원도연(원광대학교 교수)

1. 백산성지와 부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백산은 ‘약속의 땅’이었다. 백산은 해발 47.4m의 낮은 구릉에 가까운 야산이지만 정상에 서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진강(東津江)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고부천(古阜川)이 흐르는 천연의 요새로 결코 낮지 않은 산이다. 백산은 고부군을 중심으로 부안현(扶安縣)·정읍현·김제군·태인현(泰仁縣)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전라도 일대 농민군들이 대회를 열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고부에서 봉기하여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은 당시 고부 땅이었던 백산을 중심으로 이동했고, 동시에 전라도 일대 농민군들이 함께 모여 혁명군대로 출정하는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특히 농민군들은 무장기포 후 현실적인 위협이 될 감영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백산이 매우 중요했다. 전주에서 출발한 감영군이 동진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유일한 포구인 군포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곳을 경계하고 방어하는데 백산은 최적의 장소였다.

백산은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안고 동학농민군이 혁명의 시작을 알린 장소였다. 전라도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은 이곳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혁명군대의 편제를 구성하고 군대의 목표와 행동강령을 정했다. 백산은 이로써 한국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이외에도 농민군들이 이곳 백산을 혁명군이 모이는 약속의 장소로 삼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첫째는 생거부안(生居扶安)으로 상징되는 부안의 풍요였다.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들과 이에 호응한 농민군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혁명의 대의는 완성되었고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병참이었다. 부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곡창지대인 김제평야가 있는 김제와 바다의 보고인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고창과 맞닿은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조건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무장에서 기포한 전봉준 등은 부안 동학지도자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으며 백산에서 대규모 출정식을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안의 동학군 지도자들의 존재다. 부안의 동학 지도자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체 과정에 크게 두드러진 인물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부안이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뜨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부안의 농민군들은 부안의 방식대로 투쟁했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 중 김기병, 김병철 등은 1차 농민봉기에 적극 참여하여 반봉건 투쟁에 나서며 주력으로 활동했다. 반면 김낙철, 김영조, 윤상오 등은 일찍이 최시형에 의해 동학에 입도하고, 광화문 복합상소 등 교조신원운동 당시부터 활동한 양반 출신의 동학교도들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전봉준 등의 1차 봉기에 호응하였으나 이후 독립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며 집강소 통치기에는 농민군과 반농민군 사이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부안의 질서를 지키는 활동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 부안 동학농민혁명은 부안이 가진 지역특성과 함께 이 곳 출신 지도자

들의 활동방식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학술적인 과제들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백산’이라는 장소의 특성과 백산대회의 의미에 대한 것이다. 백산대회를 기념한다는 것은 ‘백산’의 장소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백산대회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은 백산을 기념하는 방식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2. 백산의 장소성과 시민혁명

1) 백산의 장소성

공동의 경험을 통해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공간은 ‘장소’가 되고 그 공간의 성질을 우리는 ‘장소성(sense of place)’이라고 한다. ‘나의 살던 고향’이라든가 ‘그녀와 걷던 길’ 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주관적 체험에 의해 각별한 의미가 붙여지고 그들의 삶이 반영된 특별한 장소들이다.(김한배, 1998)

그렇다면 백산은 어떤 곳일까.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은 압축된 시간을 담고 있다’고 했고 ‘장소는 정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자 고요한 중심이라고 했다.(Yi-Fu Tuan, 1995; 8) 벤야민 역시 장소감은 개인적 경험과 느낌에 통합되고 도시의미는 사람들의 삶의 사건을 통해 해석된다고 했다.(W. Benjamin, 1998; 58-59)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백산대회를 단일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떤 사회사적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가 그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남겨져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백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과 기념공간이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백산성지는 사건의 의의와 중대성에 비해 기념사업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전북지역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필두로 각 지역에서 기념관 및 기념공원을 조성해왔다. 그렇다면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백산은 어떤 방향성과 가치로 기념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

1894년 백산대회는 동학농민혁명사의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상징적인 대회였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이 혁명군의 진용을 구축한 ‘결진’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당시 민중들의 주류를 이루었던 농민들이 ‘경계를 넘어¹’ 하나의 의지로 모인 시민대회이자 출정식의 성격이 강

1 1894년 1월 고부봉기에서 농민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월경’이었다. 전봉준 등 혁명의 지도부는 고부의 경계를 넘어 봉기를 혁명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했으나 고부의 향촌 주도층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고부봉기라

했다.² 백산대회 이후 한국사회는 전통사회에서 유림들이 주도하던 일련의 ‘복합상소’ 방식에서 민중이 주도하는 시민대회의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히 백산대회가 전라도 일대의 농민들이 스스로 모여 권력에 맞선 무력항쟁까지 천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는 늘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중저항을 통해 진전되었다. 백산대회는 그런 의미에서 근현대 한국 민중운동사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백산대회의 형식과 내용은 훗날 3.1운동과 4.19, 80년 5월 민주화투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까지 이어졌다.³ 그런 의미에서 백산은 근대 시민(민중)혁명의 출발을 기념하는 장소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백산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민중저항의 기념비적인 공간이며 현대적 시민혁명의 정신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림 1] 백산대회, 이기홍 화백의 '전야'(前夜, 1994)

특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안 지역사의 관점에서도 백산대회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1894년 3월 26일(음력) 백산대회의 전야(前夜), 백산 일대에는 전라도 각지에서 몰려든 농민군들이 피워올린 횃불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했다. 그리고 이 횃불의 전통은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당시 부안군 전체에 밝혀진 촛불투쟁으로 이어졌다. 대규모 시민집회에서 촛불이 시민적 권리를 지키고 저항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밝혀진 것은 2003년 부안이었다. 그리고 부안

는 점은 명확하지만 모든 혁명이 그렇듯이 혁명적 전환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여 제작된 SBS 드라마 <녹두꽃>에는 '경계'에 의미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우금치 전투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농민군들은 진퇴를 고민하며 한 자리에 모인다. 그 자리에서 주인공 백이강은 천민출신의 동료들에게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다'며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연설한다. 이 장면을 본 고부의 황진사는 그의 친구 전봉준에게 이들이 '경계를 넘었다(극복했다)'고 말한다.

3 백산대회 이전 1892년부터 동학교단이 주도한 교조신원운동 역시 대중집회의 양상을 보였지만, 이는 종교의 자유와 교주의 신원을 위한 집회로 백산대회와는 성격과 내용이 달랐다.

에서 커진 촛불시위는 2016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⁴



[그림 2] 2003-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 촛불집회

2) 백산대회와 시민혁명의 조건

시민혁명을 결정짓는 요건은 연구자와 시대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혁명의 시기에는 기존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이념과 사상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질서와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모순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차별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혁명은 불씨를 키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치는 극도로 부패하거나 왜곡되고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민중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무조건 혁명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회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실천적 지도자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혁명은 다가오지만 많은 경우 체제 내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해소되거나 계급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서구 각국의 근대혁명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철저하게 민중들의 주도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시작되고 이것이 국가적 단위에서 역사적 흐름으로 형성되기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한국사 전체에서도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백산대회는 혁명군의 진용을 구축한 것 뿐만 아니라 혁명의 정신과 지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백산격문과 4대 명의(名義) 및 12조 기율은 혁명의 대의와 명분, 목표와 전선을 명확

4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대해서는 지금도 평가가 엇갈린다. 그러나 그 투쟁의 정당성과 의미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그 투쟁의 과정에서 보여준 부안군의 역동성은 놀라운 것이었다.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부안군과 군민 전체의 열정은 2000년대 이후 지역단위에서 벌어진 시민운동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게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의를 일으켜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하고 강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 전들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들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나라. 만일 이 기회를 잃는다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 짧은 격문을 통해 동학농민군은 “우리가 의를 일으켜 여기에 이름은 그 본뜻이 결단코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백성을 도탄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함”이라는 혁명의 대의와 명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혁명의 목표는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하고 강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며, 혁명의 공동전선을 구축할 이들은 “양반과 부호의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이 전들은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원한이 깊은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다. 격문과 함께 발표된 4대 명의를 동학농민군의 실천강령을 구체화한 것이며, 12개조 기율은 농민군 스스로의 규범을 정한 것이다. 백산대회는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이 봉기 혹은 기포의 수준에서 완전히 경계를 넘어 국가적 단위의 혁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동학농민혁명과 세계시민혁명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내내 이어져온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커져서 쌓여 폭발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전개되었다. 그것도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의 형태가 아니라 지방도시에서의 일어났으며 혁명의 지도부는 동학교단의 지도부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혁명의 전개는 전세계 민중혁명의 전개와 매우 유사하다.

동학농민혁명과 가장 유사한 전개를 보인 것은 시기가 훨씬 앞서기는 하지만 1525년에 일어난 독일 농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농민전쟁은 1525년 2월 16일 메밍겐 자유시에 딸린 25개 촌락이 반란을 일으켜 시참사회의 치안관들에게 경제조건과 전반적인 정치적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촌락의 농민들은 부채노역, 토지이용, 숲과 공유지의 지역권 문제, 예배와 수금에 관한 종교적 요구사항 등을 호소했다.

당시 농민들은 예상밖으로 농민-도시(지배계급) 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선언서를 내놓았다. 농민들의 고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기초한 12개 조항의 정강이 나온 것이다. 당연히 메밍겐시 참사회는 농민들의 요구 대부분을 거부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훗날 메밍겐에서 제기된 개혁안이 이후 상수

바벤 서약동맹에서 발표한 12개조 정강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독일농민전쟁은 1524년부터 각지에서 시작된 민란까지 포함하여 중앙유럽의 독일권역 전체에서 일어났다. 30만명의 농민들이 봉기했으나 빈약한 무장상태와 귀족들의 강경한 진압으로 약 1년 동안 10만여명이 학살당했고 농민군은 패배했다.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이들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농민전쟁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농민전쟁은 급진적 성직자(주로 채세레파)들의 지지와 지도를 받은 농민들의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반란의 성격을 가졌다. 독일농민전쟁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넓게 일어난 민중봉기였다.

근대시민혁명을 대표하는 1789년 프랑스혁명 역시 그 출발은 농민봉기였다. 1780년대 프랑스의 농촌지역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1784년과 1788년의 대흉작으로 위기에 빠졌다. 곡물 가격은 두 배로 상승했고, 영주들이 부과하는 가혹한 세금은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1720년부터 1788년 사이에 프랑스 각 지역에서 4,400건의 집단 시위가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3천건 이상이 1765년 이후에 발생했다. 이 시위들은 이들은 대부분 식량 폭동의 수준이었지만 서서히 반봉건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했다.

프랑스 농촌의 투쟁에 힘입어 1789년 봄 프랑스 전체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처해진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제안을 시작했다. 마침내 프랑스 국민들은 1789년 7월 파리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면서 국가와 귀족 권력에 대한 전례 없는 도전을 시작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1637년부터 2년여간 나가사키현 시마바라시의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일본 규슈 최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동쪽으로 사가현을 서쪽으로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곳이다. 1637년 이곳에서는 일명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 1637-1638년)이 일어났다. 농민반란의 원인은 역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강압적인 세금 정책과 기독교 탄압이었다. 지속적인 종교적 탄압과 과중한 세금으로 신음하던 농민들은 1637년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를 중심으로 농민과 사무라이 약 3만7천명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시마바라 성을 거점으로 2년여간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막부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학살당했다. 이후 막부는 일본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금지하는 강경 정책을 시행했고 일본은 이후 한국과 달리 시민혁명의 전통이 거의 무너졌다.

동학농민혁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 바이아(Bahia)주의 칸우두스(Canudos)에서 일어난 농민전쟁도 주목할만하다. 칸우두스는 브라질 바이아(Bahia) 주에 위치한 도시로 1896에 시작되어 2년여에 걸쳐 전개된 농민전쟁의 중심지였다. 이 농민전쟁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격렬한 내전 중 하나로, 농민과 정부군 간의 충돌이었으며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

19세기 후반 브라질 북동부는 가뭄과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때 안토니우 콘셀레이루(Antônio Conselheiro, '조언자 안토니우')라는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여 가난한 농민과 하층민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는 사회적 평등과 공유 경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세금과 억압을 비판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농민, 원주민, 흑인 해방 노예들이 칸우두스로 모여들었고, 약 2만~3만 명 규모의 자급자족 마을이 형성되었다. 칸우두스 공동체가 급속하게 성장하자 브라질 정부는 이를 견제하여 공동체 자체를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시작했다.

브라질 정부는 1896년부터 4차례의 군사 공격을 감행했는데 초반 세 차례의 공격에서는 칸우두스 공동체가 방어에 성공했으나 네 번째 공격에서 1만 명이 넘는 정부군이 총공세를 받았다. 1897년 10월 칸우두스는 결국 완전히 파괴되었고, 지도자 안토니우 콘셀레이루도 전쟁 중 사망함. 공동체의 주민들 대부분도 학살당하거나 강제로 이주를 당했다. 이 사건은 브라질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농민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이후의 농민 운동과 토지 개혁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3. 동학농민혁명 기념공간의 현황과 활용

1)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현황과 부안의 기념유적

2021년 기준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의 수는 총 378개소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유적지는 311개였으며 기념물 및 기념시설은 67개소로 나타났다.⁵ 2021년 조사에서 확인된 전체 유적지 311개 중 현재 기념시설이 있는 곳은 90개소였으며, 안내판 등 최소한의 기념시설이 없는 유적지도 195개로 확인되었다.

[표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의 권역별 분포

	계	경기관	강원	충북	충남권	전북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유적지	311(89)	5(2)	14(6)	21(5)	62(12)	93(42)	72(14)	33(5)	11(3)
기념시설	67	1	0	7	9	24	12	11	3
계	379	6	14	28	71	117	84	44	14

*경기관(서울), 충남권(대전·세종), 전남권(광주), 경북권(대구), 경남권(부산·울산)으로 통합

*() 안은 유적지 중 기념공간 및 기념시설이 설치된 유적지의 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각 시도별로 보면 역시 전북지역이 93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남권(72개), 충남(62개), 경북(33개), 충북(21개) 순서로 집계되었다. 2005년에 비해 90개의 유적 및 기념시설이 더

5 이 조사결과는 2021-202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수행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유적 조사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22년 이후 각 지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념시설은 이 통계에서 빠져있다. 예를 들어 2024년 고창군이 세운 '독두장군 전봉준 장군 동상'이나 2024년 전주시가 완산칠봉에 세운 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 등은 이 통계에서 빠져있다.

늘어난 것이다. 충북지역은 2차 기포 당시 동학농민군의 기포와 관련된 지역과 김개남의 전투경로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동학을 창도한 최제우 관련 유적과 2차 기포 이후 동학농민군의 전투 관련 유적들이 다수 세워진 것도 이채롭다.

그러나 전체 유적지 311개소 중 195개 장소에는 아직 어떤 형태로든 기념시설과 안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경북과 충남 등이 동학농민혁명 핵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별 기념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유적지를 현장의 성격별로 분류하면 전투·집결지로 대표되는 활동유적이 218개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동학농민군들의 전투와 집결 뿐만 아니라 모의·점령지 등이 포함됨. 인물유적은 76개로 주로 동학농민군들의 출생·성장·은거·피체·순절지 등이었다.

부안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다음 [표 2]와 같다. 백산성지는 국가사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현재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을 앞두고 있다. 백산성지는 1976년 4월 2일 전라북도 지정 기념물 제 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기념물로 <동학혁명백산창의비>가 세워져 있고, 입구에 비석이 있으며 안내판 정리는 양호한 편이다. 산성 정상에 안내판,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기념탑 옆으로 팔각지붕의 정자인 ‘동학정’이 있어 백산 주변의 들판 조망을 볼 수 있다. 다만 백산에 큰 나무와 숲이 우거져 동학정에서도 주변 경관을 제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인근 들판을 조망하는 것이 백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백산의 나무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조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정상의 안내판 주변에 백산성을 원표로 주변 지역 거리가 표기된 안내판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2]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현황

유적명	주소지	설명	현황
부안 동학농민군 백산대회지(국가사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9	무장기포 후 농민군 진용을 갖추고 대회를 연 곳	기념비, 기념탑,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낙철 도소지	부안군 행안면 역리283	김낙철이 주로 활동한 부안 동학세력의 도소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성황산 주둔지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산 4-1	황토현 전투에 앞서 주둔했던 부안관아 서쪽 산	
부안 관아 동학농민군 점령지터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39-2	백산성 주둔 농민군이 군기를 탈취한 관아	안내판
부안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기병 행적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16	부안농민농민혁명군 대장 김기병의 행적비	

부안 성황산은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전투에 앞서 주둔했던 부안 관아 서쪽에 있는 산이다. 1894년 4월 5일 전주 진격을 위해 부안지역의 농민군과 태인 쪽으로 온 정읍 농민군 등이 주둔했던 곳이다.

부안의 동학군 지도자 김기병 등이 무장기포 이후 부안관아를 습격하여 무기를 확보한 후 황토현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진을 친 장소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현 서림공원(부안군청 뒤편)으로 공원길 따라 차량 진입 가능한 상태다. 다만 서림공원 안내판은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은 기록이 없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56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전북의 전체 유적지 중에서는 정읍시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고창군 21개, 김제시 8개, 전주시 16개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표 3]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시군별 분포 (단위 : 개소)

지역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장수	계
유적수	21	18	11	2	6	3	2	156
지역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유적수	7	2	5	16	61	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전북지역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기념사업이 크게 편차를 보인다. 전북 외 지역으로는 공주가 11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상주군이 10개소, 전남 무안군이 8개 등으로 나타남. 유적의 지역별 분포는 대체로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강하거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서 유적지도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단순한 표지석이나 기념탑, 기념비 등의 구성에 그치지 않고 해설공간, 전시공간, 관리체계 등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부안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기념관과 기념공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곳이다. 특히 백산이라는 야산과 그 아래 펼쳐진 들판, 그리고 그 위에 조성되는 기념관은 하나의 통합적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6개소다. 정읍의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1963-2004)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념공원으로 황토현 전투를 기념하는 장소성이 강조된 곳이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2015.4)은 장흥 석대벌 전투를 기념한 곳이며, 순창녹두장군 전봉준관(2006.12)은 전봉준 장군 피체지로 인물을 기념한 곳이다. 전주한옥마을 동학혁명기념관(1985.5)은 천도교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으로 동학 자체를 기념한다고 볼 수 있고,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2019)은 전남 진도에서 일본으로 수집되었다가 한국으로 봉환된 무명농민군을 모신 장소이며, 전주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2024)은 전주입성을 기념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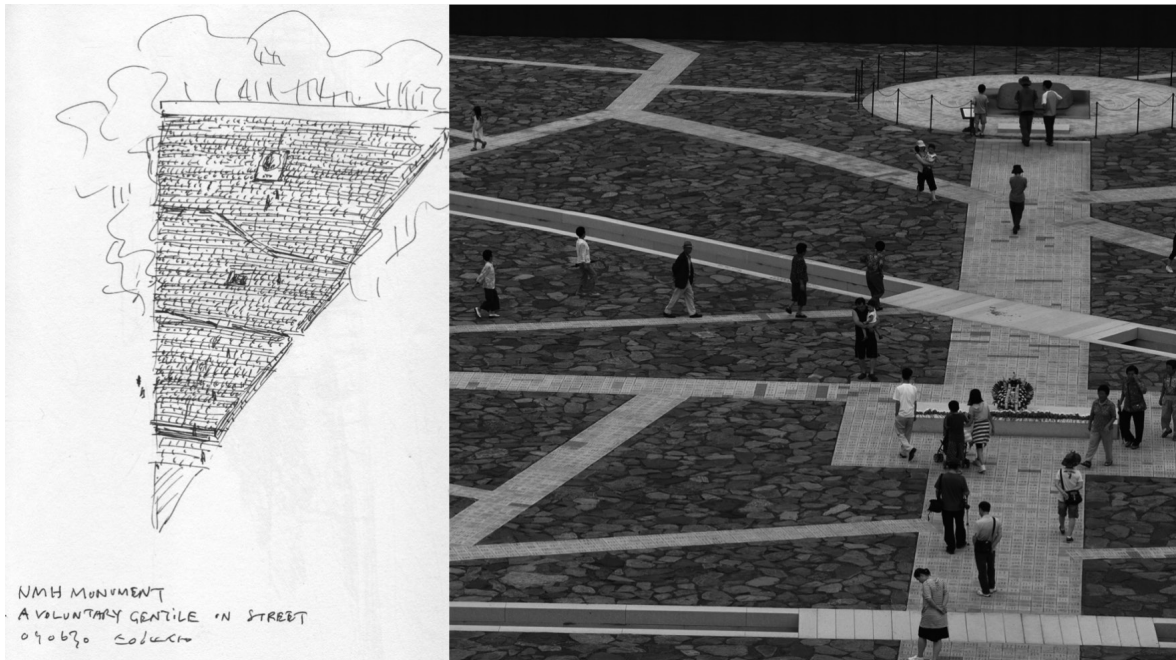
[표 4] 동학농민혁명 주요 기념공간 및 공원 현황

명칭	지역	관리주체	공간 구성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963-2004)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지	문화재청 전라북도	- 국가사적 지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총괄 - 전시관, 교육관, 기념탑, 전봉준동상, 제민당 등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5.4)	전남 장흥	장흥군	- 장흥 석대들전투 기념지 - 기념전시관, 야외조형물, 체험실
녹두장군 전봉준관 (2006.12)	전북 순창군 피노리	순창군	- 전봉준장군 피체지 기념 - 피체 당시 주막 재현, 농촌생활체험관(녹두관), 캠핑/숙박시설
전주동학농민혁명녹두관 (2019)	전주시 완산	전주시	무명 농민군지도자 안장
동학혁명기념관(1985.5)	전주시 풍남동	천도교	동학혁명 전시관 및 강연장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2007)	충북 보은 보은읍	보은군	- 보은취회 기념지, 보은전투 - 상징탑, 돌성, 민중의 광장, 하늘길 계단 등 역사 문화생태공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2010~)	충남 예산 관자리	예산군	- 관자리 전투 기념 - 기념비 조성, 기념탑(예정)
전봉준 공원(1997)	전북 정읍 내장산	정읍시	- 내장산 입구에 조성 - 주탑과 부탑으로 구성
우금치전적지(1973)	충남 공주 우금치	문화재청 공주시	- 우금치 전투 기념 - 기념탑
삼례봉기 역사광장(2002)	완주군 삼례	완주군	삼례집회 기념, 조형물과 공원
고창 전봉준생가(2001)	전북 고창군 당촌	고창군	- 전봉준 생가터 복원 - 뚜라조각공원 (민간) - 전봉준장군생활전시관 (민간)

2) 최근 역사기념공원 및 기념관의 사례와 시사점

기념공간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텐츠와 공간 구성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기념관 혹은 기념공간이 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비교적 최근에서 세워진 한국의 기념공간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묘역이 모범적인 조성 과 활용으로 손꼽히고 있다. 봉하묘역은 본래의 묘역이 갖는 비장함과 우울감을 최소화하면서 정중하고 비교적 밝은 이미지로 공간을 조성했다. 하나의 공간에 묘역을 중심으로 생가, 사저, 부엉이바위, 봉화산, 봉화농장, 화포천 등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 공원은 모든 국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그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단순한 조경과 시설을 통해 추모객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했다.



[그림 3] 봉하묘역 컨셉 스케치 및 일대 모습⁶



[그림 4] 윤동주문학관 공간구성 중 열린 우물⁷

⁶ 출처: <http://www.iroje.com/>

⁷ <https://shindonga.donga.com/3/all/13/8300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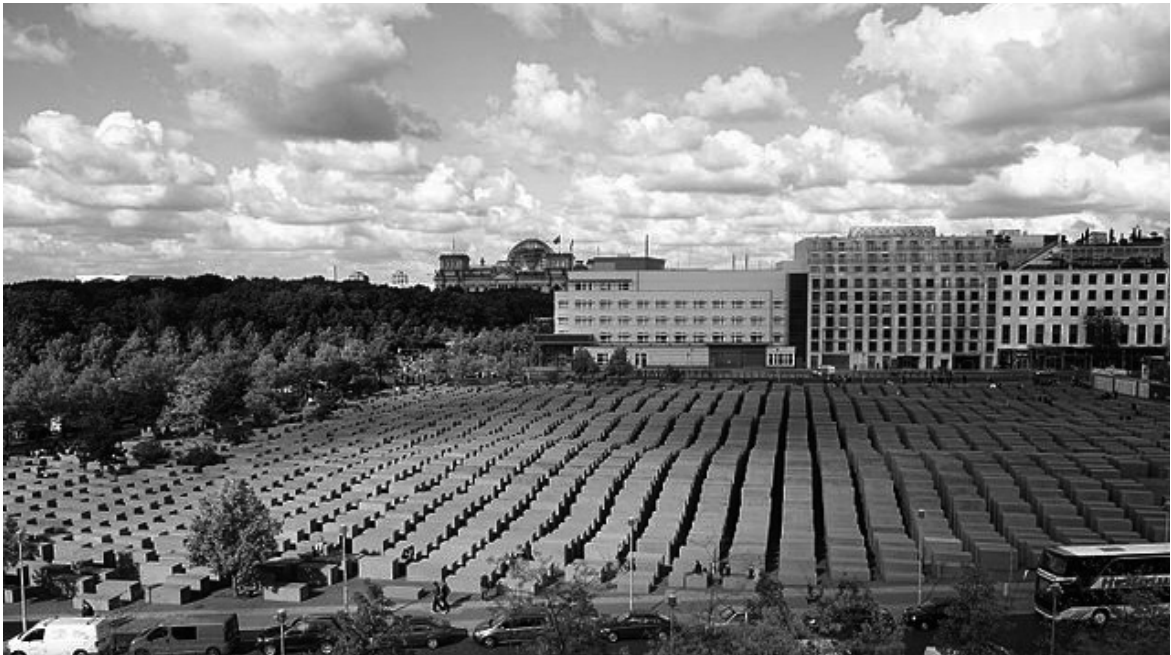
윤동주 문학관도 근대기를 빛낸 시인이자 항일운동가를 기념하는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윤동주 문학관은 서울시 종로구청이 학창 시절 종로에서 하숙하며 살았던 그의 발자취와 세상을 향한 시선을 기억하고자 2012년 인왕산 자락에 버려져 있던 청운수도가압장 건물을 문학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가압장의 원형을 되도록 그대로 살리면서 윤동주의 주요 시어인 ‘우물’을 주제로 리모델링했다. 문학관은 윤동주 시인의 친필원고와 사진이 전시된 시인채, 가압장 물탱크를 활용한 열린우물과 닫힌우물로 구성되었다. 특히 열린우물은 아무런 설비 없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을 주고 닫힌우물은 윤동주 시인의 생애를 다루는 동영상 상영하고 있다.



[그림 5] Vietnam Veterans Memorial 전경

미국 워싱턴의 베트남 전쟁 기념관(Vietnam Veterans Memorial)도 매우 의미심장한 역사기념공간이다. 이곳은 베트남 전쟁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다. 설계자는 이 기념공간을 통해 전쟁의 실상과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참전자와 전사자들에 대한 기억은 정직해야하며 전쟁을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곧 순수한 비정치적인 접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이 명확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간구성 및 전시특성을 보면 수직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히려 땅속으로 가라앉은 수평적인 벽을 강조. 베트남전에서 숨지거나 실종된 5만 8천여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Holocaust Memorial)은 더욱 극적이다. 이 곳은 유대인 박물관과 기념정원은 과거에 대한 독일인의 속죄의 뜻을 담은 대표적인 장소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조성했다. 유대인 대학살로 인해 살해된 육백만 유대인 피해자의 기념을 위한 장소로, 독일 베를린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기념공간은 1만9000m²(약 5758평)의 부지에 최고 4.7m인 다양한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기둥들로 이뤄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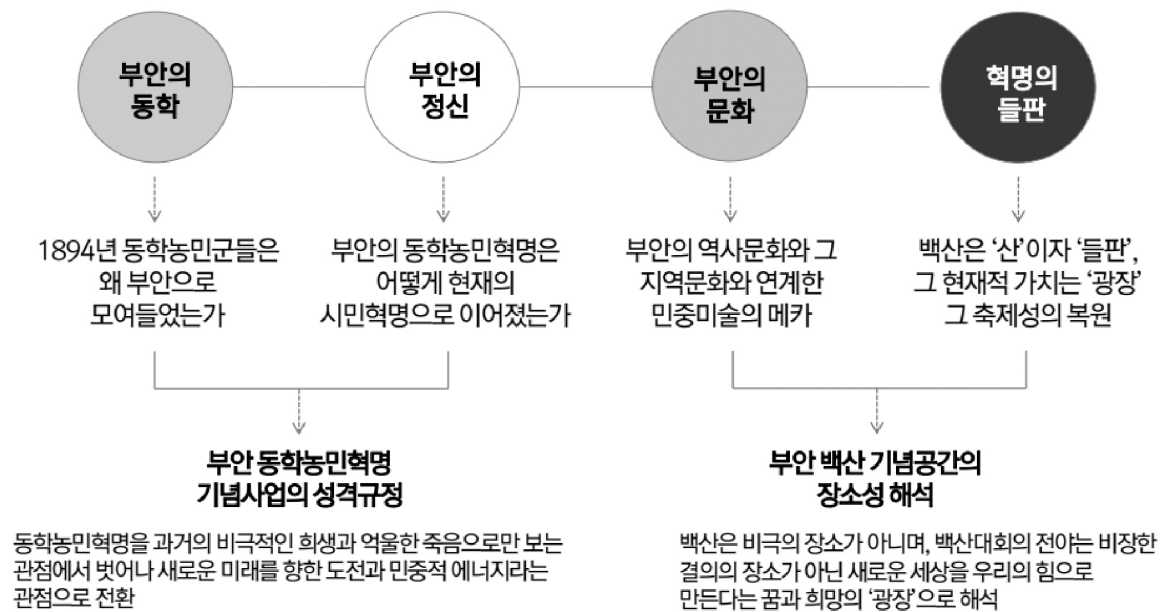
[그림 6] 독일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경

4. 부안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방향과 활용

1)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을 위한 방향성

부안의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크게 다섯 가지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공간으로서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곳으로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맥락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조선이 겪고 있던 국가적 위기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석, 동학의 출발과 부안지역 동학세력의 형성과 저항에 대한 시대적 맥락이 중요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왜 농민군들이 부안의 백산으로 모여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부안이 가진 풍요와 지형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부안이 왜 ‘약속의 땅’이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근현대 시민혁명 기념공간으로서의 방향이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 민중저항의 기념공간으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즉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현대사의 민중저항과 현대적 시민혁명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기념공간과 차별화될 수 있다. 특히 2003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당시 부안군 전체에 밝혀진 촛불투쟁이 2016년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촛불항쟁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7]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 및 콘텐츠 구상의 기본방향

셋째, 예술적 혁명 기념공간으로의 방향이다. 예술을 통한 동학농민혁명 기념방식으로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민중미술이라는 예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혁명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시민혁명의 전당을 포지셔닝하고 공간과 콘텐츠를 구성하는 방안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넷째, 축제적 장소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비장함과 희생적 관점보다 백산대회의 축제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백산은 호남 일대의 농민군들이 모여든 약속의 장소로 백산대회 이전부터 수많은 농민들이 모여들여 야영하면서 대회를 준비했을 것이다.

1894년 백산의 횃불은 비장함과 희생의 관점보다는 민중적 열망과 희망,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강력한 결의의 장소라는 점에서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과 콘텐츠는 엄숙하고 비장한 분위기와 다른 축제적 의미를 부각할 수 있다. 이는 백산대회 당시 대규모 야영을 현대적 청소년 교육 캠프 및 캠핑문화로 발전시키면서 과거를 현재로 연결하는 장소로 브랜딩하는 활용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다섯째, 공간운영의 수익모델 고려해야 한다. 세계시민혁명 전당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역사박물관이나 기념관의 경우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조성후 초기단계를 단순히 유지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폐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도 초기 시설조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감안하여 기존 단순 기념관 개념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 보다는 수입구조를 감안하여 운영단계에서 재정적인 이유로 축소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2)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비전과 활용전략

위에서 정리한 방향성을 토대로 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비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은 백산대회와 시민혁명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혁명을 재해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설정한 것이다.

부안 백산성지 시민혁명의전당 핵심주제(안) ‘새로운 나라, 누구나 주인으로 사는 나라를 위한 민주의 불꽃’				
핵심키워드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부안의정신과 민주주의투쟁	부안의 문화와예술정신	혁명의들판 희망의광장
기본방향	혁명의재해석 :역사공간	미래지향성 :시민혁명 기념공간	새로운민중예술 : 예술적 기념공간	대동세상의 꿈 : 축제적 장소성
공간·콘텐츠 구성전략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사	2003-2004 촛불투쟁의가치	민족·민중운동, 혁명미술관	청소년야영과 시민혁명영화제

[그림 8] 부안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전당 콘텐츠 구성체계

다음 [표 5]는 현재 부안군에서 기본구상으로 수립한 기념관의 구성에 따라 전체 공간의 활용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사와 '부안의 정신'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명칭에 맞게 전시 콘텐츠를 통해 구현하며, 부안의 문화와 예술정신은 「혁명미술관」으로 그리고 혁명의 들판으로서 시민참여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먼저 지하 1층의 컨셉과 핵심용도는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 작품’ 과 사무공간이다. 기념공간으로서 경건한 마을과 ‘기념’의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내부로 접근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지하의 정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상징하는 민중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며, 사무공간 및 수장고를 조성한다.

지상 1층은 ‘민중미술관’과 ‘백산 레고하우스’, ‘굿즈 판매와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혁명미술관을 상징할 수 있는 ‘민중미술관’을 조성하고, 레고라는 어른과 아이들의 공간으로 ‘백산 레고

하우스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민중미술과 레고 하우스와 연관된 기념굿즈 판매점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일반 군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조성하여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레고하우스와 굿즈 판매장은 유료화를 통해 기념공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사업이 되어야 한다.

지상 2층은 부안의 동학농민혁명과 부안 시민혁명 정신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현재 부안군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미디어 전시는 자주 교체해야하는 트렌디한 내용보다는 단순하면서 '사진찍기 좋은' 내용으로 조성하여 최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많지 않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혁명영화제, 군민들을 위한 영화관, 홍보영상 감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영상과 음향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영화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표 5] 시민혁명의 전당 공간 층별 구성

구분	핵심주제	주요 스토리
별판의 전봉준 옥상공간	별판을 바라보는 전봉준	옥상공간에 별판을 상징하는 잔디밭 조성 잔디밭에 들판을 바라보는 전봉준 동상 건립
부안역사관 1894~2004년 상설전시실(2층)	1894. 백산대회에서 2004년 촛불투쟁까지	■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 ①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 ② 부안에 흐르는 개혁가들의 사상 ③ 2003년 핵폐기장 반대 부안시민투쟁 ■ 촛불투쟁은 2019년 촛불항쟁으로 진화
소극장/회의실 커뮤니티실(2층)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	계단식 광장형 커뮤니티 공간 - 50명 내외 소공연 및 영화, 회의공간
백산민중미술관 기획전시실(1층)	한국민족민중미술 전문전시장	① 부안을 한국 민족민중미술의 메카로 : 제주 4.3, 5.18 등 민족민중미술작품 전시 ② 연간 2-4회 기획전 진행 : 민족민중미술의 서정적인 그림 전시판매
1층 혁명굿즈매장	혁명굿즈샵	동학농민혁명의 상징과 미술작품, 인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굿즈와 역사퍼즐 판매
동학역사놀이터 레고하우스 (1층)	레고게임으로 혁명과 놀기	동학농민혁명의 사건을 레고게임으로 제작 레고와 퍼즐게임으로 청소년 혁명놀이터 운영
지하 진입공간	백산기념관 상징공간 조성	백산대회 상징 민중미술 대작 설치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 조형
지하 사무공간 등	공간운영 및 사업기획	공간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사무공간 원장실 등 운영관리 필수공간
지하 수장고	민족민중미술 메카	민족민중미술 작가들의 기존 작품 등을 보관 그 외 미술작가들의 작품 유료보관

마지막으로 혁명의 들판이다. 기념관 옥상은 조망공간으로 조성하되 '나의 아저씨' 전봉준과 같은 컨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산의 핵심 컨셉인 '혁명의 들판'을 기념관 옥상에 조성하여 백산의 들

판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백산들판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들판을 그냥 조망하기 보다 생각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동학농민혁명과 백산대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시민혁명의 전당' 옥상을 잔디광장 형식으로 조성하고 그 광장 위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포토존 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조형물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전봉준 장군과 부안의 어린이 등을 컨셉으로 하고 조형물의 주제를 '나의 아버지'로 하여 전봉준 장군의 뜻과 의지가 후세대에 친근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게 하면 이곳이 다른 지역의 기념관과 다른 특색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도시의 상징은 그 도시가 겪어온 전통과 역사속에서 형성되었으나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도시는 상징과 이미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도시의 상징은 때때로 전통 또는 공동체, 집합의식 등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며 그것은 연속성(continuity)을 본래적인 속성으로 한다. 그것은 전통이 역사를 통해 형성된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 즉 문화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Durkheim, 1982)

현대사회는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정신과 상징은 시민적 노력을 통해서 구축되고 지속된다. 부안은 백산이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을 재창조해야 하고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한배(1998), 《우리 도시의 얼굴찾기》, 태림문화사
- 조성운(2016),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권역사실학회
- SBS드라마(2019), 〈녹두꽃〉 <https://programs.sbs.co.kr/drama/nokduflower/main> (2025.8.9.)
- 박명규(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동학농민전쟁의 기념물', 한국사회사학회 편, 〈사회와 역사〉 제51집, 문학과지성사.
- 신순철·이진영(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박준성(2006),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을 찾아서(3), 〈내일을 여는 역사〉 제26호
- 이진영(2001), '茂長起包의 성립과 全羅道 高敞地域의 동학농민혁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9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맹수(2009), '전라도 유교지식인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집, 한국근현대사학회
- 김정수(200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 한국문화관광학회
- 문경민·김은정·김원용(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혁명의 들불, 그 황톳길의 역사찾기》, 나남출판
- Mike Savage and Alan Warde.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김왕배, 박세훈 역(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 Mircea Eliade(1952), Image et Symboles, 이재실 역(1998), 《이미지와 상징》, 까치.
- Warter Benjamin, 박설호 편역(1992), 《베를린의 유년시절》, 솔.
- Warter Benjamin, 반성완 편역(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 Yi-Fu Tuan(1977), Space and Place, 정영철 역(1995), 《공간과 장소》, 태림문화사.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토론문

홍성덕(전주대학교 교수)

- 본 논문은 부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이 가지는 의의와 활용방향에 관한 것으로, 백산의 지리적 역사적 중요성과 시민혁명으로서 백산대회가 가지는 의미, 시민혁명 사례와의 비교 분석으로 통해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비전과 목표, 공간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은 2024년 공모작 선정(길건축)을 거쳐,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5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설치 업체(인테크디자인)가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본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산성지와 부안의 역사성

- 왜 동학농민혁명군이 백산에 모였는지에 대한 견해로 지리적 특징이외에 부안의 풍요와 부안의 동학군 지도자를 언급하고 있으나, 1894년 당시 백산은 부안현(현 부안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고부군(현 고부면)이었기 때문에 백산대회의 역사성을 부안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한 것이다. 백산지역은 동진강과 고부천 사이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임에는 분명하다. 백산면이 부안군에 편입된 것은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 때이다.
- 과거 고부군에 속한 백산의 역사성과 현재 부안군에 속한 백산의 현재성으로 어떻게 오해 없이 연결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안의 동학농민혁명-혁명의 재해석:역사공간’을 설명할 때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백산을 부안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백산대회와 핵폐기장 촛불 집회와 빛의 혁명

- 동학농민혁명을 한국 민주주의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핵심이다. 그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3·1만세시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민 의(民意)’ 수호였으며, 나아가 촛불 집회와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12·3바상계엄 반대시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역

사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백산대회를 시민혁명의 조건을 갖춘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과 동학농민혁명과 국제적인 시민혁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발생할 수 우려가 있다. 혹 동학농민혁명이 국제적 시민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산대회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기본방향 및 공간구성

-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축 및 전시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현대적 해석 체움 중심 공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순례길(정읍-부안-고창)’ ‘부안 백산대회 기념’ ‘세계 선도적인 시민혁명의 가치 설명, 구현’ ‘창의적이고 예술적 가치 높은 전시설계 및 제작’ 등이었다.
- 과업지시서 내 공간 구성은 발표자가 제안한 방향과 차이가 있어서, 진행되는 정책 흐름에 맞는 분석과 제안이 필요하다. 추진 중인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다.(관리영역, 공동영역 제외)

구 분	시 설	면 적	비 고
전시 영역	전시콘텐츠	1,100㎡	동학농민혁명, 부안이 열다 민중미술관 전시실, 상설 전시실
	전시미디어		다시, 백산 사람들(미디어아트) 영상자료 및 콘텐츠 제작
	체험콘텐츠		동학스토리 창작공작소(레고 하우스) 동학문화 미디어놀이터 미디어로 동학세상 만들기
휴게 영역	기념품샵	130㎡	문화상품(굿즈) 판매
	북카페, 작은도서관	85㎡	작은도서관(동학예술)

-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비는 154억원이며 건축설계 약 8억5천만원, 전시 24억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외 부대 비용을 합하면 200억원이 넘게 소요된다.(과업지시서 내)
- 토론자의 견해로 전시영역 1,100㎡(약 330평) 내에 담아 내야 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이라는 정체성에 부응하기 어려운 공간과 주제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 과업목적인 ‘세계를 선도하는 시민혁명의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
- 부안의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이 다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어떠한 차별화 전략을 가질 것인가? 현재 추진 중인 공간·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설계 과정에서 수정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의 성공적인 운영 요건

- 접근성의 확보: 백산성지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대부분은 자가용이나 대여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 뿐일 것이다. 부안IC에 인접해 있지만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람객에 한정된다.
- 연계성의 확보: 백산성지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 및 전시관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문제는 백산과 부안을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부안의 최대 관광지는 변산반도이다. 백산과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부안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은 탐방객을 유도할 정도의 유입력이 없다. 결국 정읍-백산-고창으로 이어질 것이다.
- 효율성의 확보: 완공 이후의 운영예산은 기본 운영비를 포함 최소 1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유바다(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혁명(Revolution)은 정부 혹은 국가를 전복시키고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명은 사회구조 변화를 동반한다. 이는 혁명 당시의 추세로 그치지 않고 혁명의 결과 일련의 제도화를 통해서 혁명이 의도했던 변화의 안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오늘날의 혁명 개념은 프랑스혁명을 통해 정립된 것이다.

이를테면 프랑스혁명 이전, 언어로서의 Revolution에는 본래 현재 정체 변혁의 의미는 없었다. Revolution의 의미는 행성의 공전, 내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Revolution이 오늘날과 같은 ‘혁명’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프랑스혁명의 결과이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왕정을 입헌왕정으로, 다시 공화정으로 바꾸었으므로, 정체의 변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프랑스혁명은 신분제 등 봉건적 악습을 제도적으로 철폐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여러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Revolution으로 표상되었고, 실제로 프랑스혁명이 전개되면서 Revolution의 의미가 확장, 정착된 것이다. 혁명은 정체의 변혁, 사회의 변화와 제도적 안착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동아시아 세계에는 이렇게 변화된 Revolution 개념이 소개되었으며, 이를 여러 지식인들이 혁명으로 번역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혁명 개념이 소개되어 일반화되었다. 그 시기는 대체로 1895년 이후로 본다. 예를 들어 1896년 《萬國略史》에서는 ‘프랑스혁명(佛蘭西革命)’이라는 말이 최초로 확인되며, 황성신문은 1899년 6월 《미국독립사》를, 1900년 6월에는 《法國革新戰史》를 출판했다. 특히 《법국혁신전사》에서는 프랑스혁명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도, 프랑스혁명에 비추어 혁명을 이해했던 것이다.¹

이러한 가운데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적 성격에 관해서는 일찍이 근대화 과정에서의 위로부터의 길과 아래로부터의 길이 제시²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동학농민군의 변혁적 성격은 대체로 인정되나 근대적 성격 부여에는 고민이 있었던 것³이 사실이다. 오히려 동학농민군의 반근대적 성격에 무게를 두는 연구⁴도 있었고 이에 호응하여 근대와 반근대의 너머를 전망하는 시론⁵도 있었다. 특히 “아래로부터의 길”이 토지개혁을 전제로 할 때 막상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서

1 위의 혁명 개념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진행중인 “한국 근대 국제법 전문 용어 사전” 집필 목록 중 혁명을 기술하는 가운데 정리한 것이다. 집필자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대학원생 천관우이며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 노명식, 2011,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책과 함께, 2011; 데이비드 파커 외 저, 박윤덕 역, 2009, 《혁명의 탄생: 근대 유럽을 만든 좌우익 혁명들》, 교양인; 라인하르트 코젤렉 엮음, 한정운 역, 2019,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12: 혁명》, 푸른역사; 이헌미, 2012, 《반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개념연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 金容燮, 〈近代化過程에서의 農業改革의 두 方向〉, 《한국자본주의 성격논쟁-移山趙機濬博士古稀紀念論文集》, 대왕사, 1988.

3 鄭昌烈, 《甲午農民戰爭 研究-全瑛準의 思想과 行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4 趙景達, 《異端의 民衆反亂-東學と甲午農民戰爭-》, 岩波書店, 1998(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동학과 갑오농민전쟁 그리고 조선 민중의 내셔널리즘》, 역사비평사, 2008). 이와 같은 달리하지만 동학농민군의 변혁지향성조차도 부정하는 연구도 있었다. 柳永益, 〈全瑛準 義擧論; 甲午農民蜂起에 대한 通說 批判〉,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下, 일조각, 1994.

5 배항섭, 〈동학농민군의 지향: 근대인가 반근대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55, 2014.

“平均分作”의 실체가 분분명했다는 연구⁶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렇게 된다면 동학농민군의 근대지향성은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 대한 분석은 줄기차게 이루어졌으며,⁷ 한국근대사의 방향 설정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부각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전히 동학농민군의 근대지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⁸이 우위에 있다.

그렇다면 서구 세계의 혁명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은 어떠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 세계에서는 영국혁명(1215), 미국혁명(1776), 프랑스혁명(1789) 등 시민혁명이 근대국가 건설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최초의 혁명이라고 하는 영국혁명도 그 출발은 왕권에 대한 귀족의 도전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금은 다른 의미겠지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란 점에서는 영국혁명이나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나 동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동학농민전쟁이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왕 동학농민군의 근대지향성이 도마에 오른다면 서구 세계의 시민혁명과의 비교는 분명 필요해 보인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서구 세계의 시민혁명의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人權에 있었다. 여기에서 인권은 두 가지 축에서 보장된다. 하나는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 부과를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지 못하게 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왕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각각 租稅法律主義⁹와 罪刑法定主義¹⁰라고 한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민주권에 토대를 둔 근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러한 면에서 프랑스혁명은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어느 정도 자유주의가 천명된 영국혁명을 이어받고, 독립이라는 시급한 역사적 과제 때문에 간략하게 스케치 된 미국혁명의 인권정신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하여 인권이 갖는 당위적인 보편성을 확립한 점¹¹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동학농민군도 1894년 3월 20일 전라도 茂長에서 起包하면서 “사람이 세상에 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¹²라고 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를 주목한

6 배향섭,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 나타난 토지개혁 구상; ‘평균분작(平均分作)’ 문제를 중심으로>, 《史叢》 43, 1994.

7 韓治勳, <東學軍의 弊政改革案 檢討>, 《歷史學報》 23, 1964; 韓治勳, <東學亂 起因에 관한 研究 : 그 社會的 背景과 三政의 紊亂을 중심으로>, 韓國文化研究所, 1971; 신용하, <甲午農民戰爭과 두레와 執綱所의 弊政改革-農民軍 편성, 執綱所의 土地政策, 茶山의 閭田制·井田制 및 ‘두레’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8, 1987; 李離和, 앞의 논문; 盧鍾弼,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韓國思想史學》 22, 2004; 김선경, <1894년 농민군의 조세제도 개혁 요구>, 《역사연구》 19, 2010; 왕현중, <1894년 농민군의 폐정개혁 추진과 갑오개혁의 관계>, 《역사연구》 27, 2014.

8 왕현중, 앞의 논문.

9 황남석,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사법》 1-38, 2016.

10 金永鉉, <罪刑法定主義 沿革과 思想的 背景>, 《인문사회과학연구》 7,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0.

11 옥영수, <프랑스혁명과 인권: 세계화 시대에 다시 읽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서양사학연구》 25, 2011.

12 《聚語》, “茂長東學輩布告文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倫也”; 歷史問題研究所 東學農民戰爭百周年記念事業推進委員會, 《東學農民

바 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동학농민군의 지향은 분명히 서구 세계의 시민혁명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서구 세계의 경험이 비록 그 경로와 시공간이 달랐다 하더라도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권리”를 두고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에서 제기된 혁명 주도세력의 요구안을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서구 세계에서의 혁명은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록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일지언정 봉건 정부도 혁명을 제도적으로 개혁이라는 형태로 수용하여야 했고 그렇게 해서 근대 국민국가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조선 또한 기존의 봉건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외부적인 혁명의 압력에 대응하여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¹³ 이를테면 근대 한국이 개혁을 추진하던 19세기는 전세계적으로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필두로 하여 혁명에 대응한 반혁명이었지만 결국은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수동 혁명, 즉 개혁(Reformation)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였고 한국 또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사적 혁명과 개혁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서구 세계의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에서 제기된 혁명 주도세력의 요구안¹⁴ 및 영국, 미국, 프랑스의 혁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서구 세계 바깥의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혁명 과정¹⁵과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을 기존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틀에서 분석하였던 것을 벗어나 세계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戰爭史料叢書》2, 史芸研究所, 1996, 124쪽.

13 수동 혁명 및 이와 관련 있는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은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 장문석, 2000, 〈이탈리아 만들기, 이탈리아인 만들기-리소르지멘토와 미완의 국민형성〉, 《역사비평》 53; 장문석, 2010, 〈그람시와 리소르지멘토〉, 《프랑스사연구》 22. 본 연구는 한국 근대 개혁운동을 수동 혁명 이론에 비추어 재해석하는데 있다.

14 이를 위해 필자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유바다, 2021, 〈동학농민전쟁과 갑오개혁에 대한 시민혁명적 관점의 분석〉, 《동학학보》 58.

15 이를 위해 필자는 이미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유바다, 2025,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수동 혁명’적 성격에 관한 연구〉, 《제62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회와 한국 근대 개혁운동의 세계사적 의미》,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 전 세계 혁명에서 천명된 租稅法律主義와 罪刑法定主義

1) 장기 19세기 서구 세계 혁명의 전개 과정

서구 세계에서 근대 국민국가는 통치의 대상이었던 인민이 기존의 봉건적 지배 질서를 무너트리는 혁명을 일으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함으로써 주권을 쟁취하고 이들이 국민이 되어 수립한 정치체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이 17세기 청교도혁명 및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가장 먼저 국민국가를 구성하였고 미국이 18세기 독립혁명을 통하여 수립되었다. 미국혁명의 뒤를 이어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프랑스혁명은 1815년 빈체제의 성립과 함께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다시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났고 1848년 2월에 이르러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통하여 서구 세계는 혁명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 체제 수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서구 세계의 근대 국민국가는 모두 혁명을 통하여 창출되었다. 다음은 유럽 각국의 혁명 및 국민국가 수립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순번	구체제	연도	혁명	신체제	경과
1	프랑스 왕국	1848	2월 혁명	프랑스 제2공화국	프랑스 제2제국(1852) → 프랑스 제3공화국(1870)
2	독일 연방	1848	3월 혁명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	프로이센 헌법 제정(1848)→독일 제국(1871) →11월 혁명(1918)
3	오스트리아 제국	1848	3월 혁명		대타협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67)
4	헝가리 왕국	1848	헝가리 혁명	헝가리국	
5	이탈리아	1848	제1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이탈리아 통일 운동	사르데냐 왕국 헌법(1848) → 이탈리아 왕국(1861)
6	포젠 대공국	1848	1848년 대폴란드 봉기	폴란드 국민회의	포젠 주(1848)→ 폴란드 제2공화국(1918)
7	스웨덴 왕국	1848	3월 폭동		
8	덴마크 왕국	1848	국가 자유주의 운동	덴마크 왕국 헌법	
9	왈라키아 공국	1848	왈라키아 혁명	임시정부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1859) → 루마니아 연합공국(1862) → 루마니아 왕국(1881)
10	몰다비아 공국	1848	몰다비아 혁명	몰다비아 혁명 위원회	

앞의 현황을 보면 서구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혁명을 통하여 국민국가를 수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혁명을 겪더라도 국민국가 수립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2월 혁명 직후 프랑스 제2공화국이 세워졌지만 다시 제2제정을 겪은 뒤 1870년에 이르러서야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3월 혁명 직후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소집되었지만 성공

을 거두지 못하고 통일은 1871년 독일 제국 성립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탈리아에서도 혁명의 일환으로 독립전쟁이 일어났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통일은 1861년에 가서야 이루어진다. 헝가리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프로이센 왕국조차도 혁명의 취지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였고 헝가리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스트리아와의 대타협을 통하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서구 세계에서 국민국가 수립은 혁명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영국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 1215년 : 租稅法律主義와 罪刑法定主義의 기초

주지하다시피 근대국민국가 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Constitution) 체제는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영국 국왕 존(John)으로 하여금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¹⁶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8조 그 어떤 과부도 그녀가 남편 없이 살고 싶어 하는 한, 강제로 결혼해서는 안된다.¹⁷

제12조 우리 왕국 내의 어떠한 군역면제세 또는 특별세는 나라 전체의 협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¹⁸

제39조 자유민은 그와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의 적법한 판정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재산이 박탈되거나, 법적 보호가 박탈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¹⁹

제12조는 그 유명한 租稅法律主義(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를 나타낸다. 국왕이라 하더라도 대표, 즉 議會의 승인 없이 조세를 거둘 수 없다는 이 조항은 이후 법률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명시한 서구 세계의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룬 것이다. 이때 확립된 원칙은 이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 1628),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²⁰ 이와 같은 움직임은 후술하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된 조세 저항과도 일목상통하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제39조 또한 罪刑法定主義를 위시로 한 근대 헌법의 핵심 요소가 들어 있다. 역시 국

16 영국 대헌장(Magna Carta)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아이버 제닝스 경 저, 안경환, 이동민 역, 〈마그나 카르타와 그 영향〉, 《저스티스》 27-2, 1994; 윤정인, 김선택, 〈마그나 카르타와 저항권〉, 《법학논총》 32-4, 2015; 김영희, 〈마그나 카르타와 영국의 재산법〉, 《가족법연구》 30-1, 2016; 황한식, 〈마그나 카르타〉, 《법조》 68-1, 2019.

17 J. C. Holt, *Magna Car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381, “8. No widow is to be compelled to marry so long as she wishes to live without a husband”.

18 J. C. Holt, *Ibid*, p.383, “12. No scutage or aid is to be imposed in our realm except by the common counsel of our realm”.

19 J. C. Holt, *Ibid*, p.389, “39. No free man is to be taken or imprisoned or disseised or outlawed or exiled or in any way ruined, nor will we go or send against him, except by the lawful judgement of his peers or by the law of the land.”.

20 황남석, 앞의 논문, 129~131쪽.

왕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人身에 대한 자의적인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근대국민국가 구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天賦人權의 절대성을 나타낸다. 이로 인하여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있었다. “人權尊重”이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기에 대헌장이 죄형법정주의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 또한 후술하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당시 제기된 인권, 평등권 문제와 상통한다.

한 가지 특이한 조항은 과부의 婚姻權을 명시한 제8조다. 吳知泳의 《東學史》 간행본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靑春寡婦는 改嫁를 許할 事”가 제기된 바 있다. 대헌장의 제8조가 과부의 강제혼인을 금지했다면,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과부의 改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영국과 조선의 과부가 처했던 환경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제혼인을 금지하던 개가를 허용하건 이는 모두 과부의 정당한 혼인권을 명시한 것이다. 비록 시기와 장소는 다르지만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국과 조선 모두에 드러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미국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776년 : 저항권 천명

미국 독립선언서 또한 영국 혁명에 이어 미국 혁명을 이루어낸 문서로 주목받는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에서 우리는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²²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²³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²⁴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는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21 金永鉉, 앞의 논문, 317~321쪽.

22 안경환,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국제지역연구》 10-2, 2001, 110쪽,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23 안경환, 같은 논문, 111쪽,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24 안경환, 같은 논문, 113쪽,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²⁵

실로 인간사를 숙려해 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는 경미하고도 일시적인 이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폐해를 최대한으로 감내하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험이 입증하는 바이다.²⁶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인민을 절대전제정체에 예속시키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 진 때에는,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강구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가 감내해 온 고통이 바로 이러한 것인즉 이제는 ㉞은 정부제도를 변혁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 국왕의 치적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의 연속이었으며, 그것은 이 땅에 절대전제체제를 수입하기 위한 노골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²⁷

앞의 독립선언서에서 ㉠은 평등권, ㉡은 천부인권, ㉢은 생명권, ㉣은 행복추구권, ㉤과 ㉥은 저항권을 의미하며 이는 모두 근대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 당시 격문에도 평등권, 천부인권, 생명권, 저항권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4) 프랑스 인권선언서(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년 : 보편적 인권으로의 도약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담아낸 인권선언서,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영국 혁명, 미국 혁명에 뒤이은 시민혁명의 절정을 의미한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Peuple Français)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망각 또는 경시가 만인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의 엄숙한 선언 속에 인간의 생래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밝히려고 결정하였다. 이 선언을 항상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제시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며, 또 입법권(pouvoir législatif)과 집행권(pouvoir exécutif)의 행위가 항상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되고, 그럼으로써 보다 존중되도록 하며,

25 안경환, 같은 논문, 113쪽,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26 안경환, 같은 논문, 113쪽,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e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27 안경환, 같은 논문, 114쪽,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이후 단순하고 자명한 원리들에 근거한 시민의 요구가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지고의 존재(etre supreme) 앞에, 그 가호 아래 인간과 시민의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언한다.²⁸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distinction sociale)은 공동의 이익(utile commune)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²⁹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association politique)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들의 유지에 있다. 이러한 권리란 자유(liberte)·소유(propriete)·안전(surete)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resistance a l'oppression)이다.³⁰

제3조 모든 주권(souverainete)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서 유래하지 않는 권위(authorite)를 행사할 수 없다.³¹

제7조 누구든지 법률로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ordre)을 청원하거나 발하거나 집행하거나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률로 소환되거나 체포된 모든 시민은 바로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³²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 조세(contribution publique)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유로이 그것에 동의하며, 그 용도를 감시하며, 그 액수(quotite), 기준(assiette), 징수(recouvrement) 및 존속기간(duree)을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³³

제17조 소유권(propriete)은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므로 누구든지 적법하게 확인된 공공필요(necessite publique)에 의하여 명백하게 요구되고, 정당한 사전의 보상(prealable indemnite)이라는 조건 하

28 김충희, <프랑스 역대 헌법전 (1)>, 《東亞法學》 69, 2015, 332쪽; L. Duguit, H. Monnier, *Les constitutions et les principales lois politiques de la France depuis 1789*, Paris : F. Pichon, 1898, p.1, “Les Représentans du Peuple François, constitués en Assemblée Nationale, considérant que l’ignorance, l’oubli ou le mépris des droits de l’Homme sont les seules causes des malheurs publics et de la corruption des Gouvernemens, ont résolu d’exposer, dans une Déclaration solennelle, les droits naturels, inaliénables et sacrés de l’Homme, afin que cette Déclaration, constamment présente à tous les Membres du corps social, leur rappelle sans cesse leurs droits et leurs devoirs ; afin que les actes du pouvoir législatif, et ceux du pouvoir exécutif pouvant à chaque instant être comparés avec le but de toute institution politique, en soient plus respectés ; afin que les réclamations des Citoyens, fondées désormais sur des principes simples et incontestables, tournent toujours au maintien de la Constitution, et au bonheur de tous. En conséquence, l’Assemblée Nationale reconnoît et déclare, en présence et sous les auspices de l’Être Suprême, les droits suivans de l’Homme et du Citoyen.”

29 김충희, 같은 논문, 333쪽; L. Duguit, H. Monnier, *Ibid*, p.2, “Les hommes naissent et demeurent libres et égaux en droits. Les distinctions sociales ne peuvent être fondées que sur l’utilité commune.”

30 김충희, 같은 논문, 333쪽; L. Duguit, H. Monnier, *Ibid*, p.2, “Le but de toute association politique est la conservation des droits naturels et imprescriptibles de l’Homme. Ces droits sont la liberté, la propriété, la sûreté et la résistance à l’oppression.”

31 김충희, 같은 논문, 333쪽; L. Duguit, H. Monnier, *Ibid*, p.2, “Le principe de toute Souveraineté réside essentiellement dans la Nation. Nul corps, nul individu ne peut exercer d’autorité qui n’en émane expressément.”

32 김충희, 같은 논문, 333쪽; L. Duguit, H. Monnier, *Ibid*, p.2, “Nul homme ne peut être accusé, arrêté, ni détenu que dans les cas déterminés par la Loi, et selon les formes qu’elle a prescrites. Ceux qui sollicitent, expédient, exécutent ou font exécuter des ordres arbitraires, doivent être punis ; mais tout Citoyen appelé ou saisi en vertu de la Loi, doit obéir à l’instant : il se rend coupable par la résistance.”

33 김충희, 같은 논문, 334쪽; L. Duguit, H. Monnier, *Ibid*, p.3, “Tous les Citoyens ont le droit de constater, par eux-mêmes ou par leurs Représentans, la nécessité de la contribution publique, de la consentir librement, d’en suivre l’emploi et d’en déterminer la quotité, l’assiette, le recouvrement et la durée.”

에서가 아니면 이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³⁴

전문의 ㉠과 제1조는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저항권을 위시한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3조는 국민주권주의, 제7조는 대헌장에도 명기된 죄형법정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제14조 또한 대헌장에 명기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재산의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은 모두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담겨져 있다.

5) ‘반혁명’을 주도한 프로이센의 ‘혁명’의 제도적 수용

1848년 혁명에 대응하여 ‘반혁명’을 주도한 프로이센 왕국은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1850년 1월 31일 국왕의 긴급명령을 통해 直接·國稅의 납세액에 따른 등급선거제인 3급제 선거법(Dreiklassen-Wahlsystem)에 따라 선출된 보수적 성향의 의원을 동원하여 프로이센 헌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제정한 제국헌법의 영향으로 군주제의 원칙하에 입헌군주제의 헌법 형식을 취했다. 물론 이 헌법은 제국헌법과 관련하여 볼 경우에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의 패배와 보수주의의 승리 내지는 재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시민계층을 무마하기 위해 자유주의적 원칙들을 과감히 포함했는데 이것은 보수적 성향의 정치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³⁶ 이를테면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천명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분명히 반영되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5조[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 제한, 특히 구금이 허용되는 조건과 방식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조[재판을 받을 권리] 누구든지 그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예외재판소와 특별위원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형벌] 형벌은 법률에 따라서만 이를 부과할 것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입법권] 입법권은 국왕과 두 개의 의원에 의해서 공동으로 행사된다.

모든 법률은 국왕과 양 의원의 일치를 필요로 한다.

재정법안과 예산안은 먼저 제2원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제1원에 의해서 일괄하여 승인 또는 거부된다.

제100조[조세법률주의] 국고를 위한 조세와 공과는 국가예산에 계상하거나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명해진

34 김충희, 같은 논문, 334쪽; L. Duguit, H. Monnier, *Ibid.*, p.3, “Les propriétés étant un droit inviolable et sacré, nul ne peut en être privé, si ce n’est lorsque la nécessité publique, légalement constatée, l’exige évidemment, et sous la condition d’une juste et préalable indemnité.”

35 김도현, 2006, 〈獨逸의 近代憲法史에 관한 一 考察〉, 《憲法學研究》 12-1, 167~168쪽.

36 김장수, 2022, 《1848 독일 혁명》, 푸른사상사, 2013쪽.

경우에만 이를 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³⁷

앞의 제5조, 제7조, 제8조는 죄형법정주의를, 뒤의 제62조, 제100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듯 프로이센 봉건 정부의 반혁명 활동은 결국 외부, 내부로부터의 혁명으로부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여 제도화된 혁명, 즉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6) ‘수동 혁명’ 차원에서의 이탈리아 혁명

다음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담긴 ‘수동 혁명(Passive Revolution)’ 이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 또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의 혁명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사회 집단이 다른 사회 집단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피에몬테, 즉 사르데냐 왕국)가, 그 제한된 권력에도 불구하고 ‘지도적’이었어야 할 그 사회 집단을 ‘지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즉 ‘수동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³⁸

이와 같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동·국가적 초월’로서 이탈리아의 리소르지멘토(통일 운동)처럼 ‘수동 혁명’이 진행되어 유럽 대륙에 근대국가가 형성되었다.³⁹ 즉, 1789년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공화주의자와 나폴레옹의 군대를 통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된 위대한 혁명의 ‘수동적’ 측면이 19세기 서구 혁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제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임으로써, 프랑스에서처럼 구제도를 즉각적으로 붕괴시킨 것이 아니라 1870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개량주의적’으로 침식해 들어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혁명은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고,⁴⁰ 이 또한 혁명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개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의 상징은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과 함께 계승한 사르데냐 왕국의 1848년 헌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르데냐 왕국은 1848년 2월 혁명, 3월 혁명이 차례로 일어나자 곧바로 3월 4일 토리노에서 이른바 알베르티노 헌장(Statuto Albertino)을 선포하였다. 여기에서 수용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24조 왕국의 모든 주민은 계급이나 직함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 및 군직에 취임할 자격이 있다.⁴¹

37 김효전, 2015, 〈프로이센 헌법〉, 《憲法學研究》 21-1, 437~439쪽.

38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옮김, 1993,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수고〉, 《그람시의 옥중수고》 2, 거름아카데미, 62쪽.

39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52쪽.

40 안토니오 그람시, 앞의 책, 154쪽.

41 S. M. Lindsay, Leo S. Rowe, 1894,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Italy*, Philadelphia :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pp.30-31, “ART. 24. All the inhabitants of the Kingdom, whatever their rank or title, shall enjoy equality before the law. All shall equally enjoy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be eligible to civil and military offic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제26조 개인의 자유는 보장된다. 법률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⁴²

제30조 의회의 동의와 국왕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거나 징수될 수 없다.⁴³

물론 위와 같이 사르테나 왕국이 혁명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드러난다. 국가는 대의제 군주정에 의하여 통치되며(제2조), 국왕의 인격은 신성불가침이다(제4조). 국왕은 국가의 모든 관직을 임명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과 규칙을 공포한다(제6조). 또한 국왕만이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할 권한을 가진다(제7조).⁴⁴ 대의제(representative)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군주정(monarchical government)이며 법률 제정을 비롯한 입법권 또한 군주에게 귀속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의 기본권도 다음과 같이 기묘하게 제한된 측면이 있었다.

제28조 언론은 자유로우나, 법률은 이러한 자유의 남용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 교리문답서, 전례서 및 기도서는 주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인쇄될 수 없다.⁴⁵

제29조 모든 종류의 재산은 불가침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확정된 공공복지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고 이전할 수 있다.⁴⁶

제32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는 인정되나, 공공복리를 위해 이 특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단, 이 특권은 공공장소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집회는 전적으로 경찰법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⁴⁷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나 법률에 따라 남용이 금지될 수 있고, 사적소유권 또한 인정되나 법률에

42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30-31, "ART. 26. Individual liberty is guaranteed. No one shall be arrested or brought to trial except in cases provided for and according to the forms prescribed by law."

43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30-31, "ART. 30. No tax shall be levied or collec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Chambers and the sanction of the King."

44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26-27, "ART. 2. The State is governed by a representative monarchical government, and the throne is hereditary according to the Salic law. ART. 4. The person of the King is sacred and inviolable. ART. 6. The King appoints to all the offices of the State and makes the necessary decrees and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laws, provided that such decrees do not suspend or modify their observance. ART. 7. The King alone sanctions and promulgates the laws. "

45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30-31, "Art. 28. The press shall be free, but the law may suppress abuses of this freedom. Nevertheless, Bibles, catechisms, liturgical and prayer books shall not be printed without the previous consent of the bishop."

46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30-31, "Art. 29. Property of all kinds whatsoever shall be inviolable. In all cases, however, where the public welfare, legally ascertained, demands it, property may be condemned and transferred in whole or in part after a just indemnity has been paid according to law."

47 S. M. Lindsay, Leo S. Rowe, *Ibid*, pp.30-31, "Art. 33.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without arms, is recognized, subject, however, to the laws that may regulate the exercise of this privilege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welfare. This privilege is not applicable, however, to meetings in public places or places open to the public, which shall remain entirely subject to police law and regulation."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이전될 수 있었다. 집회의 권리 또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이와 같이 사르데냐 왕국은 1848년 2월 혁명 및 3월 혁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개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의 성립을 이룰 수 있었다. 수동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후 이탈리아 왕국은 분명히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도입한 근대 국민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7) 오스만 제국의 혁명의 수용과 개혁

서구 세계와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던 비서구 세계 국가였던 오스만 제국의 개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지마트(Tanzimat) 자체가 오스만 제국 황제 압둘메지드 1세(Abdülmejid I, 1839~1861 재위)와 압둘아지즈(Abdulaziz, 1861~1876 재위)의 치세에서 공포된 일련의 대개혁⁴⁸ 내지 개편을 의미한다. 1876년 12월 압둘하미드 2세(Abdul Hamid II, 1876~1909 재위)에 이르러 선포된 오스만 제국 헌법 중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수용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오스만 제국 왕조 구성원의 자유, 부동산 및 개인 재산, 그리고 평생 동안의 시민적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⁴⁹

제9조 모든 오스만인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개인의 자유를 누린다.⁵⁰

제10조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불가침하다.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와 법률이 정한 형식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도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없다.⁵¹

제25조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액도 부과금이나 세금 또는 다른 명칭으로 부과될 수 없다.⁵²

오스만 제국조차도 법률에 의지 하지 않은 처벌과 과세를 금지하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 황제는 면책특권을 수여받았고(제5조)⁵³ 대신 임면권을 독점하였다(제7조).⁵⁴ 그밖에 오스

48 이은정, 2010, <19세기 오스만제국의 위기와 '이슬람적 근대화'>, 《서양사연구》 42.

49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908, "The Ottoman Constitution, Promulgated the 7th Zilbridje, 1293 (11/23 December, 1876)",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4, pp.367-368, "ART. 6. The liberty of the members of the Imperial Ottoman dynasty, their property both real and personal and their civil list during their whole life are under the guarantee of everybody."

50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p.367-368, "ART. 9. All the Ottomans enjoy individual liberty on condition of not attacking the liberty of other people."

51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p.367-368, "ART. 10. Individual liberty is absolutely inviolable. Nobody can under any pretence suffer any penalty whatever except in the cases determined by law and according to the forms prescribed by it."

52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370, "ART. 25. No sum of money can be levied as an impost or tax or under any other denomination except by virtue of the law."

53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p.367-368, "ART. 5. His majesty the Sultan is irresponsible : His person is sacred."

54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p.367-368, "ART. 7. His majesty the Sultan counts among the number of

만 제국 황제에게 부여된 특권은 다음과 같다.

황제(술탄)은 화폐를 주조한다. 공개 기도 시간에 모스크에서 그의 이름이 발표된다. 그는 강대국들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전쟁을 선포한다. 그는 평화를 맺는다. 그는 바다와 육지에서 군대를 지휘한다. 그는 군사 작전을 명령한다. 그는 샤리아(신성한 법)와 법률의 처분을 집행한다. 그는 공공 행정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 그는 형사 재판소에서 부과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한다. 그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연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원 재선거를 조건으로 대의원을 해산한다.⁵⁵

화폐주조권, 조약체결권, 선전포고권, 평화조약체결권, 군통수권, 군작전권, 법률집행권, 규정제정권, 사면권, 의회해산권 등이 부여되었다. 헌법과 의회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군주에게 광범위한 특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 역시 대내외적 압력에 따른 수동적 개혁 조치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압둘하미드 2세는 헌법 제정 후 2개월 만에 헌법을 기초한 미드하트를 해임하고 의회 소집을 중단하였다.⁵⁶ 헌법 또한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지되었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의 개혁 작업은 이탈리아 왕국과 달리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8)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수립 과정

일본은 기존의 막번 체제를 무너트리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근대 개혁에 착수하였고 결국 헌법을 마련하여⁵⁷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이들테면 일본이 1854년 서구 세계의 압력을 받고 개항을 하면서 마주친 문제는 불평등조약의 개정 문제였다. 불평등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서양 각국에 부여한 治外法權을 철폐하고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혁명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한 서양 각국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⁵⁸ 이로 인하여 ‘수동’적으로 혁명을 받아들인 결과 1889년 大日本帝國憲法을 제정할 수 있었다. 이 헌법에 수용된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 관련 조관은 다음과 같다.

his sovereign rights the following prerogatives : He names and revokes the Ministers ; he confers grades functions and the insignia of his orders;”.

55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Ibid*, pp.367-368, “he coins money ; his name is pronounced in the mosques during the public prayers; he concludes treaties with the powers; he declares war; he makes peace; he commands the armies by sea and land; he orders military movements; he causes to be executed the dispositions of the Sheri (sacred law) and the laws; he makes the regul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he remits or commutes penalties imposed by the criminal tribunals; he convokes or prorogues the general assembly and he dissolves, if he deem necessary, the chamber of deputies on condition of proceeding to the reëlection of the deputies.”.

56 이동수, 2021, 〈제한된 근대화의 딜레마: 오스만제국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7-1,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쪽.

57 방광석, 2008,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 이토 히로부미와 ‘제국헌법체제’》, 혜안.

58 尾佐竹猛, 1943, 〈條約改正と憲法・法律〉, 《日本憲政史の研究》, 一元社, 328~333쪽.

제23조 일본 신민은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체포나 감금, 심문 및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⁵⁹

제24조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⁶⁰

제25조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허락 없이 住所의 침입을 받거나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⁶¹

제26조 일본 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信書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⁶²

제27조 일본 신민은 그 소유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⁶³

제62조 새로운 조세를 매기거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단 報償에 속하는 행정상의 수수료 및 기타의 收納金は 前項에 따르지 아니한다. 國債를 起債하거나 예산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것은 제국의회(제국)의 협찬을 거쳐야 한다.⁶⁴

특히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일본 신민의 기본권이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일본의 형사법 체계를 서구 세계의 그것과 같도록 하여 치외법권을 비롯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일본도 천황이 제국(제국)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지고(제5조)⁶⁵ 행정각부의 문무관을 임명하며(제10조)⁶⁶ 육해군을 통수하고(제11조)⁶⁷ 계엄을 선포(제14조)⁶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의 신분제 철폐, 租稅問題의 釐整 요구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거론된다. 첫째,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타난 폐정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1894년 당시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커다란 약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동학관련판결선고서》 중 <전봉준판결선고서>에 나타난 1894년 4월 전봉준의 폐정

59 《大日本帝國憲法》, “第二十三條 日本臣民ハ法律ニ依ルニ非スシテ逮捕監禁審問處罰ヲ受クルコトナシ”.

60 《大日本帝國憲法》, “第二十四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裁判官ノ裁判ヲ受クルノ權ヲ奪ハルハコトナシ”.

61 《大日本帝國憲法》, “第二十五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其ノ許諾ナクシテ住所ニ侵入セラルヘ及搜索セラルハコトナシ”.

62 《大日本帝國憲法》, “第二十六條 日本臣民ハ法律ニ定メタル場合ヲ除ク外信書ノ秘密ヲ侵サルハコトナシ”.

63 《大日本帝國憲法》, “第二十七條 日本臣民ハ其ノ所有權ヲ侵サルハコトナシ 公益ノ爲必要ナル處分ハ法律ノ定ムル所ニ依ル”.

64 《大日本帝國憲法》, “第六十二條 新ニ租稅ヲ課シ及稅率ヲ變更スル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ヘシ 但シ報償ニ屬スル行政上ノ手数料及其ノ他ノ收納金ハ前項ノ限ニ在ラス 國債ヲ起シ及豫算ニ定メタルモノヲ除ク外國庫ノ負擔トナルヘキ契約ヲ爲スハ帝國議會ノ協贊ヲ經ヘシ”.

65 《大日本帝國憲法》, “第五條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

66 《大日本帝國憲法》, “第十條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掲ケタルモノハ各々其ノ條項ニ依ル”.

67 《大日本帝國憲法》, “第十一條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

68 《大日本帝國憲法》, “第十四條 天皇ハ戒嚴ヲ宣告ス 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개혁안이 있다. 이 판결선고서에는 27조목이 제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어떤 일인지 13조목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전봉준이 직접 기록한 자료라기보다는 전봉준을 심판한 法部の 기록이란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대한계년사》에 기록된 1894년 5월 장성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다. 전봉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나 확증이 없는 점, 비교적 후대인 《대한계년사》에 실린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넷째, 1894년 5월 전라도 유생들이 순변사 이원희에게 올린 原情 14개조와 原情列錄 24개조가 있다. 김윤식의 《沔陽行遣日記》에 실려 있다. 다만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일정 부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약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1894년 8월 《계초존안》에 실린 전주 士民의 폐정개혁안이 있다. 이 또한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연관성은 불분명하다.

위의 자료들이 각기 약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지영 《동학사》의 폐정개혁안, 《동학관련판결선고서》의 1894년 4월 전봉준의 폐정개혁안, 《대한계년사》에 실린 1894년 5월 장성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직접 다루어볼 필요가 있다. 오지영 《동학사》의 폐정개혁안은 기존 여러 연구를 통하여 그 진위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폐정개혁안이기에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동학관련판결선고서》에 실린 폐정개혁안은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인 점에서 분명히 다를 필요가 있다. 1894년 5월 장성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또한 마찬가지로 전봉준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다만 1894년 5월 전라도 유생들의 원정과 1894년 8월 전주 사민의 폐정개혁안은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관련성이 없고 그 역사적 중요성이 크게 거론되지 않은 점에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의 폐정개혁안들은 모두 당시의 기록이 아니거나,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기록이 아니거나, 동학농민군 지도부와 연관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충할 1894년 당시 동학농민군의 기록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1893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발통문〉은 동학농민군 최초봉기 당시의 지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다루고자 한다.⁶⁹ 다만 이 자료 역시 당시의 기록이 아니란 점에서 약점이 있다. 다음으로 1894년 3월 25일 발포된 〈무장포고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서는 제1차 동학농민전쟁의 시작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향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점에서 폐정개혁안보다 오히려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료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장포고문〉⁷⁰은 전봉준이 직접 작성한 바로 1894년 3월 당시의 기록이

69 사발통문 및 고부농민봉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용덕, 〈격문을 통해서 본 전봉준의 혁명사상〉, 《나라사랑》 15, 1974; 慎鍾廈, 〈古阜民亂의 沙鉢通文〉,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魯山劉元東博士 華甲紀念論叢》, 정음문화사, 1985;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 (上)〉, 《韓國史研究》 48, 1985; 鄭昌烈, 〈古阜民亂의 研究 (下)〉, 《韓國史研究》 49, 1985; 성주현,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2013; 강효숙, 〈동학농민전쟁에 있어 고부봉기의 위상-사발통문과 일본 측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2013; 하우봉, 〈동학농민혁명과 고부봉기의 위상〉, 《전북사학》 50, 2017.

70 무장포고문 및 무장기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慎鍾廈, 〈甲午農民戰爭의 第1次農民戰爭〉, 《韓國學報》 40, 1985; 李眞榮, 〈茂長起包의 成立과 全羅道 高敞地域의 동학농민혁명〉, 《한국근현대사연구》 19, 2001; 배항섭, 《동학사》의 제1차 동학농민전쟁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 내용분석, 《韓國史研究》 170, 2015; 배항섭, 〈동학농민군의 〈무장기포〉와 〈무장포고문〉〉

다. <백산대회 격문> 또한 오지영 《동학사》에 실린 약점이 있으나 1894년 3월의 정황을 담은 만큼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사발통문>, 1893년 11월 : 저항권 지향

1968년 발견된 사발통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나, 여기서는 사발통문에 담긴 동학농민혁명 지도부의 혁명 정신을 추출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사발통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癸巳十一月(계수십일월) 日(일)

各里々(곡이이)執綱(집강) 座下(좌하)

.....

右(우)와 如(여)히 檄文(격문)을 四方(소방)에 飛傳(비전)하니 物論(물론)이 昇沸(성비)하니

每日(매일) 亂亡(난망)을 謳歌(구가)하던 民衆(민중)드른 處々(처처)에 모여서 말하니

<낫네 낫서 亂離(난이)고 낫서> <에이 참 줄 되얏지 그양 이덕로 지니서야 百姓(백성)이 혼사름이누 어대 누 머릿갯누> 하며 期日(기일)이 오기문 기다리더로

이썩에 道人(도인)드른 先後策(선후책)을 討議決定(토의결정)하기 爲(위)하니 古阜(고부) 西部面(서부면) 竹山里(죽산이) 宋斗浩家(송두호가)에 都所(도소)를 定(정)하고 每日(매일) 雲集(운집)하니 次序(차서)를 決定(결정)하니 그 決意(결의)된 內容(내용)은 左(좌)와 如(여)하니

一、古阜城(고부성)을 擊破(격파)하고 郡守(군수) 趙秉甲(조병갑)을 梟首(효수)할 事(스)

一、軍器廠(군기창)과 火藥庫(화약고)를 占領(점령)할 事(스)

一、郡守(군수)의게 阿諛(오유)하니 人民(인민)을 侵魚(침어)한 貪吏(탐이)를 擊懲(격징)할 事(스)

一、全州營(전주영)을 陷落(함락)하고 京師(경수)로 直行(직행)할 事(스)

右(우)와 如(여)히 決意(결의)가 되고 卽(즉)서 軍略(군략)에 能(능)하고 庶事(서사)에 敏活(민활)한 領導者(영도자)될 將(장)⁷¹

전반적으로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서에 나타난 저항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일 亂亡을 謳歌하던 민중들이 亂離를 반가워한 대목과 古阜城을 격파한 다음에 全州營을 함락하고 京師로 直向하고자 한 지도부들의 인식은 바로 미국 식민지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미국 혁명 및 프랑스 혁명과 그리 다를 바 없었음을 보여준다.

에 대한 이해의 변천과정 고찰, 《역사와 담론》 79, 2016.

71 외솔회, <沙鉢通文>, 《나라사랑》 15, 1974, 134~135쪽.

2) <무장포고문>, 1894년 3월 25일 : 천부인권과 저항권 사상의 발로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1894년 1월 고부봉기를 뒤로하고 같은 해 3월 25일 茂長縣에 농민군을 집결시키고 起包하였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다. 이때 전봉준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내걸어 혁명 이념을 널리 선포하였다.

㉠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다. 군신부자는 인륜 중에서 큰 것인데, 임금이어질고 신하가 강직하며, 아버지가 인자하고 자식이 효도를 한 이후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끝이 없는 복이 올 수가 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자애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며, 신통력 있는 명확함과 성스러운 명석함을 지니셨다. 현명하고 어질며 바르고 강직한 신하가 주위에서 명석하도록 도와주면 堯舜의 교화와 文景의 통치를 가히 지정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랄 수가 있다.

㉡ 지금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며, 전하의 총명을 가려서 아부하고 뜻만 맞추면서 충성스럽게 諫言을 하는 선비에게는 요망한 말을 한다고 하고, 정직한 사람을 비도라고 부른다. 안으로는 나라에 보답하는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관리가 많아, 백성들의 마음은 날마다 더욱 변하여 가정에 들어가서는 생업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고, 밖에 나와서는 몸을 보호할 방법이 없으며, 학정이 날마다 심하여 ‘악’하는 소리가 서로 계속되고 있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와 부모와 자식의 윤리, 위와 아래의 분별이 반대로 무너지고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管子는 말하기를 “四維가 펴지지 않으면 나라가 곧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의 형세는 옛날보다 더 심각하다. 정승 이하부터 방백과 수령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자신을 살찌우고 가문을 윤택하게 할 계획에만 마음이 간절하고, 인사를 하고 관리를 선발하는 통로는 재물을 생기게 하는 길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거시험 장소는 물건을 교역하는 시장과 같게 되었고, 많은 재물과 뇌물이 왕실 창고에 납부되지 않고 도리어 개인 창고를 채워 나라에는 채무가 쌓였다.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란하고 멋대로 놀아 두려워하고 거리키는 것이 없으니, 전국은 어육(魚肉)이 되고 만백성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수령들의 탐학은 참으로 그대로이다. 어찌 백성이 궁핍하고 또 곤궁하지 않겠는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꺾이면 나라는 쇠약해지는데,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시골에 저택을 건립하여 오직 혼자만 온전할 방법만을 찾고, 다만 녹봉과 지위를 흠치니, 어찌 그것이 사리이겠는가?

우리 무리는 비록 시골에 남겨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살고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앉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어, 8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의논하여 지금 의로운 깃발을 내걸고 輔國安民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을 맹세하였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놀라운 것에 속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각 백성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고 태평한 세월이 되도록 함께 기원하며, 모두 임금의 교화에 감화된다면 천만다행이다.⁷²

72 《聚語》, “人之於世 最貴者 以其倫也 君臣父子 人倫之大者 君仁臣直 父慈子孝 然後乃成家國 能逮无疆之福 今我聖上 仁孝慈愛 神明聖睿 賢良正直之臣 翼贊佐明 則堯舜之化 文景之治 可指日而希矣 今之爲臣 不思報國 徒竊祿位 掩蔽聰明 阿意苟容 忠諫之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여 천부인권이 동학농민혁명의 제1정 신임을 뚜렷이 드러냈다. 그리고 ㉡을 통하여 현 지배체제의不正을 꾸짖었다. 이는 미국 혁명 당시의 저항권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실제로 독립선언서에서도 당시 영국 국왕 조지 3세의 부정을 조목조목 꾸짖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봉준 등은 “비록 시골에 남겨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땅에서 먹고 살고 임금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앉아서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어, 8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의논하여 지금 의로운 깃발을 내걸고 輔國安民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것을 맹세”하였다. 즉 죽기살기로 현 지배체제의 부정을 바로잡고 “낡은 정부제도를 변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무장포고문 및 동학농민혁명이 지니고 있는 세계보편사적 특징을 알 수 있다.

3) 오지영 《동학사》의 폐정개혁안, 1926년 : 신분제 철폐 천명

- 一 人命을濫殺한者는버힐事
- 一 貪官汚吏는祛根할事
- 一 橫暴한富豪輩를嚴懲할事
- 一 儒林과兩班輩의巢窟을討滅할事
- 一 賤民等の軍案은불지를事
- 一 中文書는불지를事
- 一 白丁의머리에페낭이를벗기고갓을씨울事
- 一 無名雜稅等은革罷할事
- 一 公私債를勿倫하고過去의것은竝勿施할事
- 一 外賊과連絡하는者는버힐事
- 一 土地는平均分作으로할事
- 一 農軍의두레法은獎勵할事⁷³

위의 폐정개혁안을 분류해 보자면 기본적인 인권(人命을濫殺한者는버힐事), 신분제 철폐를 비롯한 평등권(橫暴한富豪輩를嚴懲할事, 儒林과兩班輩의巢窟을討滅할事, 賤民等の軍案은불지를事, 中文書는불지를事, 白丁의머리에페낭이를벗기고갓을씨울事), 租稅 문제의 釐整(無名雜稅等은革罷할事, 公

士 謂之妖言 正直之人 謂之匪徒 內無輔國之才 外多虐民之官 人民之心 日益淪變 入無樂生之業 出無保軀之策 虐政日肆 惡聲相續 君臣之義 父子之倫 上下之分 逆壞而無遺矣 管子曰四維不張 國乃滅亡 方今之勢 有甚於古者矣 自公卿以下 以至方伯守令 不念國家之危殆 徒切肥己潤家之計 銓選之門 視作生貨之路 應試之場 舉作交易之市 許多貨賂不納王庫 反充私藏 國有積累之債 不念圖報 驕侈淫昵 無所畏忌 八路魚肉 萬民塗炭 守宰之貪虐 良有以也 奈之何民不窮且困也 民爲國本 本削則國殘 不念輔民安民之方策 外設鄉第 惟謀獨全之方 徒竊祿位 豈其理哉 吾徒雖草野遺民 食君之土 服君之衣 不可坐視國家之危 而八路同心 億兆詢議 今舉義旗 以輔國安民 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 雖屬驚駭 切勿恐動 各安民業 共祝昇平日月 咸休聖化 千萬幸甚”;《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124쪽;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7,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 78~80쪽.

73 吳知泳, 〈執綱所의 行政〉, 《東學史(草稿本)》, 192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476~478쪽.

私債를勿倫하고過去의것은竝勿施할事), 토지개혁 및 공동경작 등 경제적 지향(土地는平均分作으로 할事, 農軍의두레法은獎勵할事), 국가주권 및 국기 확립(貪官汚吏는祛根할事, 外賊과連絡하는者는버힐事) 등이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평균분작은 다른 폐정개혁안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점에서 당시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⁷⁴을 따르고자 한다.

4) 〈全瑋準判決宣告書〉의 폐정개혁안, 1894년 4월 : 조세문제의 釐整 제시

전봉준이 제기한 폐정개혁안 중 지금 확실히 남아 있는 것은 《東學關聯判決宣告書》에 실린 것 뿐이다. 1894년 4월 26~27일에 전주성으로 들어간 동학농민군들을 향하여 양호초토사 홍계훈이 격문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 일동이 27조목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청원하였다고 한다. 이 중 남아있는 조목은 13개이다. 임의로 번호를 붙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轉運所를 혁파할 것
2. 國結을 늘이지 말 것
3. 裸負商의 폐단을 금지할 것
4. 道內의 還錢은 전임 감사가 이미 거두어 갔으니 다시 민간에서 징수하지 말 것
5. 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浦口에서 潛商이 쌀을 사는 것을 금지할 것
6. 洞布錢은 戶마다 봄과 가을에 2냥으로 정할 것
7.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낼 것
8.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官爵을 팔며 國權을 농단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
9. 官長, 수령이 된 자가 해당 境內에서 葬事를 치루거나 田畝를 사지 못하게 할 것
10. 田稅는 예전대로 할 것
11. 烟戶雜役을 줄일 것
12. 浦口魚鹽稅를 혁파할 것
13. 洑稅와 宮畚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邑의 수령이 백성의 산에 偷葬하지 못하게 할 것⁷⁵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의 최대 현안은 조세문제의 釐整이었다. 轉運所(1), 國結(2), 還錢(4), 大同米(5), 洞布錢(6), 田稅(10), 烟戶雜役(11), 浦口魚鹽稅(12), 洑稅(13) 등 무려 9개조에

74 배향섭, 1994, 앞의 논문.

75 《東學關聯判決宣告書》, 〈第三十七號 判決宣告書原本〉, “轉運所革罷事 國結不爲加事 禁斷步負商人作弊事 道內還錢舊伯既爲捧去則不得再徵於民間事 大同上納前各浦口潛商貿米禁斷事 洞布錢每戶春秋二兩式定錢事 貪官汚吏竝罷黜事 壅蔽上聰賣官賣爵操弄國權之人一並逐出事 爲官長者不得入葬於該境內且不爲買畝事 田稅依前事 烟戶雜役減省事 浦口魚鹽稅革罷事 洑稅及宮畚勿施事 各邑倅下來民人山地勒標偷葬勿施事”;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8, 429~438쪽;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2014, 201~205쪽.

걸쳐서 조세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는 결국 1215년 영국 대헌장 때부터 제기된 조세법률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개혁안이라고 볼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주요 지향을 판가름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밖에 官長, 수령의 田畝 매수(9) 및 偷葬(14)을 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사적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탐관오리(7)와 국권농단자(8)를 쫓아낼 것을 요구하여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저항권을 방불케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서구 세계에서 근대 혁명 가운데 제기된 조세법률주의와 저항권 사상이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5) 《大韓季年史》의 장성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1894년 5월 : 선명한 정치적 지향 제시

전봉준의 폐정개혁안은 4월에 그치지 아니하고 5월 20일경 재차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大韓季年史》에 따르면 동학 무리들이 퇴각하여 長城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전라감사 김학진에게 13조의 요구 사항을 보냈다고 한다. 이때 제기된 폐정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 一 轉運司를 革罷하고 舊例에 의거하여 각 邑에서 上納케 할 것
- 二 均田御史를 革罷할 것
- 三 貪官汚吏를 懲戒하고 逐出할 것
- 四 各邑의 逋吏로 千金을 犯逋한 자는 그 몸을 죽이고 족속을 징계하지 말 것
- 五 春秋 두 번의 戶役錢은 舊例에 의거하여 每戶 당 一兩 씩 排定할 것
- 六 各項의 結錢과 收斂錢은 平均으로 分排하고 濫捧하지 말 것
- 七 各 浦口의 私貿米는 嚴禁할 것
- 八 各 邑의 守令은 該地方의 用山買庄을 嚴禁할 것
- 九 各國人의 商賈는 各港口에서 買賣하도록 하고 都城으로 들어서 設市하지 말고 各處에 나와 任意 行商하지 말도록 할 것
- 十 行祿商의 폐단을 革罷할 것
- 十一 各 邑吏를 分房할 때 請錢을 징수하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택하여 임명할 것
- 十二 奸臣이 弄權하여 國事가 날로 잘못되고 있으니 賣官을 懲治할 것
- 十三 國太公이 國政에 干預하면 民心이 거의 바라는 것일 것⁷⁶

여기에서도 조세문제의 이정이 두드러진다. 轉運司(1), 均田御史(2), 戶役錢(5), 結錢과 收斂錢(6)

76 鄭喬, 《大韓季年史》上卷, 86쪽, “一轉運司革罷, 依舊自邑上納事, 二均田御史革罷事, 三貪官汚吏懲習逐出事, 四各邑逋吏犯逋千金, 則殺其身, 勿徵族事, 五春秋兩度戶役錢, 依舊例每戶一兩式排定事, 六各項結錢收斂錢平均分排, 勿爲濫捧事, 七各浦口私貿米嚴禁事, 八各邑守令該地方用山買庄嚴禁事, 九各國人商賈, 在各港口買賣, 勿入都城設市, 勿出各處任意行商事, 十行祿商爲弊多端革罷事, 十一各邑吏分房時, 勿捧請錢, 擇可用人任房事, 十二奸臣弄權, 國事日非, 懲治其賣官事, 十四國太公即干預國政, 則民心有庶幾之望事”.

에 대한 조항이 그렇다. 이는 4월 전봉준의 폐정개혁안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수령의 用山買庄을 언급할 것을 요구하여 4월의 폐정개혁안에서 요구한 儉葬 언급과 궤를 같이 하였다. 또한 탐관오리(3)와 捕吏(4), 읍리(11), 그리고 국권농단자(12)를 거론하는 점에서도 4월의 폐정개혁안과 거의 같다. 다만 여기에 國太公을 언급함으로써 더욱 선명한 정치적 지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종합하여 보자면 5월의 폐정개혁안도 조세법률주의와 저항권 사상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혁명, 프랑스혁명, 미국혁명에서 드러난 시민혁명적 성격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外國人의 商賈(9)를 언급함으로써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지향도 나타내고 있었다.

4. 백산대회 개최 경로 및 백산대회 격문에 대한 분석 : 저항권의 재확인

백산대회 격문은 오지영의 《동학사》에 실려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오지영의 《동학사》가 1926년에 저술된 점, 《동학사》에서 백산대회 날짜라 1월 17일로 기재된 점 때문에 백산대회의 실체가 의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奇幸鉉의 《鴻齋日記》가 2011년 발견되면서 김철배가 백산대회 날짜를 1894년 3월 26일로 특정하였다.⁷⁷ 필자 또한 《鴻齋日記》를 비롯하여 기존 공개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를 교차 검토하여 백산대회 날짜를 1894년 3월 26일로 비정하였다.⁷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鴻齋日記》甲午 3월에는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의 시작 및 백산대회에 대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이 남쪽에서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⁷⁹

3월 24일 東學人이 크게 일어났다.⁸⁰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⁸¹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敍,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고 한다.⁸²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道所峯에 올라가 바라

77 김철배, 2016, 《홍재일기》로 본 19세기 말 부안의 사회상과 동학농민혁명, 《부안의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기념사업회.

78 유바다, 2023,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동학농민혁명 연구》 1.

79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3일, “東學之人四千餘名 自南更會古阜白山云”; 《국역 홍재일기》 상, 719쪽.

80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4일, “東學之人大起”; 《국역 홍재일기》 상, 719~720쪽.

81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5일, “東學之人昨入古阜邑 君器奪取 而火藥庫火燃 人名數三人被害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82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6일, “東學之人 茂長高敍興德古阜四邑 軍器奪取 屯聚於古阜馬項云矣”; 《국역 홍재일기》 상, 720쪽.

보았는데 거취를 알 수가 없어서 곧장 내려 왔다. 친구 崔友壽이 聖云과 함께 다녀갔다. 東學軍은 즉각 全州로 향했다고 한다.⁸³

이를 《隨錄》 등 기존 자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23일 東學人 4,000여 명은 근거가 뚜렷하다.

둘째, 3월 23일 이들이 古阜 白山에 다시 모인다는 기술도 신빙성이 있다.

셋째, 동학농민군은 실제로 3월 23일 이미 고부읍내로 진입하였다.

넷째,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는 내용도 근거가 뚜렷하다.

다섯째, 3월 26일 東學人이 茂長, 高敵, 興德, 古阜 4읍에서 軍器를 탈취하고 古阜 馬項에 모였다는 기술은 대체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茂長, 高敵, 興德, 古阜는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茂長에서 기포한 뒤 북상한 경로에 있다.

여섯째, 따라서 3월 27일 東學軍이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 本邑에 들어왔다는 기술 또한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조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동학농민군 일부가 흥덕 줄포에 도착하였다. 그 뒤를 따라서 2~3,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줄포의 射亭에 모였다. 이들은 오후 7~9시 고부읍으로 진입하였다.

3월 24일 동학농민군이 고부읍에서 軍器庫를 탈취하고 火藥庫를 불태웠다. 당일 오후 1~3시 무렵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다. 이들은 古阜 馬項(말목)에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활동은 《鴻齋日記》에 따르면 분명히 3월 24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隨錄》에 보고일(3월 25일 도착한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기준으로 이 활동이 3월 25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⁸⁴ 기행현은 분명히 3월 25일 “東學人이 어제(3월 24일) 古阜邑에 들어가 軍器를 탈취하였는데 火藥庫가 불탔다”고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화약고는 기행현의 진술대로 고부읍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隨錄》의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에 따르면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다가, 화약고가 실수로 불이 나서 모두 타버렸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중인 《1872년 지방지도》 중 古阜 항목에 따르면 斗池는 곧 斗之로 추정되며 馬項 바로 서편에 위치해 있다. 오늘날은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斗池里다. 馬項, 즉 말목장터도 지금 현재 이평면 두지리에 있다. 斗之와 馬項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 《1872년 지

83 《鴻齋日記》, 401쪽, 甲午(1894) 3월 27일, “東學軍昨日移陣白山 而今日入本邑云 故登道所峯 望見則不知去就 故卽爲下來矣 崔友壽兼與聖云來去 東學軍卽向全州云”; 《국역 홍재일기》 상, 720~721쪽.

84 裴元燮, 2002, 〈제1차 동학농민전쟁 시기 농민군의 진격로와 활동양상〉, 《동학연구》 11, 37~38쪽.

방지도》에도 나타나지만 고부 화약고가 斗之에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 고부 화약고가 읍내로부터 상당 거리 떨어진 이평 斗之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梧下記聞》〈茂長縣布告〉 기사에 따르면 “고부군 보고에 저들 무리들이 本郡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고 화약고가 불탔다”⁸⁵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隨錄》에 기재된 3월 25일 未時 고부군 공형의 文狀을 따른 것이다. 이 문장 때문에 고부군 화약고가 두지면에 있었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1872년 지방지도》에 따르면 武器庫, 즉 武庫는 고부읍내 內衙 동편에 있었다. 그리고 “저들 무리들이 斗池面에 나아가 주둔”하였다고 하니 동학농민군 주력은 3월 24일 분명히 古阜 馬項(말목), 斗池에 주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월 25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군 주력의 활동은 불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隨錄》〈甲午三月二十七日 啓草〉 말미의 기술 및 (3월 25일 금구현의 보고)에 따라 이들이 태인과 금구 원평방면으로 향하였다가 이 가운데 일부는 3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고 하였다.⁸⁶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사 일지》⁸⁷에 따르면 태인, 금구, 원평 방면의 활동은 김개남이 활동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개남의 근거지는 태인이었다. 적어도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 주력이 3월 25일 금구 원평까지 진출하였다가 3월 26일 백산으로 되돌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石南歷史》도 동학농민군이 “軍器를 탈취해서 말목 禮洞으로 行進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고 기술하였다. 금구 원평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면 3월 25일 동학농민군 주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鴻齋日記》에 따르면 동학농민군은 “어제(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기고 오늘(3월 27일) 本邑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적어도 백산으로의 진영 이동은 3월 26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3월 24일 오후 1~3시 무렵에서야 고부군의 서북쪽 사이에 난 길로 나아갔던 동학농민군이 그 이후 古阜 馬項(말목)에 모였을 것이고 그 시점은 최대한 3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생각보다 장기간 古阜 馬項(말목)에 머무르다 3월 26일 白山으로 軍陣을 옮겼다고 볼 수 있다.

3월 26일 白山에 진영을 꾸린 동학농민군은 당일 오후 5~7시 무렵 古阜의 白山 禮洞에서 일시에 산을 내려와 본 태인의 용산면 禾湖 新德亭里로 옮겨 주둔하고, 총을 쏘며 소리를 질렀다. 이를 보면 백산대회는 3월 26일 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고 당일 오후 5~7시 무렵에는 이미 산을 내려와 태인

85 《梧下記聞》, 〈茂長縣布告〉, “同日未時 古阜郡報 彼輩進屯本郡斗池面 火藥庫燒燼”;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56쪽.

86 배향섭, 앞의 논문, 37~38쪽.

87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2006, 《동학농민혁명사 일지》, 39~47쪽,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일부의 동학농민군은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그날 밤을 머물렀다(『梧下記聞』叢書1, 56쪽; 『隨錄』叢書5, 178쪽). 이상의 사실로 볼 때 3월 25일 현재 전봉준 부대는 고부의 동북쪽에 있는 백산이 아닌 먼 고부 서북쪽에 있는 군기고를 공격하였으며 그날 밤은 고부 백산과 예동에서 숙영하였다. 또 김개남이 이끄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는 25일 태인에서 점심을 먹고 원평에서 숙영하였다.”

방면에서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3월 27일, 28일의 행적은 잘 알수가 없고 3월 29일 태인읍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백산대회의 실체가 규명되었거니와 여기에서는 오지영의 《동학사》의 〈격문〉에 실린 동학농민군의 지향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檄文

우리가 義를 擧하야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他에 잇지아니하다 蒼生을 塗炭의 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磐泰의 우에다 두자함이다 ㉠안으로는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버리고 밋그로는 強暴한 盜賊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니 兩班과 富豪의 압해 苦痛을 밋는 民衆과 方伯守令의 밋해 屈辱을 밋는 小吏들은 우리와 갓치 冤恨이 甚흔者라 조금도 躊躇치말고 이 時刻으로 이리서라 萬一期會를 이르면 後悔하여 미치지 못하리라

甲午正月十七日

湖南倡義所 在古阜白山⁸⁸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백산대회 격문을 통하여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강포한 도적의 무리를 驅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군의 저항권 사상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따르면 백산대회 직전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은 이미 고부성을 점령하고 군기고를 열어 총창을 거두었다. 그리고 옥문을 깨트리고 죄수를 석방하며 창고를 열어 빈민들을 구휼하였다. 다음으로 읍리 중 군수와 符同하여 민재를 늑탈한 자와 인민을 모살한 자를 베어버리고 郡 경내 토호와 부자로서 민간에 모든 불의한 행위를 한 자는 일일이 징계하였다. 혁명적 상황은 이미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5. 맺음말

1215년 영국혁명, 1776년 미국혁명, 1789년 영국혁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부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혁명의 단초가 되는 저항권 사상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대체로 여기에 부합한다. 조세문제의 이정을 요구하였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였으며 신분제 철폐를 기도하는가 하면 탐관오리 축출을 원

88 吳知泳, 〈檄文〉, 《東學史(草稿本)》, 1926;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456~457쪽.

했다. 다만 토지개혁 문제는 전면적으로 내세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조세문제의 이정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조세주권을 직접 탈취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했고 신분제 철폐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직접 천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영국, 미국, 프랑스가 혁명을 하면서 추구했던 국체가 立憲君主制 혹은 民主共和制에 있었던 반면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은 국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한계는 동학농민군이 국가 주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당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는 국왕과 귀족 간의 오랜 줄다리기를 끝에 결국 귀족이 국왕을 처형하거나(1649, 찰스 1세, Charles I) 국외로 추방하는(1688, 제임스 2세, James II) 등 정치 권력을 확실하게 틀어잡았기 때문에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북미 식민지인들도 8년 간의 독립전쟁(1775~1783) 끝에 영국군을 몰아내고 미합중국을 건국할 수 있었다. 프랑스 부르주아 역시 바스티유 감옥을 쳐부수고(1789) 국왕을 처형한(1793, 루이 16세, Louis XVI) 끝에 제1공화국을 수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구 혁명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도 藩閥 세력이 막부를 타도하고 天皇을 중심으로 한 신정부를 수립(1868)한 바 있다. 그에 비하여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에 의하여 공주 우금치에서 막혔다.

반면에 영국은 대륙과 바다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받을 여지가 적었다. 북미 식민지인에게 영국군은 그 자체로 타도해야 할 외세였지만 식민본국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달리 유럽 대륙의 봉건왕조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 긴 전쟁을 거쳤지만 결국 프랑스가 기존 지니던 충실한 국력에 혁명으로 인한 국민주의적인 열기, 그리고 나폴레옹(Napoléon I)이라는 희대의 영웅이 출현하면서 혁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일본은 비록 서구 열강의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식민지화를 강요받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을 비롯한 천부인권, 국민주권, 국가주권 원리 등 대헌장(1215), 독립선언서(1776), 인권선언서(1789)의 정신을 대부분 수용한 민주헌법이란 점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완전히 무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토론문

김대보(원광대학교 교수)

유바다 교수의 발표문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등장한 개혁안을 서양의 여러 혁명 과정에서 발표된 몇몇 텍스트를 비교하여 동학농민‘혁명’이라는 표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동학이라는 한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저항이 과연 ‘혁명’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 발표문에서 서양 세계의 혁명을 다루는 방식은 지나치게 억지스럽다.

1. 왜 서양 혁명의 사례를 들어서 동학의 특징을 설명해야 하는가?

지난 2014년 9월, 파리1대학 프랑스혁명사연구소(Institut d'histoir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프랑스혁명박물관(Musé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à Vizille), 교토대학, 도쿄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학술대회가 파리1대학과 프랑스혁명박물관에서 이틀 동안 열렸다.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 <프랑스혁명과 메이지>였고, 일본 학자들(특히 교토대학 연구자들)은 당연히 메이지 ‘혁명’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유를 프랑스혁명과 메이지‘혁명’이 가지는 공통점에서 찾았다. 즉, 프랑스혁명은 보편적 ‘인권’을 주장했고, 이에 기초한 농민 봉기가 이어졌는데, 메이지 당시 일어난 ‘치치부 사건’에서 엘리트들이 ‘자유, 민권’을 주장했고, 비단 등 각종 직물을 생산하던 노동자 및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아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교토대학 연구자들의 스승 또는 선배들이 이미 현재 기준으로 약 70년 전에 발표한 것이었지만, 학술대회 당시에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 학자들이 별다른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메이지유신이 아니라 메이지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메이지유신 그 자체에 있는 수많은 사건이나 현상들, 그리고 일본사의 맥락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특징적이고 혁명적이었는지 설명했다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넘어서 학술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었겠지만, 프랑스혁명과 단순히 몇 가지 흐름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 ‘혁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 연구자들의 질문은 대체로 프랑스혁명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동학은 어떠한가? 발표자는 머리말에서 “동학농민전쟁이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p. 3)라고 밝혔지만, 발표문의 제목과 내용 전체를 본다면 오히려 발표자의 말과 반대로 동학농민전쟁은 곧 시민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학이 혁명인지 아닌지는 사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동학을 혁명이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일본인들의 사례와 같이 서양의 혁명과 무엇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 대차대조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맥락에서 동학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특수하고 ‘혁명적’이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아시아 사회에서 신흥 종교를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 기존 질서의 전복이나 기존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전혀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저항운동들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역사적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전 역사학계가 ‘서구중심주의’ 또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서양사 개설서, 세계사 교과서를 다시 집필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학자들의 저서 및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역사의 한 사건을 서양의 혁명(그것도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고, 절대 한 갈래로 묶일 수 없는 것들)과 비교(더욱이 혁명의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불과한 몇몇 텍스트를 발표자가 설정한 주제에 따라 비교)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유럽중심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왜 어떤 사건의 성격을 말할 때 그 준거가 유럽 또는 서양이어야 할까? 앞서 언급한 일본의 사례가 매우 불편한 것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유럽의 역사발전단계와 동일시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건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건지 못할 길을 자신들이 걸었다는 우월성을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대동아공영권’, ‘탈아입구’ 등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학의 ‘혁명성’을 보여주려 한다면, 그 자체로 ‘식민주의’의 유산이지 않을까?

2. ‘혁명’을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역사적 개념을 시대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현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또한, 법칙을 추구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혁명’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정한 정의를 내렸다. 그런데, 역사학에서는 어떨까? 역사학은 절대 ‘법칙’을 찾지 않는다. 역사학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밝혀내려고 하며, 인간이 겪은 모든 경험을 절대 특수한 잣대로 묶으려고 하지 않는다. 즉 개별 인간 및 개별 사회 또는 국가의 특수성, 다양성 등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혁명’을 정의할 수는 있을까? 사실 프랑스혁명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혁명’을 정의하기가 힘들다. 사회과학적인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면, 혁명 전 사회의 부조리, 혁명 과정에서 실시한 개혁 및 혁명가들의 주장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등장한 모든 혁명이 같은 배경에서 같은 목적

으로 일어난 것일까? 17세기 잉글랜드 청교도혁명(지금은 잉글랜드 내전으로 부름) 및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아이티혁명, 바타비아혁명, 그란콜롬비아 운동, 1830년 7월 혁명, 1832년 6월 봉기(레미제라블의 배경), 1848년 2월 혁명 및 뒤이은 유럽 세계의 자유주의 혁명, 러시아혁명, 신해혁명... 이러한 혁명들을 한 가지 테마로 묶을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혁명을 일부 사회과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엮는다면 그 자체로 ‘반역사적’이고 ‘비역사적’이지 않은가?

혹자는 이러한 혁명들을 ‘시민혁명’이라는 범주로 묶는다. 그리고 일부는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한다. 또 이러한 혁명들을 통해 ‘근대국가’가 수립되었다고도 한다. 이 발표문에서도 ‘근대국가’, ‘근대 국민국가’ 등 여러 표현이 혼재되어 있고, 모든 혁명을 ‘세계시민혁명’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먼저 ‘시민혁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일본인들이 ‘révolution bourgeoise’(bourgeois revolution)이라는 마르크스의 표현을 ‘시민혁명’이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나라 1세대 서양사 학자들이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르주아’는 마르크스주의에서 ‘유산계급’을 뜻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시작하고 이끌면서 그들을 위한 사회 질서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은 배제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혁명’으로 지칭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모든 혁명이 ‘시민사회’를 만들고 ‘시민권을 모두에게 확대’하기 위해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면서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는 이 표현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다양한 층위를 가지는 ‘시민’의 개념을 논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지 않은가? (비슷한 맥락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세계사 교과서에서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명예혁명은 ‘시민혁명’의 범주에서 빠졌다.) 그리고 서양 역사학계는 ‘시민혁명’이라는 표현조차 없다.

한편, 몇 가지 개념상의 오류를 짚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프랑스혁명 등을 거치면서 ‘근대국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근대국가’는 ‘전쟁’과 ‘조세’를 원동력으로 삼는 국가체제(state system, système d’Etat)가 등장하는 15세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근대국가의 발달 과정에서 그리고 프랑스혁명 및 19세기에 이어진 혁명으로 마치 프랑스에서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다른 유럽국가들과 다르게 백년전쟁을 거치면서 민족 감정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19세기에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의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국가들보다 일찍 nation state를 형성했다. 그리고 1215년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의 수용을 ‘영국혁명’으로 언급하는데, 이 사건은 정치공동체가 왕권을 제약하려는 시도였고, 이후 이어지는 왕권과 정치공동체 사이의 (명예혁명으로 일단락되는) 대립의 시초이다. 더욱이 그 자체로 중세적이고 봉건적인 마그나카르타에서 18세기어나 등장하는 민주주의(démocratie)의 요소들을 찾으려는 것은 억지이다. 그리고 ‘저항권’의 기원을 찾는다면 오히려 플라톤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혁명의 주된 요소인가?

발표자는 마그나카르타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었고, 이후 서양 세계에서 일어난 혁명에서 이 두 원칙이 항상 핵심을 이룬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혁명의 핵심일까?

먼저, 조세법률주의를 각 혁명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세에 대한 법이 없었을까? 발표문에서는 미국 독립혁명에서 ‘대표를 보내지 않은 곳에 과세도 없다’라는 표현을 조세법률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모든 세금은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 때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그나카르타에서도 ‘정치공동체(귀족회의)의 동의 없는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 징수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지점 역시도 국가 운영을 국왕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귀족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또한, 프랑스혁명 직전에 작성된 진정서(cahier de doléances)에서 프랑스인들이 요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세금 감면이 아니라 조세의 평등이었다. 프랑스에서 항구적인 조세제도가 등장한 것은 백년전쟁 기간 중이었던 1439년이었고(흔히 평민세라고 불리는 taille 역시 같은 해에 신설됨), 이후 프랑스 국왕이 총신분회(Etats généraux)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기 시작한 것은 1614년 이후였다. 아무리 대의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조세는 국왕의 명령이 고등법원의 등기를 거쳐 공식적인 법으로 승인 되어야 집행이 되었다. 1787-88년, 국가적 재정 위기 속에서 루이16세가 성직자 및 귀족들에게도 과세하겠다고 했을 때 이들이 저항했던 것은 자신들의 면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총신분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무기로 삼은 이유는 174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총신분회를 이제 와서 개최할 리 없다는 생각과 함께, 신분회의 구성상 자신들의 의견이 승리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마그나카르타를 포함하여 (흔히 혁명의 시대라고 불리는) 18-19세기, 그리고 그 이후에 서양 사회에서 일어난 혁명 및 저항은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의 수취와 지출이라는 국정운영에 누가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국왕을 견제하면서 정치공동체가 국정운영에 끊임없이 참여하려고 했으며, 프랑스에서는 국왕의 국정운영 독점 시도가 이어졌고(절대주의), 본국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상주의적인 정책 집행을 시도하면서 식민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시도가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났다. 결국 전쟁과 조세라는 국가체제의 두 가지 원동력을 독점하는가 또는 공유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서양 혁명의 특징을 굳이 꼽자면 ‘국정운영 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의 확대’일 것이다. 그리고 발표문에서도 언급된 여러 혁명은 결코 그 범위를 모든 사람들로 확대시키지 않았으며, 경제력에 따른 새로운 신분제를 구축했고, 과거 국왕과 귀족을 결국 부르주아들로 대체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1789년 8월 26일에 발표된 문서의 제목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 것이다. 단순히 인권선언

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야 하는 인간의 권리가 있다면 특별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의 권리가 따로 있다는 부르주아들의 의지가 담긴 문서이다.

또한, 혁명 과정에서 법과 관련하여 중요했던 것은 18세기 이탈리아의 법학자였던 체자레 베카리아가 발전시킨 ‘죄형법정주의’보다 ‘법 앞의 평등’이었다. 물론 ‘죄형법정주의’(principe de légalité)는 1791년에 프랑스 형법(Code pénal)이 만들어지는 배경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명시된 이 원칙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의회에 진출한 혁명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각종 제도의 안착, 그리고 국내외에서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면서 혁명을 지속시키는 일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또 만들어질 모든 법이 프랑스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는 법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고, 역사적으로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지만, 현재 학계에서 혁명을 이해하는 방식과 동떨어져 있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했는지 연구하면서 혁명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다. 유럽에서는 지리적 및 시간적으로 비슷한 공간과 시대에 일어난 혁명들을 묶어서 ‘대서양 혁명’(révolutions atlantiqu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주제에 포함된 혁명들이 모두 같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그 중심에 놓는다. 그러면서도 당대 혁명을 결코 왕좌에 올려놓지 않는다. 아이티혁명을 이끌었던 자유유색인들(gens de couleur libres)이 흑인 노예들에게 가진 편견과 백인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라는 이중성, 시민(citoyen)의 범주를 나누면서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극단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부르주아, 한 편으로는 인권, 자유, 평등을 문서에 담으면서 다른 한 편에서 노예를 거느린 대농장주이기도 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같이 혁명이라는 현상의 명암을 골고루 이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révolution’은 끝났을지언정 혁명의 이상은 아직도 현실에서 성취되지 않았기에 ‘Révolution’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혁명을 단순히 몇 가지 법적 또는 사회과학적 용어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무엇이 혁명인가? 또 혁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특정한 사건을 혁명, 운동, 또는 항쟁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자체로 ‘혁명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동학을 굳이 서양의 여러 혁명, 그것도 혁명의 현실이 아닌 표리부동을 표현하고 있는 몇 가지 문서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동학을 (그 의미도 매우 불분명한) ‘세계시민혁명’과 비견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 항상 주변부에서 되살아나는 덜 자유롭고 덜 평등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혁명을 그저 몇 개 단어로 축약하여 그것이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인간 사회 또는 한 인간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동학이 가지는 저항의 다채롭고 깊은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아닐까?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실체와 장소성

박준성 (역사학연구소 연구원)

1. 머리말

1894년 동학농민군은 1월 고부봉기에서 고부 관아를 점령한 뒤 무장에서 기포하고 백산대회를 거친 뒤 황토현 싸움에서 전라도 감영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장성 황룡촌 싸움에서는 1811-12년 '홍경래난' 이후 83년 만에 중앙에서 파견된 경군의 한 부대와 싸워 이겼다. 나아가 호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성까지 점령하였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다. 1894년의 '갑오개혁'을 이끌어 냈으며,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농민들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여 자치 질서에 영향을 미친 '집강소 체제'를 경험하였다. 9월 이후에는 제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대대적인 밤침략 저항 운동에 나섰다. 일부지역에서는 1895년까지 투쟁이 계속되었다.

1894년 농민전쟁 이후 전국 규모로 일어난 민중항쟁, 사회변혁운동으로 꼽을 만한 사건은 일제 강점기 1919년 '3.1운동', 해방후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민중항쟁', 1980년 '5.18 민중항쟁', 1987년 '6월항쟁'과 '7.8.9노동자투쟁' 그리고 2017년의 '촛불항쟁', 2024-2025년의 윤석열 퇴진 투쟁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이러한 사건의 앞자리에 있던 높은 봉우리였다. 밑으로부터 '민중'이 조직체계를 갖추고, 무장을 한 뒤 서울까지 진격하겠다고 선언하고 일 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항쟁을 계속한 대규모 사회변혁운동이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투쟁 주체의 조직, 무장, 목표, 지속성, 희생자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버금가는 사건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농민군 연합부대로서 체계를 갖춘 뒤 동학농민혁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건이 1894년 3월 하순에 열린 '백산대회'였다.

역사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 행위의 흔적들도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결과이다. 인간(人間 = (人)+(門+田))이라는 단어에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며(人), 문(門)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루(日)라는 시간을 단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역사의 공간은 '사료'가 채워 주지 못한 역사의 중요한 측면을 제공한다.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뿐 아니라 공간 자체가 역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을 찾아 역사를 좀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추체험하는 답사가 중요하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우리 귀에 익숙한 말목장터, 만석보, 백산, 황토현, 황룡강, 전주성, 우금티 같은 장소는 사건의 주요한 무대일 뿐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내는 상징적 공간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백산은 고부농민봉기 시기에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진을 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1차 동학농민혁명을 모색하던 곳이고, 본격적인 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이었던 '백산대회'가 열렸던 곳이다¹.

2. 백산대회의 실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백산대회’의 사실을 알려주는 기본 자료로 삼은 것은 오지영의 《동학사》이다. 《동학사》는 1868년 몰락 양반 출신으로 태어나 1894년 농민전쟁 때 익산 대접주 김방서의 휘하에서 중견간부로 활약한 오지영이 쓴 책이다. 그의 형인 오시영, 하영도 참가했다. 《동학사》의 초고본은 만주로 이주했던 1926년 이후에 썼고, 1936년 10월 귀국한 뒤 1940년에 초고본을 수정하여 간행본을 출판했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백산에서 편제된 농민군 조직은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 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 오시영, 영술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 정백현이었다고 한다². 이때 격문도 만들어 돌렸다고 하는데, 농민군의 투쟁의 목적과 지향 주체와 동맹세력이 밝혀져 있다.

우리가 義를 드러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斷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의 中에 건지고 國家를 磐石의 우에다 두자함이라 안으로는 貪虐한 官리의 머리를 버히고 밖으로는 橫暴한 強敵의 무리를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받는 民衆들과 方伯과 守令 밑에 屈辱을 받는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冤恨이 깊은 者라, 조금도 躊躇치 말고 이 時刻으로 이려서라. 萬一期會를 이르면 後悔하여도 믿지 못하리라.

甲午 正月 일 湖南倡義大將所 在白山

이렇게 농민군 조직이 편제되고, 격문이 발표되자 호남 일대는 물론이요 전조선 강산이 고부 백산을 중심으로 흔들흔들하였다 한다. 그리하여 백산은 “서면 백산이오 앉으면 죽산”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죽창을 들고 몰려든 농민군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동학사》와 함께 ‘백산대회’의 실체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정교의 《대한계년사》이다. 정교는 “전봉준이 우두머리가 되어 드디어 3월 25일 동학도와 더불어 무리를 향하여 5,6만이 머리에 백건을 두르고 손에는 황기를 들고 4개 명의를 내걸었다”고 하였다.

김상기는 일찍이 1931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에 〈동학과 동학란〉을 연재하면서 백산을 주목했다. 김상기가 글을 쓴 때는 오지영의 《동학사》 필사본은 쓰여졌으나 간행본은 나오기 전이었다. 오

1 ‘백산대회’를 중심으로 서술된 글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이후의 논문은 《홍제일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되었다. 박준성, 〈‘백산대회’의 존재와 의의〉,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 의의》, 2011; 성주현, 〈동학농민운동과 백산의 의의〉, 《동학농민운동과 부안》, 부안문화원, 2011; 임형진, 〈백산대회와 동학농민혁명- 논쟁점을 중심으로〉, 《동학학보》 25, 2012; 조성운,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 실학》 61, 2016; 성강현,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 《부안 동학농민혁명과 문화콘텐츠》, 선인, 2022; 박대길, 〈동학농민혁명 초기 전개 과정에서 백산대회의 위상〉, 《동학학보》 62, 2022; 유바다, 〈홍제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동학농민혁명연구》 창간호, 2023.

2 《동학사》 초고본에는 “當時 白山에 모여든 사람은 누구누구나 中心人物로는 全琫準 孫和中 金開南 金德明 崔景善 等五人이잇섯다 다섯사람 中에도 孫和中 金開南(名箕範) 金德明 等 세사람은 全羅一道最 高頭領格으로잇든 사람들이엇고 崔景善 全琫準二人은其次頭領으로”라고 되었다. 이는 백산에서 지휘부의 조직 편제가 이루어지기 전 동학의 조직과 세력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과 최경선은 김덕명 포의 접주였다.

지영이 1936년에 귀국하였으므로 김상기가 필사본을 보았을 가능성은 없던 시기였다.

민중의 동란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어 그 해 3, 4월 경에는 전국이 소연하였으며 당시 동도대장 전봉준에게 통솔된 동학군의 중심부대는 [다보하시(田保橋潔)씨 설에 의하면 약 4천 명의 도중이라함] 의연히 백산에 주둔하여 무장의 손화중, 남원의 김개남, 태인의 최경화 등과 의각의 기세를 취하여 한편으로는 도중을 조련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³

농민군 주요 지도자들이 백산에 결집하였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1974년에 나온 《나라사랑》 제15집은 ‘녹두 장군 전봉준 특집호’였다. 여기에서 김광래는 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전봉준이 3월 21일 백산에서 기포를 하고, 3월 27일 격문을 발표하였으며, 농민군 조직을 편제하고, 《한국계년사》(대한계년사-필자)를 근거로 3월 25일 4대 강령을 발표한 것으로 보았다.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중요한 초석을 놓은 최현식은 1980년에 “1894년 3월 21일 교주 최시형의 탄신일을 기하여 동학교도와 다수의 농민들을 고부 백산에 모이게 하니 3월 봉기의 백산기포이다”고 하였다.⁵

한우근은 1983년에, 1894년 4월 말(음력 3월 하순)에 전봉준은 김개남과 모의하여 농민들을 백산에 집결시켰고, 4개항의 강령을 발표하였으며, 호남창의대장소를 백산에 두고 각지에 통문(격문)을 보내고, 각지에서 8천여명이 모여 농민군 대오를 편제하였다고 하였다. 따로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⁶

1985년 신용하는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한국학보》40)에서 1894년 3월 20에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의 최초의 봉기 선언문’인 무장창의문이 발표되면서 무장기포가 일어났고, ‘백산대회’는 그 이후의 사실임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3월 25일경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했고, 《대한계년사》에 있는 ‘농민군 4대 명의’를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농민군 12개조 기율’도 이때 공포한 것으로 보았다. 격문이 발표된 날은 3월 27일이라고 하였다. 농민군 간부를 확대 개편한 날이나, 격문을 발효한 날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⁷

1989년 이이화는 3월 25일 이후 고창 금구 등지에서 농민군들이 백산으로 속속 모여들었는데, 손화중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3천 5백 명, 김개남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1천 3백 명, 김덕명포에 속하는 접주들이 거느린 2천명이 모여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고 하였다.⁸

3 김상기 1931 <동학과 동학란> 《동아일보》

4 김광래, 1974, <전봉준의 고부 백산 기병> 《나라사랑》 제 15집, 93-96쪽

5 최현식, 1980 《갑오동학혁명사》, 59쪽

6 한우근, 1983 《동학과 농민봉기》 일조각, 102-104쪽

7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53-157쪽

8 이이화, 1989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역사비평》 7호, 238-239쪽

1991년 정창열은 3월 25일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 체계를 갖추고 4개 명의를 발표한 것으로 보았다. 오지영이 동학사에서 농민군이 ‘고부읍에 유진한지 3일 후에 대군을 몰아 고부 백산에 진을 옮겨치고’라고 한 유진이 3월 23일이므로 3일 후는 3월 25일이며, 정교가 3월 25일 4대 명의를 내 걸었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격문을 발표한 날도 3월 25일이며 명이나 격문 모두 전봉준이 쓴 것으로 보았다.⁹

1992년 우윤은 3월 25일 백산에 설치된 본진에 집결된 농민군 수를 《동학사》를 근거로 8,000 명으로 보았다. 부서별 책임자를 정하고 격문을 띄우고, 전봉준이 ‘4대행동강령’을 선포하였다고 하였다.¹⁰

전북일보 팀이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발굴하면서 쓴 《동학농민혁명 100년》에서는 무장기포가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백산기포’나 ‘백산봉기’ 대신 ‘백산결진’이나 ‘백산결집’, ‘백산대회’로 이름을 바꿀 것을 제기하고, ‘백산결진’ 날짜는 모든 기록들이 동의하므로 3월 25일 거사일로 보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¹¹

1998년에 나온 신순철, 이진영의 《동학농민혁명사》, 2005년의 김양식 《새야새야 파랑새야》, 2008년에 나온 조광환 《소통하는 우리역사》에서도 백산에서 조직편제가 이루어졌고, 격문과 4대 명의를 발표한 것으로 보았다.

2008년에 나온 조경달의 《이단의 민중반란》은 3월 25일에 백산대회가 열렸고, 이때 태인 대접주 김개남이 이끄는 동학군이 합류하였으며, 농민군 지도부 선출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한계년사》를 근거로 4개조 행동 강령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격문은 《동학사》에만 등장하는 아주 짧은 국한문 혼용문으로서 오지영의 착각이나 잘못된 기억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¹²

한동안 ‘백산대회’의 실체는 《동학사》와 《대한계년사》에 수록된 관련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두 자료의 사실성을 부정하면 ‘백산대회’의 실체도 부정되는 것이었다.¹³

2012년 《홍제일기》가 알려졌고 2022년 번역되면서 백산대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보충되었다. 홍제일기는 부안군 주산면에 살았던 유생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45년간 쓴 일기이다. 이 일기 속에 1894년 3월 ‘백산대회’의 실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다. 관련된 내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9 정창열, 1991 《갑오농민전쟁연구》 박사학위논문, 134-137쪽

10 우윤, 1992 《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창작과비평사, 168-170쪽

11 김은정, 문경민, 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64-168쪽

12 조경달, 2008 《이단의 민중반란》 174-175쪽

13 2025년 4월 19일 역사학연구소에서 있었던 김태웅 역재 《동학사》 북토크에서 배항섭은 “백산대회에서 전봉준을 대장으로 삼고 이어서 손화중, 김개남을 총관령으로 삼았고, 아주 중요한 창의무는 격문도 내렸는데...이 중요한 사건이 오지영의 《동학사》에만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하고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는 《대한계년사》의 3월 25일 ‘4대명’을 무장기포 때 일어난 일로 보았다. 그리고 ‘백산’도 백산이라는 산에 둔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산지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곧 농민군이 계속 진격 내지 이동하는 그 과정의 하나로 봐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 3.23일 : 동학인(東學人) 4,000여 명이 남쪽에서 고부 백산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
- 3.24일 : 동학인이 크게 일어났다. 우리 마을 박문표(朴文表)와 강일봉(姜一奉)이 길을 나섰다고 한다.
- 3.25일 : 동학인(東學人)이 어제 고부읍에 들어가서 군기를 탈취하였는데 화약고가 불탔다. 2, 3명이 해를 입었다고 한다.
- 3.26일 : 동학인이 무장, 고창, 흥덕, 고부 4읍에서 군기를 탈취하고 고부 마항(馬項)에 모여다고 한다.
- 3.27일 : 동학군(東學軍)이 어제 백산으로 군진을 옮기고 오늘 본읍에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도솔봉에 올라가 바라보았는데 거취를 알 수가 없어서 곧장 내려왔다....동학군은 즉각 전주로 향했다고 한다.

홍제일기는 1894년 3월 20일 무장기포 후 동학농민군의 행로가 ‘백산’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3.26일 백산에 군진을 설치하였음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백산대회’는 언제 열렸을까? 3월 16일 무장현 동음치면에 다른 읍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100여 명을 넘지 못하였으나, 16일부터 18일까지 며칠 사이에 밤낮으로 사망에서 물러와 천여명이나 되었는데, 모두가 해당 촌의 앞에 있는 평야에 모여 있습니다”고 한다. 3월 23일 오전 9-11시 무렵 부안 줄포에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십여 명이 머리에 황건을 쓰고 손에는 쇠로된 창과 죽창을 잡고 도착하여, 점심 밥 3,500상을 배정하여 마련해달라고 하고, 그 뒤를 따라서 2,000-3,000명이 말을 타거나 혹은 걸어서 각각 총과 창을 가지고 와서 줄포의 사정에 모였다. 깃발의 구호는 인, 의, 예, 지, 신을 쓰거나 혹은 순천, 광주라고 썼다. 농민군이 목적지는 백산이었다(홍제일기). 같은 날 3월 23일 저녁 7-9시 무렵 동학도 3,000여 명이 혹은 창과 죽창을 들고 총을 쏘면서 고부 읍내로 난입하였다. 3월 25일 고부 지역의 농민군의 수는 혹은 수천명, 혹은 3천명이라고 하며, 2천 명에서 3천명이 된다고 파악되고 있다.¹⁴ 그날 고부읍에 진입한 농민군은 군기를 탈취하였는데, 화약고가 불타 2,3명이 해를 입었다(홍제일기). 군기고를 열어 무장을 한 것은 본격적으로 투쟁을 준비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1893년 ‘동학혁명을 모의’하면서 만든 ‘사발통문’의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사’를 실천한 행위이다.¹⁵ 군기고와 화약고가 고부읍에서 떨어진 두지면이 있었다고도 한다.¹⁶ 두지면은 고부관아에서 보았을 때 동북쪽의 말목장터 가까운 곳에 있었다. 무장한 농민들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두지면에서 서북쪽에 있는 백산으로 이동하였다.¹⁷ 이러한 경로는 “무장 임내안 산골 속에서 무기를 모아

14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

15 3월 25일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한 일은 백산대회가 있기 전 일이었다. 백산대회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정창열의 《갑오농민전쟁연구》에서는 3월 25일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을 편제하고, 4개 명의와 격문을 발표한 백산대회 이후에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한 것으로 보았는데, 시간의 전후를 잘 못 파악한 것이다. 조정달도《이단의 민중반란》(175쪽)에서 무기고 점령 사건을 백산대회 이후로 보았다. “백산대회 뒤 농민군은 고부의 무기고를 점령했으나 화약에 잘못 불을 붙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탄약 취급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군의 인적 구성을 잘 말해주는 사건이었는데, 이는 앞으로 순탄치 않을 투쟁의 막이 올랐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고 하였다.

1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고부민요일기’, 《오하기문》 1, 《수록》

17 《수록》과 《오하기문》에서 ‘未時量 出征于郡之西北間路上’이라하였는데 이때 ‘서북간로’는 고부읍에서 서북쪽이 아니라 두지면

서는 무장·고창·고부를 점령하고 군기를 탈취하여 말목, 예동으로 행진하여 백산으로 진을 옮겼다”는 《석남역사》의 기록이나, “대군을 인솔하고 다시 고부지방에 들어가서 마항시장에서 일박하고 백산에 유진하였다”는 《전봉준실기》의 내용과도 히 일치한다. 두지면을 출발한 농민군은 늦어도 5시 이전에 백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백산에는 다른 지역의 농민군이 기다리고 있거나, 뒤이어서 계속 도착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교가 《대한계년사》에서 3월 25일 4대 명의를 발표하였다는 것은 이때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주력 농민군의 이동 경로를 통해 보았을 때 《대한계년사》의 4대 명의를 발표한 날짜나 장소는 백산임이 확실하다. 〈홍제일기〉에서는 3월 26일 백산으로 군진을 옮겼다고 하였다. 선발대나 바로 백산으로 온 농민군이 3월 25일 백산으로 들어가고 본대가 3월 26일 백산에 진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월 25-26일 백산에 결집한 농민군은 3월 26일 오후까지 ‘백산대회’를 치루면서 조직을 편제하고, 4대 명의를 발표하였으며, 각지에 격문을 보냈을 것이다. ‘백산대회’를 마친 농민군은 바로 활동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로 3월 26일 유시(酉時 : 오후 5시 -7시) 무렵 백산에서 내려가 태인현 용산면 화호 신덕정리로 옮겨 주둔하였는데, 세력이 매우 커서 방어할 수 없을 정도였다.¹⁸ 용산면 화호는 백산에서 동진장을 건너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태인의 세곡창고가 있었다. 같은 날 김제군에 전령의 보내 ‘읍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과 곡식이 얼마쯤인지 내용을 아는 아전이 장부를 가지고 길가 역참에서 기다리라’고 통보를 하였다. 1만여명에 가까운 농민군이 움직이려면 군자금과 군량미 확보가 급선무였다. 백산대회를 마친 농민군의 목적지는 전주였다. 《홍제일기》에서는 26일 백산으로 군진을 옮겼던 “동학군은 즉각 전주로 향했다고 한다”고 하였다. .

무장에서 고부를 거쳐 백산까지 이동하였던 3천여 명의 농민군 수가 3월 29일에는 6,000-7,000 명으로 불어났다. 즉 동학도 6,000-7,000명이 3월 29일 술시(戌時)에 태인현에 도착하여 머물러 잤고, 4월 초 1일 오시(午時)에 금구현 원평점에 도착하여, 그 마을 앞 냇가에 진을 치고 곧바로 머물러 잤다고 한다.¹⁹ 한편 4월 초 2일 부안현감의 보고에 따르면 고부군 ‘백산여당’이 본 읍에 살고 있는 무리들을 충동하여, 부안현 하동면 분토동에 모이게 하였는데, 인원이 500명 쯤 되었고, 각자 죽창을 들고 ‘보국안민’이라는 붉은 기를 걸고 있었다. 또 작은 깃발에는 부안, 고부, 영광, 무장, 흥덕, 고창 등의 읍호를 썼다.²⁰ 부안에 모인 무리들이 ‘백산여당’ 이었다면 태인 쪽으로 간 6,000-7,000천명은 백산의 본대가 될 것이다.

‘백산대회’ 이후 확대 개편된 농민군에는 무장에서 출발하여 고부를 다시 점령한 뒤 백산으로 온 전봉준, 손화중 중심의 농민군 외에 무장이 아니라 곧 바로 백산으로 와서 결집한 인원이 거의 비슷

에서 보아 서북쪽에 있는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 가면 백산이 있다.

18 《수록》 4월 초 8일 계초 : 古阜白山禮洞 一時下山 移屯於本邑龍山面禾湖新德亭里 放砲喊聲

19 《수록》 4월 8일 계초, 영문에서 보낸 기별.

20 《수록》 4월 초 5일

한 숫자에 이르렀다. 백산에서 본대와 함께 태인으로 향하지 않고 부안 쪽으로 갔던 ‘백산여당’, 백산 주변에 일부 남아 있었을 농민군까지 합치면 백산대회에 모인 농민군수는 7,000-8,00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동학사》에서 손화중포의 두령 들이 영솔한 고창 1,500명, 무장 1,300명, 흥덕 700명, 정읍 1,200명 합 4,700명 김개남포의 태인 1,300명, 김덕명포의 태인.김제.금구 2,000명 도합 8천명에 버금가는 수이다. 《동학사》에 의하면 백산에 모인 농민군 지도자들은 대장 전봉준과 기타 장령 격은 손화중, 김개남, 김덕명, 최경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 김봉년, 김사업, 김봉득, 유한필, 손여옥, 차치구였다²¹. 각 지역의 군장들은 고창, 무장, 영광, 고부, 정읍, 태인, 금구, 김제, 옥구, 만경, 무안, 임실, 남원,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부안, 장흥, 담양, 창평, 장성, 능주, 광주, 나주, 보성, 영암, 강진, 홍양, 해남, 곡성, 구례, 순천, 전주 순으로 표기되어 34개 지역의 178명이었다.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을 가나다순으로 재배치하여 참가 군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기 군장

장진 김병태, 남도균, 윤시환, 장의운, 안병수, 윤세현 등

고부 정일서, 김도삼, 홍경삼, 정종혁, 송대화, 송주옥, 정덕원, 정윤집, 전동팔, 홍광표, 주관일, 주문상, 윤상홍 등

고창 홍낙관, 홍계관, 손여옥 등

곡성 조석하, 조재영, 강일수, 김현기 등

광주 강대열, 박성동, 김우현 등

구례 임춘봉

금구 송태섭, 조원집, 이동근, 유공만, 유한술, 최광찬, 김웅화, 김운옥, 김인배, 김가경 등

김제 조익재, 황경삼, 하영운, 한경선, 이치권, 임예옥, 한진열, 허성희 등

나주 오중문, 김유 등

남원 김흥기, 이기동, 최진학, 김태옥, 김종학, 이기면, 이창수, 김우척, 김연호, 김시찬, 박선주, 정동훈, 이교춘 등

능주 문장렬, 조종순 등

담양 남주송, 김중화, 이경섭, 황정옥, 윤용수, 김희안 등

만경 진우범

무안 배규인, 배규찬, 송관호, 박기운, 정경택, 박연교, 노영학, 노영학, 노윤하, 박인화, 송두옥, 김행로, 이민홍, 임춘경, 이동근, 김웅문 등

무장 송문수, 송진호, 장두일, 곽창옥 등

무주 이응백, 윤민, 갈성순 등

21 전봉준, 최경선, 김봉년, 김사업, 김봉득, 유한필 등은 김덕명 포의 접주들이었고 오하영, 오시영, 임천서, 강경중, 송경찬, 고영숙은 손화중포의 접주들이었다.(정성미, 동학농민혁명지도자 김덕명의 활동과 원형, 《동학학보》49, 2018)

보성 문장형, 이치의 등

부안 신명언,백이구 등

순창 이용술, 양희일, 오동호, 김치성, 방진교, 최기환, 지동섭, 오두선 등

순천 박낙양

영광 최시철,오정운 등

영암 신성, 신란, 최영기 등

옥구 허진

임실 최승우, 최유하, 임덕필, 최우필, 조석효, 이만화, 김병옥, 문길현, 한영태, 이용거, 이병용, 곽사회, 허선, 박경무, 한군정 등

장성 김주환, 기수선, 기동도, 박진동, 강계중, 강서중 등

장수 김숙여, 김홍두, 황학주 등

장흥 이방언, 이인환, 강봉수 등

전주 최대봉, 강문숙, 강수환, 송창렬, 박기준, 오두병 등

정읍 임정혁

진안 이사명, 전화삼, 김택선 등

창평 백학, 유형로 등

태인 김영하, 김한술, 김연구, 김지풍, 최영찬 등

해남 김도일, 김춘두 등

홍양 유희도, 구기서, 송년호 등

《동학사》에서 부안 접주로 거명한 인물은 신명언과 신이구였다. 《홍제일기》에는 일기를 쓴 같은 마을의 박문표, 강일승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였고²², 백사중, 손수일, 이상용, 신명언, 신공선등이 체포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²³. 《동학사》의 신명언이 《홍제일기》에서도 확인된다. 백산에 참가한 178명의 접주가 지어낸 이름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백산에서 농민군 조직을 편제할 때 손화중과 함께 총관령이 된 김개남은 무장기포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⁴ 무장기포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김개남 세력이 백산에 결집함으로써 1차 동학농민혁명의 연합부대의 조직체계가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산대회에서는 조직편제와 함께 격문, 4개항의 명의를 정해졌고 12개의 군율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교는 《대한계년사》에는 3월 25일 4대 명의를 수록되었다.

22 《홍제일기》 갑오 3월 24일

23 《홍제일기》 을미 3월 23일

24 이진영, 1996,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 74-78쪽. 무장기포에서 농민군의 지도부의 서열을 1전봉준, 2손화중, 3김개남 순으로 정하고 전봉준이 대장이 되어 전체 농민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다는 신용하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 농민전쟁>, 《동학과 동학농민전쟁》, 150쪽).

하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不殺人 不殺物).

둘, 충·효를 함께 갖추어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다(忠孝雙全 濟世安民).

셋,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 없애고, 성인의 도리를 맑고 깨끗이 한다(逐滅倭夷 澄清聖道).

넷,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 버린다. 기강을 크게 떨치고 명분을 바르게 세워 성인의 가르침을 따른다(驅兵入京 盡滅權貴 大振紀綱 立定名分 以從聖訓).

이 가운데 네 번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 권세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모두 없애 버린다’는 ‘驅兵入京 盡滅權貴’는 ‘사발통문’에서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직향할사’라는 ‘京師直向’한다는 목표가 백산대회에서도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산대회에서는 12개조의 농민군 규율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²⁵.

1.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
4. 순종하는 자는 경복한다.
5.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6. 주린 자는 먹인다.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없앤다.
8.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11. 병든 자는 진찰하여 약을 준다
12. 불효한 자는 형벌을 한다.

규율과 함께 ‘동도대장’의 행동 지침도 내려졌다. “언제나 적을 대할 때는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가장 큰 공으로 삼겠다. 비록 부득이 싸우더라도 절대 인명을 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행군할 때는 절대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 그리고 충제충신(忠悌忠信)한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 그 주위 10리 안에는 주둔하지 말기 바란다”²⁶

25 《주한공사관기록》 1. 번역문 19쪽. 동학당에 관한 속보 경포도청기교정탐기. 《갑오조선내란시말》. 신용하, 〈갑오농민전쟁의 제1차농민전쟁〉《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일조각, 1993) 154쪽.

26 《주한공사관기록》 1. 번역문 19쪽.

3. ‘백산대회’의 장소성

백산은 1894년 당시에는 고부군에 속했고 1913년 부안군에 편입되었다. 1894년 당시에는 고부 땅이던 백산은 높이 47미터에 불과하나 위에서 보면 동진강 오른쪽으로 배들평야가 펼쳐져 있고, 왼쪽으로는 김제만경평야가 아득하게 들어온다.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널리 보이고 아래쪽에서는 낮아도 찾기 쉬워 이정표 같은 역할도 했다.

서쪽으로는 부안, 남쪽으로는 고부, 동쪽으로는 태인·금구·원평·전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고부관아까지는 8km, 전봉준 고택이 있던 조소리까지는 7km거리다. 남동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나 북서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사방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며 앞으로는 동진강이 흐르고 있어 주둔과 방비에 적합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1894년 백산 위에는 소나무가 드문드문 서 있고, 좁은 길을 따라 산 위로 오르면 깊은 골짜기가 있어 수천명이 숨어 있을 만하다고 하였다.²⁷ 농민군이 백산에 결집했을 때 꼭대기 평평한 부분만 아니라 남동쪽 완만한 부분과 백산 언저리에도 머물렀을 것이므로 1만여명 가까운 농민군이 집결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일을 도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머리수’와 ‘돈’이다. 백산을 대회 장소로 설정한 데는 지리적 여건 뿐 아니라 몇 천 명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데 쓸 물자를 확보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동진강 하구언이 조성되기 전에는 동진강을 따라 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배들평야라고 했다. 백산 기슭에는 당시 4천여 석의 쌀을 저장한 세곡 창고가 있었다.²⁸ 예부터 백산은 부안 해변에 있는 貢米의 집합지였다. 당시 여기에 4천 석의 쌀이 쌓여 있었다. 백산은 농민군이 결집하기에 유리한 자연지리 조건 뿐 아니라 군량미 충당에도 중요한 입지였다. 오지영은 《동학사》에서 ‘백산대회’ 때 “군량은 조병갑이 받아놓은 수세미 몇 천석으로 대략 충당하였다”고 하였다.

고부 백산은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땅(古阜白山 可活萬民)이라는 비결도 전해지고 있었다.²⁹

고부농민봉기 과정에서 백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참가한 농민군이나 인근 지역의 농민들은 간혹 백산에 올라와 본 적이 있었다. 대부분은 처음 올라와 보았을 것이다. 백산에 올랐다고 해도 혼자 혹은 서너명 배들평야와 김제만경 평야를 내려다 볼 때와와 몇 천명이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인 상황에서 바라볼 때와는 느낌이 같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농민군 지도자가 그 앞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쉬지 못하고 일 년 내내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 저 땅은 뉘 땅이며 저 곳

27 《大阪毎日新聞》1894.5.25

28 ○ (菊池謙讓, 田内蘇山, 1936 《근대조선이면사》) 동학당의 전란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수록, 145쪽)

○ 고부에서 백산까지는 1리 남짓한 바닷마을을 지나고 경창에 왕래하는 큰 길을 지나게 된다. 백산의 창고는 바닷가 높은 언덕 기슭에 있었다. 백산은 그 이름처럼 산 전체가 석회질의 하얀 흙이었으며, 남쪽은 바닷색으로 끝없이 남쪽에 접하였고, 동북쪽은 기름진 들이 천리나 되는 호남의 참으로 보배스런 땅이다. 백산의 관창은 당시 4천 석을 저장하였다고 한다. (菊池謙讓, 1939 《근대조선사》) 동학당의 난 《동학농민전쟁연구자료집(1)》수록, 170-171쪽)

○ 《임하유고》와 《전봉준실기》에도 조병갑이 수탈한 세곡 수천석을 백산에 쌓았다고 하였다.

29 파계생,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에서 난 벼는 누가 빼앗아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하며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산은 1894년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전라도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이 투쟁할 방향과 결의를 다지기에 적합한 뛰어난 선동의 공간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역사 유적지 뿐 아니라 한국사의 역사 현장 가운데 사람의 손을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가 빼어난 자연의 역사 조형물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곳이 백산이다.

4. 맺음말

자료와 정황으로 보아 1894년 3월 25일~ 3월 26일 ‘백산대회’는 실재했다고 볼 수 있다. 백산은 자연지리적으로 농민군이 결집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세곡창고가 있어 군량미를 확보하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무장에서 출발한 전봉준 중심의 농민군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뒤 무기고와 화약고를 쳐서 무장을 하고 3월 25일 백산에 도착하였다. 이들 농민군과 별도로 백산으로 직접 온 농민군의 숫자도 그와 비슷한 규모였다. 백산에 모인 농민군들은 단일 군대체제의 예하 부대들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농민군의 연합부대였다. 이들은 백산에서 다시 농민군 조직체계를 갖추고 규율을 마련하였다.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격문도 마련하였다.

그런데 《동학사》에만 실려 있는 격문이 다른 창의문들에 비해 지나치리만치 현대적이고 사회과학적이라서 문제다. 그렇다고 《동학사》를 지어낸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천도교 내의 반대파의 주장을 반박하고 천도교연합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려고 《동학사》를 쓰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오지영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가한 경험이 있었고, 초고를 쓴 뒤에도 만주에서 국내로 돌아와서 《동학사》를 간행하기 전에 3년 동안 전국의 농민전쟁 역사 현장을 찾아 답사를 했고, 승정원일기를 열람대조했다고 한다.

《동학사》에 수록된 폐정개혁안 12조도 농민군이 내세웠던 요구 조건을 오지영이 종합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³⁰. 정리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시기의 오지영의 이상이 반영되었듯

30 폐정개혁안 12조 《동학사》 김태웅 역해, 아카넷, 350-351쪽)

1. 도인과 정부 사이에는 오래된 혐의를 씻어버리고 협력할 것.
1. 탐관오리는 죄목을 조사하여 일일이 엄정할 것.
1. 횡포한 부호배는 엄정할 것.
1. 불량한 유림과 양반배는 악습을 징계할 것.
1. 노비문서는 소각할 것
1. 칠반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서 평양립은 벗어버릴 것
1. 청춘과부는 개가를 허락할 것.
1. 무명잡세는 모두 실시하지 말 것.
1. 관리 채용은 지벌(地閥)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 ‘왜(倭)와 간통하는 자는 엄정할 것.
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소멸시킬 것.

이,³¹ 백산 격문도 ‘백산대회’의 격문은 그때까지 나왔던 농민군의 목표와 지향, 주체와 동맹 세력을 오지영이 현대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산대회는 무장에서 출발한 농민군 뿐 아니라 그 배 이상 되는 농민들이 참가하여 농민군 연합 부대를 확대재편하고 조직체계를 갖추어 본격적인 투쟁의 전열을 갖추었다는 의의가 있다. 백산대회에서는 곳곳에서 모인 농민군들 앞에서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목적과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대의적 명분을 확인하고 조직적인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명의를 규율을 발표하였다.

‘백산대회’의 실체는 기록과 자료 뿐 아니라 백산이라는 공간의 위치와 특성으로도 담보되고 보완될 수 있다. 백산은 동학농민혁명 역사 유적지 뿐 아니라 한국사의 역사 현장 가운데 사람의 손을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가 빼어난 자연의 역사 조형물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곳이 다.

1.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시킬 것

31 김태웅, 1993 <1920.30년대 오지영의 활동과 《동학사》 간행> 《역사연구》2. 조경달은 《이단의 민중반란》(224)에서 김태웅의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인정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의 실체와 장소성」 토론문

조재곤(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박준성 선생님의 오늘 발표문은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을 백산대회로 규정하면서 그 '실체와 장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간의 관련 자료와 연구를 전체적으로 분석 활용하여 백산대회의 존재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그 실체(시간)와 관련하여 먼저 오지영의 《동학사》와 정교의 《대한계년사》 및 《수록》 등의 기사 외에 2012년 발굴하여 2022년 번역된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의 해당 기사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그간 일부 논란이 있었던 백산대회의 존재를 갑오년 3월 25~26일로 다시 환기함으로써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한계년사》를 근거로 백산에서 농민군이 '대 명의'를 발표하고 12개조 규율을 정하고 각지에 격문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공간(장소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백산은 동진강 변 김제 만경평야 앞이자 부안·고부·태인·금구·원평·전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동진강을 따라 배가 올라오는 지역으로 세곡창고가 있었던 곳이라는 장소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농민군의 군량미 충당의 입지로서의 중요성을 일본인 기구치 겐조의 기록과 동학사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얕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언설을 인용하여 제1차 동학농민혁명이 본격화되기 이전 농민군 투쟁의 방향과 결의를 다지는 적합한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다.

2. 발표자의 의견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보면 먼저 시간(실체)과 관련한 문제이다.

1) 고부농민봉기와 동학농민군 제1차 봉기 당시 주한일본 공사관 측에서도 동일 기간 백산대회를 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항 리키다케(力武) 상점 고용인인 키지마 토라노스케(城島虎

之助)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광제호(廣濟號)를 타고 군산진을 출발하여 김제의 죽산포(竹山浦)에 도착하였는데 양 4월 30일(3월 25일) 동학당 3,500명이 고부의 백산으로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음 날인 양 5월 1일(3월 26일)에는 죽산포에서 10정(町)쯤 떨어진 곳에 동학도가 머리에 붉은 수건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東學黨에 관한 報告〉, 在仁川 二等領事 能勢辰五郎→臨時代理公使 杉村濤, 1894년 5월 16일). 죽산포는 백산과 동진강을 마주 보는 지역으로 키지마의 3월 25~26일 백산 일대의 상황 보고를 통해 백산대회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 2) 한편 순오선(順五船) 선장 카와무카이 에이노스케(川向榮之助)는 양 4월 하순(3월 하순) 김제 죽산포에 도착하였고, 양 5월 1일(3월 26일) 이곳 부근에서 소총 발사 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백산대회 시 어떤 형식인지 알 수는 없으나 사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봉준 등이 이미 20~30일 전부터 사냥꾼에게 명하여 꿩일 잡아오는 자에게는 2관문(貫文)을 준다는 구실로 대대적으로 충기를 약탈하였다고 술회하였다(앞의 〈東學黨에 관한 報告〉). 이미 고부농민봉기 직후부터 백산대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다음은 백산의 공간(장소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이다.

동학농민군이 백산을 거점으로 택한 이유는 육로와 수로, 입지 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사창(社倉)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1) 부안 유생 김방선의 일기(《林下遺稿》)는 “군수 조병갑이 끝없이 탐욕스러움과 포악함으로 정해진 이외의 세금을 수탈하자 백산(白山)·화호(禾湖) 등지에 쌓아 둔 수천 석의 곡식을 고부 군민들이 가서 먹어 치우고는 모여서 난리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2) 일본인 첩보원 필명 파계생(巴溪生) 보고문에도 백산은 조선의 곡창인 동진·만경강 유역에 위치하고 양식의 보급에도 편리하여 동학도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二) : (8) 全羅古阜民擾日記寫本送付〉, 1894년 5월 30일 在釜山 總領事 室田義文→在京城 臨時代理公使 杉村濤; 伊藤博文 編, 金子堅太郎 校,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中卷), 秘書類纂刊行會, 1936, 343~356쪽). 순오선 선장 카와무카이도 양 5월 4일(3월 29일) 백산에 운집한 동학도가 전주로 떠나자 조선 배를 타고 30리쯤 하류로 내려갔는데 강둑을 보니 공미(貢米)와 사미(私米)가 함께 쌓여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백산의

사창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3) 1894년 당시 《고국민신문(國民新聞)》 특파 기자로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취재한 바 있던 기쿠치 겐조(菊池謙讓)는 1932년 10월 10일 ‘동학 변란’의 사적을 찾아 전봉준의 옛 거주지인 고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기쿠치의 기록은 당시 촌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전봉준은 이평면 장내리 읍내의 노인들은 관군 정토가 도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의 퇴산을 원했고 읍민들도 소란한 동네에 투입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군중을 떠나려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전봉준은 일동에게 소리치며 ‘백산(白山)에 집합하자, 백산의 창고를 개방하자, 그리하여 관곡을 탈거(奪去)하자’고 명하고 궁민(窮民)을 구제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백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당시 백산의 창고는 4천 석을 저장하고 있었는데 전봉준은 ‘구미위원(救米委員)’을 선정하여 이를 여러 이웃에 분배하자 부근의 궁민이 이를 듣고 다투어 참가하여 이틀 만에 3천 명에 달하였다는 것이다(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 鷄鳴社(京城), 1939, 214~216쪽). 뒷부분 내용은 앞의 김방선의 일기 내용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872년 고부군지도, 1872년 김제군지도에서도 고부군 백산(白山) 원편에 세곡 저장소인 사창(社倉)의 존재가 확인된다. 동진강에는 뚝단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백산 앞 동진강 대안이 바로 백산 최근접 지역인 김제 죽산포(竹山浦)로 백산대회 당시 관군의 거점이 있었던 곳이다. 이는 《수록》과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4. 기타

발표문에서 제기한 논점은 아니지만 박준성 선생님이 언급한 ‘얕으면 죽산, 서면 백산’론의 구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논리는 문헌자료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토론자는 1980년대 중반 처음 백산 지역 답사 때 지도 교수인 김용섭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들은 바 있다. 1989년 작성된 백산 ‘동학혁명백산창의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어설픈 추정이겠지만 동진강을 대안으로 하여 북쪽에는 죽산이 남쪽에는 백산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백산에서 보면 죽산, 죽산에서 보면 백산’이라는 지정학적 상황이 역사적 사실과 일체화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산·죽산론’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근대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홍재일기》는 발굴된 후 여러 연구자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반 연구자들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서한 후 공개하였으며 그후 상당기간 스터디를 통하여 국역까지 이루어졌다.¹ 국역본이 간행된 후 많은 연구자들이 《홍재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있는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²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재일기》에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 및 일제초기를 거치는 동안 이제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부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행현이 기록한 이 시기를 근대전환기라 상정하고 이 시기에 부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기 작성자인 기행현의 행적을 분석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파악해왔던 조선시대의 양반상 또는 조선시대 시골 선비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전환기 부안현의 모습

조선후기 지역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란의 피해와 거듭되는 흉년으로 지역민들은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안착시키는데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재정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지방에 파견되어 직접 백성들을 대면하던 수령들은 중앙정부와 백성과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전달하여 조정하거나 타협하지 못하고 오로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앙정부의 지시를 실행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 실무자인 아전들은 백성들의 곤란한 생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몰두했다.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은 자신들과 직접 대면하는 아전이나 수령에게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민란에서 타도의 대상이 대부분 아전이나 수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방의 양반에게 향한 것은 이러한 상황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1 한문중, <《홍재일기》해제> 참조.

2 《홍재일기》를 이용한 연구가 김철배의 <전라도 부안 土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등이 있다. 본 논문을 작성하면서 여러 연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특히 임혜영의 <일기를 통해 본 지방 사족의 일상생활>과 김영준의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訓執)의 역할>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1) 향회(鄉會)를 통한 의견 수렴과 결정

그러나 《홍재일기》에 나타나는 부안의 모습은 이러한 이해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지역의 중대사를 향회(鄉會)에서 논의하여 해결했다. 예컨대 1866년 9월 5일의 일기를 보면 향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

8일 향회에서 소군(小軍)을 충원하려고 한다. 동원(東園)에서 향회를 한데 오늘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큰 마을은 두세 명, 작은 마을은 한두 명으로 정해진다고 하였다.³

위 일기에서 말하는 ‘소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과 지방에서 배정된 군정(軍丁)이 아니라 지방에서 임시로 동원하는 군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이나 아전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소군을 배당하지 않고 향회를 통해서 그 인원수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향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마을 단위의 면회(面會)가 다시 송재(宋齋)에서 열렸는데 기행현이 살던 마을에서는 같은 달 8일에 면회가 열렸다. 그의 일기에 “송재에서 면회를 했다. 소군 2명이 이 마을에 배정되었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⁴ 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회에서는 고을의 중대사를 결정했으며 이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진신유사(縉紳有司)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달 20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본읍에서는 정언(正言) 김양묵(金養默), 만경(萬頃) 고제희(高濟羲), 정언 이규백(李圭白)으로 진신유사를 삼아 읍의 일을 각각 다스리게 되었다.⁵

이들은 모두 부안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살이를 했던 전직 관료들이었는데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언은 사간원에 속한 정6품 관리이며 만경은 만경현령을 가리켰는데 부안의 유림들은 이들을 고을의 대표로 선정하여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향회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참고로 김양묵은 1829년(순조 29)의 정시(庭試)에 급제했으며 이규백은 1846년(헌종 12)의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했다. 이에 비해 고제희는 무보(武譜)에 급제로 기록되었으나 정확히 언제 무슨 시험에 합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⁶

한편 이들이 임명된 것이 ‘진신유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향회에는 과거에 합격한 양반 이외의 임

3 八日鄉會 小軍充數之意 會于東園 至今未決 而大村或二三名 殘村或一二名爲定云(《홍재일기》 1, 1866. 9. 5.)

4 面會于宋齋 小軍二名入于此村云(《홍재일기》 1, 1866. 9. 8.)

5 本邑 以正言金養默 萬頃高濟羲 正言李圭白 爲縉紳有司 各領邑事(《홍재일기》 1, 1866. 9. 20.)

6 이들의 과거합격 사실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했다.

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홍재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남하향약안(南下鄉約案)에 진신유사가 부사과(副司果) 김양묵, 읍서기유사(邑書記有司)가 진사 백학래(白鶴來), 별유사(別有司)가 김병용(金秉鏞), 면서기유사(面書記有司)가 민치정(閔致鼎), 하유사(下有司)가 장달매(張達每)였던 점으로 미루어보면⁷, 다양한 임원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하유사 장달매는 그의 직책으로나 이름으로 미루어보면 양반이 아닌 평민이나 천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회에는 향약처럼 비양반들이 참여했을 것이므로 이들을 대표하는 하유사라는 직책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회와 면회에서 처리한 주요한 일과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1868년 10월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립하며 원납전(願納錢)을 거두어들일 때⁸, 1869년 10월에 파선(破船)의 세미(稅米)를 거두어들일 때⁹, 1870년 11월에 동포(洞布)를 거두어들일 때¹⁰, 1871년 9월에 서원복설을 상소할 때¹¹, 1881년 9월에 향교의 만화루(萬化樓)를 중수할 때 등이었다¹².

이처럼 국가나 지방의 크나큰 일들을 향회나 면회를 통하여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관례적이지 않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 등은 향회나 면회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하는 안건을 이처럼 향회나 면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향회나 면회의 개최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자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양반은 물론 평민과 천민까지 참여하는 향회나 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사를 묻고 숙의(熟議)를 통해 현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근대전환기 부안에서의 주목할만한 상황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2) 지역주민을 대하는 수령의 태도 변화

중앙이나 지방의 현안들을 지역주민들이 향회나 향약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수령이 그만큼 자신의 권위나 권한을 내려놓고 지역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부안에 부임했던 모든 수령이 다 그러한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이 무능해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를 향회나 향약에 위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에 부임했던 수령들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7 見南下鄉約案 則緝紳有司副司果金養默 邑書記有司進士白鶴來 別有司金秉鏞 面書記有司閔致鼎 下有司張達每(《홍재일기》 1, 1866. 12. 27.)

8 本面主人又傳下帖 大院位分付內 營建之役 去益浩大 內而京城五部 外而八道四都大小民人 與緝紳家 班戶廊屬 免身役之人 每員每人 當白錢一葉式 願納之意 營門甘結 付邑官家 以今二十三日鄉會之意 下帖(《홍재일기》 2, 1868. 10. 19.)

9 季叔父自鄉會所來臨 聞則破稅米 還徵民間之意 鄉會各從其畜主徵納云(《홍재일기》 2, 1869. 10. 27.)

10 下帖出來 洞布事鄉會日子 定于來月初四日云(《홍재일기》 2, 1870. 11. 27.)

11 今日鄉會 復院伏閣云(《홍재일기》 2, 1871. 9. 24.)

12 鄉校萬化樓重修事面會 儒學成冊 故往會于禮齋 成冊未修而來(《홍재일기》 3, 1881. 9. 27.)

그러한 수령 중의 한 명이 이재영(李載英)인데 그는 부임한 직후 중앙정부에서 유학전(幼學錢)을 책임지고 납부하라고 지시하자 자신이 직접 지역민들을 대면하여 효유하겠다고 했다.¹³ 당시 중앙에서는 전국의 생원진사와 유학들로부터 원납전 1냥 1전을 걷어 성균관을 중수하려 했는데 이때 걷어들이는 원납전을 ‘유학전’이라 명명했다.¹⁴ 그러나 그 명칭과 수납의 형태가 무엇이든 본질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각 고을에 일방적으로 배당되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부안 출신의 생원진사 합격자들은 그나마 이 원납전에 조금이라도 호의적일 수 있겠지만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유학들에게는 또하나의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재영은 지역민을 직접 대면하여 효유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부안의 수령 중에는 이재영과 같이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고 설득하고 지역주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지역주민의 칭송이 잦았다. 1867년(고종 4) 1월에 기행현의 친구인 허용(許瑢)이 수령에 대해 “힘써 민정(民情)에 뜻을 두니 대동(大同)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고 한다.¹⁵ 당시 부안현감은 이필의(李弼儀)였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보살펴주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청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상관이었던 전라감사 서상정(徐相鼎)으로부터도 극찬에 가까운 칭찬을 받았다. 《승정원일기》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전라감사 서상정의 장계에, ‘부안 현감(扶安縣監) 이필의(李弼儀)가 6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면서 많은 폐단을 다 바로잡아, 아전들은 그의 청렴과 현명한 점에 감복하고 백성들은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수선하고 관청의 청사를 수리하는 데에 모두 자신의 봉급을 출연하였고, 움[窩]을 설치하여 모곡(耗穀)을 받아서 특별히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였고, 일이 있는 곳마다 사비를 낸 것 등을 이루 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에 다 피폐해진 고을이 이제와서는 완전히 소생하게 되었는데, 한 번 임기가 찼다고 보고하고부터 백성들의 유임(留任)을 청하는 소청(疏請)이 날마다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잉임(仍任)시키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狀啓)가 이미 이러하니, 부안현감 이필의를 우선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¹⁶

이필의는 무려 6년간을 부안현감으로 재임한 후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했는데¹⁷ 그가 중앙으로 돌

13 見新官下帖 則以幼學錢責納事回諭云(《홍재일기》 2, 1869. 8. 12.)

14 聞京奇 則成均館重修之意 生進幼學願納一兩一錢式爲之 而今聞再修云矣(《홍재일기》 2, 1869. 7. 22.)

15 來時入許瑢氏家 談論極矣 本官評曰 力留民情 可觀大同云(《홍재일기》 1, 1867. 1. 18.)

16 《승정원일기》, 고종 6년 3월 11일.

17 弘文館啓曰 新除授副校理李弼儀 時在全羅道扶安縣任所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許遞(《승정원일기》, 고종 6년 7월 4일.)

아간 후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나서서 공적비를 세우자고 제안했다.¹⁸ 이처럼 부안현감으로 부임한 수령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양반과 평민이 경제적 부담을 분담

조선후기 내내 국가의 재정이 여러 사정으로 부족해지자 조선말기에는 정부가 각 지역의 거부(巨富)를 파악해서 이들로부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원납전을 거두어들였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68년(고종 5) 4월에 재정적 압박이 심하자 각 고을에서는 부자(富者)의 명단을 작성하고 쌀 1섬을 당백전 12엽(葉)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라는 조령(朝令)을 내렸다. 부안에 배당된 액수는 총 900석(石)이었는데 부안현에서는 이문영(李文永), 신공수(辛公守), 김양묵(金養默), 이운기(李運基), 임행진(林幸振), 신응환(辛應煥), 신극현(辛極賢) 등 여러 사람에게 분납하도록 했다고 한다.¹⁹

따라서 당시 부안지역에서는 이문영 등 7명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간의 조사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김양묵과 신응환이다. 김양묵은 부안의 대표적인 양반가문인 부안김씨 출신으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년에 문과에 합격한 후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남하향약안과 향회에서 거듭 진신유사에 선정된 인물이다.

신응환은 부안의 대표적인 아전가문인 영산신씨(靈山辛氏) 출신으로 시를 짓는 능력이 탁월해 서림정계(西林亭契)에서 여러 차례 선발되어 문집을 남기기도 했다.²⁰ 그는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로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이 그의 토지를 병작하고 있었다. 예컨대 1869년(고종 6) 9월에 추수할 무렵이 되자 작황을 살펴보기 위해 신응환이 병작지를 둘러보고²¹ 기행현이 두 달이 지나도록 병작료를 내지 않자 사람을 보내어 독촉했으며²² 그래도 납부하지 않자 10일 후 다시 사람을 보내어 거듭 촉구했다.²³ 신응환은 바로 이 해에도 전년처럼 원납전을 냈는데 이때에는 1만냥을 그리고 역시 전년도에도 원납전을 냈던 신공수는 3만냥을 냈다고 한다.²⁴

이처럼 1868년에 원납전을 낸 7명의 부자 중 겨우 두 사람의 신분만 확인되었는데 이문영과 이운

18 鄉校接人出來 傳回文 本官李雲弼碑役錢事 明日齊會云(《홍재일기》 2, 1868. 6. 8.) 이운필(李雲弼)은 이필의(李弼儀)와 동일인으로 원래는 이운필이었으나 이필의로 개명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19 朝令 各邑富者成冊 米一石當百錢十二葉換納云 故扶安九百石 李文永辛公守金養默李運基林幸振辛應煥辛極賢諸人 各分納云(《홍재일기》 2, 1868. 4. 8.)

20 應煥 字興三 號雲夫 純祖乙亥生 有詩集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慶熙宮衛將 誠先保族 孝行純至 再三綱錄 乙巳命旌 癸未一月十九日卒(《靈山寧越辛氏大同譜》 7, 243~244쪽.)

21 辛應煥看坪來到(《홍재일기》 2, 1869. 9. 4.)

22 辛應煥促捧畝稅次 送人出來(《홍재일기》 2, 1869. 11. 5.)

23 辛應煥畝稅促捧次 送人出來矣(《홍재일기》 2, 1869. 11. 15.)

24 禮洞金丈來臨 聞富者願納更出 本邑辛應煥萬兩 辛公守三萬兩云(《홍재일기》 2, 1869. 8. 21.)

기 및 임행진은 김양묵과 같은 양반 출신으로, 신공수와 신극현은 신용환과 같은 아전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은 더욱 면밀한 연구조사를 진행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유하게 살던 양반과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고을에 배당되었던 원납전을 납부하는 관행은 점차 확대되어 지역에 부과되던 여러 종류의 경제적·군사적인 부담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이전의 양반들은 으레 경제적·군사적인 부담을 나누어지지 않고 비양반인 평민과 천민에게 미루었다. 그러나 향회를 통하여 현안을 해결하면서부터는 양반과 비양반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1870년 12월에 향회를 열어 가복채(加卜債)는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지 않고 8전씩 내기로 하고 동포(洞布)는 매 호(戶) 당 1냥 6전 4푼씩을 내도록 했다.²⁵ 가복채는 가복전(加卜錢), 또는 줄여서 가복(加卜)이라고 하며 원래는 관아의 하리(下吏)들이 불법적으로 조세율을 높여 거두는 세금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리들이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회에서는 가복채를 인구 1명 당 8전씩, 그것도 평민이나 양반의 신분 구별없이 모두 납부토록 의결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산이 많은 양반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있었다. 예컨대 1871년 11월의 일기를 보면 “고복서원(考卜書員)이 나와서 고복을 하고 고채(考債)를 반호(班戶)는 1전, 민호(民戶)는 5푼씩으로 다시 정하고 결복(乞卜)은 1결당 1부 6속씩으로 완정하였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농사를 짓는 토지의 크기나 비옥도 등에 변화가 있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조사를 했는데 조사 행위를 고복(考卜)이라 하고 담당 구실아치를 고복서원(考卜書員)이라 했다. 이때 구실아치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고복채(考卜債)이다.²⁶ 그런데 이 고복채를 양반 호에는 1전, 그리고 비양반인 민호에는 그 절반인 5푼을 받았다. 같은 업무를 했더라도 그 대상의 신분에 따라 수수료가 이처럼 달랐던 것이다.

4) 수령의 흥학 정책 실시와 주민의 향학열 고취

조선시대 수령들은 대부분 부임 후 흥학(興學)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다. 수령칠사(守令七事) 즉 수령이 재임 중 힘써야 할 일곱가지 업무 중의 하나가 학교를 세우고 학풍을 진작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수령들은 부임한 첫날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가서 공자의 위패(位牌)를 살펴보고 낡은 향교 건물을 보수하고 자신의 봉금을 털어 훌륭한 훈장을 초청토록 하였다. 또 백일장 등을 자주 개최하여 문풍(文風)을 진작시키려 노력했다.

그런데 부안의 풍속은 ‘숭문학(崇文學)’ 즉 글짓고 공부하는 것을 숭상하였으며 ‘호순후(好淳厚)’ 곧

25 聞鄉會事 加卜債無民班八錢式爲之 洞布每戶一兩六錢四分式云(《홍재일기》 2, 1870. 12. 8.)

26 황현은 고복채에 대한 폐단이 유독 전라도에서 심했다고 주장했다. 民間舊有考卜債之例 而湖南吏尤橫 故考債尤重 每一結 有至徵租十斗者 至是 令民考卜 勿落吏手 然民習積威 尙听吏考 吏亦稍戢 每結徵錢一二百文 邑各不同 民情稍紓 然通國而計 湖南猶爲最重 而守令畏吏 過於平民 熟級不敢詰 或有反爲之地者(《梅泉野錄》, <考卜債>)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운 것을 좋아하여 군자(君子)의 고을로 알려져 있었다.²⁷ 그래서 부임하는 수령 들마다 학문을 진작시키고 공부하는 풍조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현재 향교 앞에 있는 비석 27기(基) 중 흥학비(興學碑)가 무려 7기가 된다. 이 비석들은 향교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설치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1868년(고종 5)의 《흥재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교에서 접인(接人)이 나왔기에 회문(回文)을 보니, 선사백일장(選士白日場)은 이달 23일이며, 전임 현감 조연명(趙然明)의 흥학비전(興學碑錢) 5전 5푼씩을 가지고 낙영재(樂英齋)로 모이라고 하였다.²⁸

향교의 접인이 나와 회문을 전했는데, 본 고을 수령 이운필(李雲弼)의 비역전(碑役錢)에 관한 일로 내일 모두 모인다고 한다.²⁹

향교의 유림들은 부안에 재임했던 수령 중 향교를 중수하거나 자신의 봉급을 털어내어 유명한 훈장을 초치하여 관내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거나 혹은 백일장을 자주 개최하여 문풍을 진작시킨 수령의 업적을 기려 불망비를 세워주는 것을 위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향교 앞에 서있는 불망비 중에 흥학비가 세워진 것은 이처럼 고을의 유림들이 수령의 업적을 기려 잊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1868년 4월과 6월 2달 사이에 조연명과 이운필의 흥학비를 세우기 위한 조처들이 있었다.

조연명과 이운필 같은 수령의 노력으로 부안 고을내에는 흥학의 분위기가 크게 진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관아와 향교가 있는 읍내의 자제들이 시를 짓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암자에서 공부하기 위해 산사를 찾는 경우도 있었다. 1866년(고종 3)의 일기를 보면 기행현이 칠성암(七星菴)에서 동문들과 과거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읍내에 사는 아동 유의열(俞宜烈)과 줄포에 사는 두 명의 김동(金童)과 함께 이곳에 들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풍축(風軸)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시구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³⁰

그런데 기행현이 유의열을 소개하면서 굳이 읍내에 사는 아동이라는 뜻으로 ‘읍동(邑童)’이라 칭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사는 거주지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관아가 있던 읍내(邑內) 혹은 읍중(邑中)에는 양반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아전 등 구실아치들이 살았기 때문에 읍내 혹은 읍중에 산다고 하면 자연히 그의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당시 구실아치들이 사는 부안 읍내의 아동까지도 시를 쓰는 열풍이 널리 퍼졌고 또 자신들이 쓴 시를 축(軸)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보여주는 것이 하

27 風俗 崇文學(出地志) 好淳厚(上同) … 君子鄉(金慕齋安國 按湖南 聞風俗之美 因名其鄉曰 君子 林石川億齡詩曰 甕井多君子 金門聚德星)(《扶安邑誌》1, <風俗>)

28 校中接人出來 視回文 則選士白日場 今月二十三日 前等趙永夏興學碑錢 五錢五分式 佩會于樂英齋云(《흥재일기》2, 1868. 4. 12.) 그런데 ‘永夏’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淵明’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으나 ‘淵明’은 ‘然明’의 誤이다.

29 鄉校接人出來 傳回文 本官李雲弼碑役錢事 明日齊會云(《흥재일기》2, 1868. 6. 8.)

30 邑童俞宜烈苗浦兩金童來到而今午去 探其風軸佳句甚多(《흥재일기》1, 1866. 10. 9.)

나의 풍습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점인(店人) 장학규(張學奎)가 기행현에게 와서 가끔 《시전(詩傳)》을 빌려가기도 했는데 그가 살던 곳이 옹점(甕店)이었다.³¹ 옹점은 사기 그릇 등 토기를 굽는 곳으로 이곳에 사는 장인은 원래 훈련도감(訓鍊都監)이나 어영청(御營廳)의 군병(軍兵) 및 여러 상급 관사나 여러 궁가(宮家)의 사내종이었다.³² 더군다나 옹점이 있는 곳은 옹기 빚기에 적당한 흙과 이를 구울 수 있는 좋은 땔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궁벽한 곳에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가장 교화하기 어려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주교도들이 탄압을 받자 이러한 곳을 찾아 도피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역이용하였기 때문이다.³³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도 이제는 시 짓는 열풍이 불어서 기행현에게 와서 《시전》을 가끔 빌려가곤 했다. 이는 근대전환기에 부안의 달라진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양반과 아전들이 함께 참여한 시회(詩會)

근대전환기에 부안의 풍속이 이처럼 변화하자 부임한 수령들은 더욱 문풍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1847년 7월에 부임한 조연명(趙然明)은 자신이 주관하는 시계(詩契)를 조직하고 문사(文士)들을 서림정(西林亭)에 불러모아 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러나 조연명이 체임한 후 이 시회가 한동안 열리지 않았는데 이운필(李雲弼)이 현감으로 부임하자 이를 부활시켰다. 1867년(고종 4) 11월에 기행현은 이 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개최 전날, 읍에 도착했고 다음 날 시회가 성대하게 열리자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5일: 부안 서림정 앞에 도착했다. 태수 조연명(趙然明)이 만든 계(稷)가 있었기 때문에 현임 수령 이운필(李雲弼)이 중수하여 다시 계를 이어가고자 하려는 뜻으로 계의 날짜를 내일로 정하였다. 그래서 밤에 읍 내에 있는 남하주인(南下主人) 이복(李福)의 집에 이르러 잤다....

16일: 온 고을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 서림정에서 수계(修稷)했다. 생황과 노래가 떠들썩하여 이날은 천하가 즐기는 날임을 알게 하였다. 친구 계첩(稷帖)을 보았다. 계장(稷長) 정언 김양묵(金養默), 그 다음은 진사 이겸술(李兼述), 이관술(李觀述), 이동식(李東植), 진사 백학래(白鶴來), 만경(萬頃) 고제희(高濟義), 주서 채대영(蔡大永), 정언 이규백(李圭白), 송방식(宋邦植), 허희(許績), 김규혁(金奎赫), ... 책실(冊室) 이현오(李玄吾), 엄석귀(嚴錫龜) ... 읍내 계원 신응환(辛應煥), 신동직(辛東稷), 신학조(辛鶴祚), ...

31 店人張學奎 詩傳第三卷借去(《홍재일기》 1, 1866. 9. 26.); 瓮店張學奎來到 詩傳第七卷俱解三卷借去(《홍재일기》 2, 1868. 9. 7.)

32 瓮店匠人 勿論兩局軍兵 及諸上司諸宮家奴子所屬 以陶爲業者 自本曹收稅取用(康熙戊午承傳)(《典錄通考》, <受教輯錄>)

33 민경은,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제학과 민속학전공 석사학위논문, 53~63쪽.

신종두(辛鍾斗), … 신재명(辛在明) 김명준(金明俊) … 모두 기록할 수 없다.³⁴

‘서림’은 ‘관아의 서쪽 숲’이라는 의미이며 부안현의 주산(主山)이자 관아의 바로 뒤쪽의 성황산(城隍山)에 있었다. 현감 조연명이 1848년(헌종 14)에 서림 주변의 풍치(風致)가 매우 아름다워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서림정계(西林亭契)를 조직하여 매년 봄가을에 한 차례씩 문사를 모아 시회를 개최했다고 한다.³⁵ 서림정계가 개최되는 날에는 부안현의 문사들이 모두 모여 글을 짓고 풍악을 울리며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 부안의 문사들이 모두 모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때 모인 문사들이 양반 출신 뿐만아니라 수령의 참모인 책실과 읍내 계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는 기행현이 기록한 친구계첩의 계원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양반 출신 계원으로는 계장인 김양묵 등을 비롯한 이겸술, 이관술, 이동식, 백학래 등이었으며 수령의 참모로는 책실 이현오와 엄석귀 등이었다. 읍내 계원인 신응환과 신동직 및 신학조 등은 모두 아전 출신이었는데 신응환과 신재명은 부자지간이었다. 읍내계원 중 신씨들은 대부분 《靈山辛氏大同譜》에서 찾아지는데 여기에 ‘유시집(有詩集)’ 즉 시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시적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준은 진주김씨 출신으로 영산신씨와 함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아전이었다. 이들은 서림정계에서 종종 양반출신의 문사를 제치고 장원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과 전주부 등지에서 실시하는 백일장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문명을 날리곤 했다.

근대전환기의 부안은 이처럼 신분상 차별이 심하지 않아서 양반과 향리 등 전 주민들이 어우러져 시회를 개최하여 전통시기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행현이 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읍에 도착하여 남하주인의 이복의 집에서 머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3.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은 근대이행기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행적을 분석해보면 전근대적 전통시기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대적

34 十五日 扶風西林亭前到 太守趙然明…之所作有稷故 時倅李雲弼…重修 更欲修稷之意 定日子于明日 故夜到邑底南下主人李福家宿 … 十六日 一郡畢集 修稷於西林亭 笙歌鼎沸 因知此日天下同樂之日也 見新舊稷帖 稷長金正言養默 其次李進士兼述 李觀述 李東植 白進士鶴來 高萬頃濟義 蔡主書大永 李正言圭白 宋邦植 許縉 金奎燦 … 冊室李玄吾 嚴錫龜 … 邑中稷員 辛應煥 辛東稷 辛鶴祚 … 辛鍾斗 … 辛在明 金明俊… 不可盡記(《홍재일기》1, 1867. 11. 15~16.)

35 西林亭 在衙舍西 憲廟朝戊申 縣監趙然明草創 後有蔡培 北有惠泉 … 因設稷 而每年春秋一次唱和(《扶安邑誌》1, <樓亭>)

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기행현의 일생을 크게 살펴보면, 크게 3 가지 변화가 주목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하여서 명확하게 시기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첫번째 주목되는 점은 과거준비생으로서의 기행현으로 1843년(헌종 9)부터 1869년(고종 6) 6월까지이다. 이 기간은 대략 그가 태어나서 27세가 되던 시기인데, 일기가 작성되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양반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서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대비했다.³⁶ 그러던 삶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학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망과 크게 관련이 있다.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과거시험을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는 과거를 포기하고 현실에 맞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고종 3) 3월 이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김병용(金秉鏞)과 백학래(白鶴來)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들과 접(接)을 구성하여 예재(禮齋)와 칠성암(七星庵) 및 김재(金齋) 등에서 과거응시를 위한 공부를 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향시(鄕試)에 응시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정시(庭試) 및 구일제(九日製)에도 참여했으나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³⁷ 그러나 1869년(고종 6)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자³⁸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그러하듯 과거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사실은 그가 향촌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행현은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향촌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관심이 커서 훈집(訓執)이었던 숙부를 도우며 지역내의 대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이를 계기로 1885년에는 직강(直講)을, 1891년에는 집강(執綱)을 1896년에는 사수(社首)를, 1897년과 1898년에는 훈약(訓約)을, 그리고 1904년에는 동약장(洞約長)을 맡았다. 아울러 향교의 석전대제나 여제 및 기우제 등의 제관을 역임하는 등 임원으로서 지역의 대소사에 간여했다.³⁹ 이 시기는 대략 1885년부터 1904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신분이 비록 양반이었지만 그 지위가 부안지역사회에서 그다지 알아주지 않는 하층양반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사실은 그가 집안 일 그 중에서도 특히 농사를 지어 재산을 축적하고 선조를 좋은 묘자리에 묻기 위해 명산을 두루 살펴보고 다녔다는 점인데 특히 말년에 이에 대해 더욱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전통시기에 살다간 유학자와는 달리 농사일에 직접 관여하고 어느 품종을 선정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남다른 지식이 있었다. 수시로 시장에 들러 물가를 알아

36 전경목,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동학농민혁명연구》 1, 2023. 참조.

37 앞의 논문 참조.

38 寅時逢喪(《홍재일기》 2, 1869. 6. 26.)

39 김영준,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訓執)의 역할-《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 77, 2023.) 57쪽.

보고 가격의 변동 등을 파악했다. 또 선조를 명당으로 알려진 곳에 묻기 위해 명산이 있다고 알려진 곳을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가사나 농사 등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파악해 대처했다. 그러한 면에서 그는 근대변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 임원에는 오르지 못하는 하층양반 출신

조선시대에는 향교에 출입하면 그 지방의 유림으로 인정되었다. 《홍재일기》를 살펴보면 1866년(고종 3) 3월에 기행현의 숙부는 친구와 함께 향교에 출입하고⁴⁰ 이듬 해 정월에 기행현은 사직대제(社稷大祭)의 축문(祝文)으로 임명되었다.⁴¹ 이처럼 그와 그의 숙부는 향교를 출입하고 또 향교의 유림이 주관하는 각종 제사에서 제관(祭官)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제와 칠성암에서 동문들과 설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 부안에서 유림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행현이나 그의 숙부가 향교에 출입하고 각종 행사에서 제관 등을 역임했지만 향교의 임원이 되지 못했다. 또 서림정계와 같은 시회에 자주 참여했지만 스승인 백학래나 동문 수학한 김영표 등은 계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의 이름은 등재하지 못했다. 같은 양반으로 향교에 출입하고 시회 등에 참여해도 백학래와 김영표와 기행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 혹은 유리천장 같은 것이 존재해 넘어가거나 깨뜨리기가 불가능했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868년(고종 5) 2월의 기행현 일기에 “우리 면의 훈집 임명장이 숙부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⁴²고 기록되어 있어서 기행현의 숙부가 훈집(訓執)에 임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안읍지》에 따르면, 훈집은 훈약(訓約)과 집강(執綱)의 통칭(統稱)으로 훈약은 각 면에 1명씩 두며 면민 중 사인(士人)으로 선택하여 임명하며 풍속의 위법한 것을 자세히 살펴 찾아내고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집강도 이와 같으며 면장 역시 각 면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었다.⁴³ 결국 훈집, 훈약, 집강 및 면장이 경우에 따라 달리 부르지만 한 명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의미하며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훈집의 담당 업무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목상 풍속과 기강을 규찰하여 바로 잡는 일이었지만 실제 담당 업무는 지극히 사무적이면서 동시에 번거로운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1868년(고종 5) 5월에 수령은 “각 면의 사수(社首)와 훈집을 동헌으로 불러들여 그 자리에서 당백전의 통용에 대해 대면하여 효유하였다. 각자에게 효유문 1본을 주며 내보며 ‘각자 너희 면에 돌아가 면회를

40 將黃昏之際 淳昌金□□字命表來到 與吾季父 卽入校中(《홍재일기》 1, 1866. 3. 10.)

41 逢內禮洞金永孝氏 問校中執事分正 則 … 社稷大祭首金彥徹 … 祝余云(《홍재일기》 1, 1867. 1. 27.)

42 本面訓執差紙 叔父名下出來矣(《홍재일기》 2, 1868. 2. 30.)

43 訓約(各面各一員 以士人擇差 掌糾檢風俗紀綱事) 執綱(上同 ○以上丁亥誌) 面長(各面一員)(《扶安邑誌》 1, <訓執>)

열고 효유하라고 하였다.”⁴⁴ 풍속과 기강과는 관련이 없는 당백전을 통용시키는 일에 대해 면민들을 효유토록 한 것이다.

또 갖가지 잡무로 수령이나 암행어사의 호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15세 이상의 원납인구(願納人口)로 성책(成冊)하여 보고하지 않은 일로 하체가 나왔는데 “훈집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읍저(邑底)에 와서 대령하라”고 하였다.⁴⁵

수령이 훈집들에게 읍저에 와서 대기하라고 한 것은 원납인구성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였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처벌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훈집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밖에 없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지휘를 받는 일조차 있을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사인 출신으로 훈집을 임명토록 규정했지만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양반들은 이를 기피하며 맡으려 하지 않았다. 하층양반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훈집을 맡거나 아니면 성공지향적인 비양반 출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기행현의 숙부나 기행현이 훈집을 역임하던 시기에 주로 하층양반이나 비양반들이 훈집을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친구 김성서(金聖瑞)가 향교로부터 와서 수령의 하체를 전하여 말하기를 “효열의 실제 행적은 밖에서 거짓으로 추천할 수 없고 각 면의 훈집 역시 반벌(班閥)이 있고 풍력(風力)이 있으며 물망(物望)이 있는 자로 선택하여 아뢰라”고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각 면의 훈집이 일체 바뀔 것이라고 한다.⁴⁶

앞뒤로 자세한 이야기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효열을 천거하는 일로 말썽이 있었던 것 같다. 조선후기에는 효자와 열녀 등을 추천해서 정려(旌閭)를 내려주고 그 후손들에게는 면역과 면세의 특전을 부여했는데 이를 주로 면에서 발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효자와 열녀를 면에서 추천하지 않고 외부에서 헛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추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은 그 책임자인 훈집을 명망과 위엄을 갖춘 양반으로 천거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비양반 출신이거나 명망이 없는 하층양반 출신의 훈집이 일체 교체될

44 各面社首與訓執 招致東軒 同席面諭 當百錢行用 各授曉諭文一本出送 各歸爾面 面會曉諭云矣(《홍재일기》 2, 1868. 5. 16.)

45 十五歲以上 願納人口成冊不報之事 下帖 訓執夙夜 來待于邑底云(《홍재일기》 1, 1868. 11. 5.)

46 金友聖瑞自校中來到 言官家下帖內 孝烈實蹟 外不得虛薦 各面訓執 亦以有班閥有風力有物望之人 擇稟云 故各面訓執 一體改替云矣(《홍재일기》 6, 1898. 3. 5.)

것이라 전망했다.

이처럼 훈집에 대해 지역사회의 상층양반들이 기피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행현은 자신의 숙부가 이에 선출되었을 때 일기에 “우리 면의 훈집 임명장이 숙부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록했을 뿐이었다. 결국 훈집은 궁핍한 생활을 하던 기행현이나 그의 숙부에게 궁여지책으로 말아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⁴⁷

2) 조선시대인에 머문 기행현

기행현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 모두 조선시대인이었다. 그는 친척이나 친지의 상장례(喪葬禮)가 있으면 거리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달려갔다. 또 그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얻었다. 자신의 아버지도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첩을 두어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정 내의 불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첩을 얻어 얻었다. 부인과 첩이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1872년(고종 9) 10월에 선산이 있는 회시동(回柿洞)에 4칸의 초가를 30냥에 구입하여⁴⁸ 첩을 들여 이곳에서 살도록 한 후⁴⁹ 선산을 둘러본다는 이유로 자주 첩가를 방문했다.⁵⁰

또 기행현은 가까운 친족의 단결을 위해 위친계(爲親契)를 조직하고⁵¹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행주기씨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 크고 작은 문중계(門中契)에도 적극 동참했다. 특히 경기도 고양에 자기의 조상인 기건(奇虔)의 신도비(神道碑) 제작을 위해 20냥을 거둬 보내기도 하였다.⁵² 또 사제 관계를 중시해서 문생계(門生契)도 주도적으로 조직했다. 1866년 9월에 백청전(白靑田)의 문하생 30여 명이 모여 스승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서 다시 송재(宋齋)에 모여 뒤편이를 했다.⁵³ 백청전은 1859년(철종 10)의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에 합격한 백학래(白鶴來)를 지칭하는데⁵⁴ 청전은 그의 호이며 부안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기행현은 이처럼 효에 바탕을 둔 가족 관계와 예를 바탕으로 하는 사제 관계에 충실한 조선시대인이었다.

3) 물가에 관심이 많았던 기행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행현은 전형적인 조선시대인의 사고와 행동을 하였지만 전혀 다른 새

47 조선후기에 지역사회에서 궁핍한 하층양반이 궁여지책으로 말던 직책 중 대표적인 자리가 좌수와 별감이었다.

48 往回柿洞 草家四間 三十兩買得而來(《홍재일기》 3, 1872. 10. 20.)

49 別家移舍于回柿洞(《홍재일기》 3, 1872. 11. 3.)

50 侍季父 往回柿洞省墓 留宿(《홍재일기》 3, 1873. 8. 9.)

51 爲親契也 與四五人 暢叙交情(《홍재일기》 1, 1866. 3. 29.)

52 高陽貞武公神道碑中止事 派錢四百兩內 八十兩門中當 三十兩送扶安 故二十兩備送(《홍재일기》 3, 1881. 5. 25.)

53 是日 陽山白靑田門生契也 團會三十餘人脩契 更會宋齋(《홍재일기》 1, 1866. 9. 15.)

5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로운 인간형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다음에 살펴보는 것처럼 물가에 관심이 많아서 수시로 시장을 출입하여 물가의 동향을 살폈으며 농작에서도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작물을 기르려고 시도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들도 주위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빌려주어 읽도록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행현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시장 뿐만 아니라 고부의 시장 등 여러 시장을 자주 돌아다니며 물가를 알아보고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판매도 하고 또 구매도 했다. 그는 물가에 관심이 커서 매달 마지막 날의 일기의 끝에 시가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그 처음은 1868년 2월이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⁵

시가(時價)는 조(租) 1섬에 혹은 6냥, 혹은 5냥 5전이라고 한다.⁵⁶

조 1섬에 대한 시가가 6냥 혹은 5냥 5전을 했다는 것인데 그 이후 매달 마지막 날에는 시가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傳聞)을 통해서 물가의 동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직접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같은 해 5월에는 남토(南土) 시장을 직접 방문했다.⁵⁷ 그후 인근의 사창시(社倉市)를 방문했는데 이때에는 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히 알아보고 직접 매매하기도 하였다.

사창시(社倉市)를 지나다 시가를 알아보니, 햅쌀은 1말 6되 5홉이고 묵은쌀은 1말 2되씩인데 당백전 1냥을 엽전 3전으로 쳐서 서로 매매하였다.⁵⁸

그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물품이 있는 곳이면 직접 방문하여 시가를 알아보았으며 자신의 집까지 방문한 제주도의 장사치와 흥정을 하기도 했다.

연동(蓮洞)에 가서 모시 값을 살펴보니 한 대(帶)에 10냥이 넘었다.⁵⁹

제주 배장사치(賈船人)가 나락 1섬을 당백전으로 6냥, 엽전으로는 1냥 2전씩 사가려고 왔으나 일이 여의치 않아 빈손으로 갔다.⁶⁰

55 기행현은 1866년 12월 30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든 노인들도 처음 겪는 큰 가뭄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봄과 여름에 나락은 1섬에 14냥, 쌀은 1냥에 5되, 참외는 1개에 5, 6푼이었다고 기록했다.(今年都是大旱之年 秋旱冬旱亦太甚 水泉枯渴 山野人民不得飲水 八十老人初見云 春夏租石十四兩米兩七刀 蔗一介五六分)

56 時價 租一石或六兩或五兩五錢云矣(《홍재일기》2, 1868. 2. 30.)

57 往南土市來(《홍재일기》2, 1868. 5. 6.)

58 過社倉市 觀時價 則新米一斗六刀五合 舊米一斗二刀式 以當百一兩葉三錢 相爲買賣矣(《홍재일기》2, 1868. 7. 19.)

59 往蓮洞 觀竹價 則一帶過十兩矣(《홍재일기》2, 1868. 7. 20.)

60 濟州賈船人 租每石 當百錢六兩 葉錢一兩二錢式 賃去次來到 而事不如意 空去(《홍재일기》2, 1868. 7. 22.)

그는 부안 내의 시장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의 태인(泰仁), 정읍(井邑), 고부(古阜), 김제(金堤)의 시장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다양한 품목의 시가를 알아봤다.

새벽에 태인에 가서 시장을 둘러보니 목화는 엽전 1냥에는 3근이고 당백전 1냥에는 2근이며 담배는 한 줌에 7, 8전이였다.⁶¹

뿐만 아니라 그는 우시장에도 관심이 많았다.

소시장에 갔다. 소가 많이 나왔는데 값이 비쌌다.⁶²

물가와 시장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다양하여 벼, 쌀, 모시, 목화, 삼[麻], 담배, 소를 비롯하여 담배대 및 붓과 먹 등 일상생활 용품 등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4) 다양한 영농 형태

기행현은 벼농사에 커다란 관심이 있는 일반 농부와는 달리 다양한 품종을 심어 가꾸는 밭농사에도 주목했다. 그는 집 뒤에 대나무를 심기도 하고⁶³ 물미나리를 기르며 다른 사람에게 종자를 빌려주기도 했다.⁶⁴ 밭에 목화를 파종하고⁶⁵ 논두렁에는 콩을 심었다.⁶⁶ 밭에 마(麻)를 심고 모시를 거두기도 했으며⁶⁷ 무를 심기도 했다.⁶⁸ 그는 논과 밭 혹은 공한지(空閑地)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병작(并作)과 자경(自耕)을 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토지를 병작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농업 형태를 영위했다. 우선 그가 궁방전(宮房田)을 병작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둔감(屯監) 하인이 와서 세금 배분장을 전하기에 보니, 세를 1부(負)에 7전 2푼씩 거두어 내라고 한다.⁶⁹

둔감 하인이 와서 둔세 납부를 독촉하였다.⁷⁰

원래 둔감은 둔전을 관리하는 구실아치였는데 여기에서의 둔감은 내수둔감(內需屯監)이라고도 칭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내수사의 궁방전을 관리하는 구실아치로 보인다. 부안은 조선후기에 용동궁

61 曉往泰仁觀市 則木花葉一兩三斤 當一兩二斤 南草一把 七八錢矣(《홍재일기》 2, 1868. 8. 10.)

62 往牛市 牛多出而價高(《홍재일기》 3, 1872. 12. 10.)

63 집 뒤에다 대나무를 심었다.(1869. 3. 3.)

64 석제에 사는 이병득(李炳得)이 와서 물미나리 종자를 빌려갔다.(1869. 3. 6.)

65 목화를 파종했다(1869. 3. 20.)

66 1869년 5월 19일

67 5월 15일: 회시동에 가서 첫 모시를 거뒀다. 6월 15일: 마를 삶았다.

68 1881년 윤7월 10일

69 屯監下人出來 屯稅排章傳見 則屯稅一負七錢二分式收納云矣(《홍재일기》 2, 1869. 10. 1.)

70 屯下人來到 屯稅促責矣(《홍재일기》 2, 1869. 10. 8.)

소유의 궁답이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둔감의 하인이 기행현에게 와서 세금배분장을 전달한 이유는 그가 내수사의 궁방을 병작하기 때문에 그 소작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자 둔감 하인은 다시 와서 독촉하고 있음을 위 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가 경작하던 궁방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개인의 토지도 병작하고 있음을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는데 그는 아전인 신용환의 토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신재명과 고사심(高士心) 등의 토지도 병작하고 있었다. 1873년 9월의 일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읍내에 사는 신월여(辛月如)가 간평(看坪)하러 다녀갔다.⁷¹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고사심이 간평하기 위해 어제 저녁에 와서 자고 오늘 갔다.⁷²

추수가 끝날 무렵이 되자 토지를 빌려주었던 주인들이 작황을 살펴보고 그 해의 세금을 건기위해 간평을 하러 왔던 것이다. 신월여는 신재명(辛在明)으로 신용환의 아들이며 자(字)가 월여(月汝)인데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사심도 지주의 하나임이 분명하나 사심은 본명이 아니고 자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일기에는 논의 주인으로 추정되는 임여홍(林汝弘)⁷³과 허석사(許碩士)⁷⁴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토지를 병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행현은 남의 땅을 빌려 부지런히 경작하여 재산을 조금씩 늘린 후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자경했다. 우선 그가 토지 매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양언(金陽彦)과 함께 마항(馬項)에 가서 창전(蒼田)에 사는 양상풍(梁相豐)에게 이곳의 논 7두락을 13냥에 매입하고 문서를 만들어 왔다.⁷⁵

저전(苧田) 한 곳을 사두었다.⁷⁶

봉은동(鳳隱洞) 마을 뒤에 선산 금양처(禁養處)를 23냥에 사두었다.⁷⁷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고규상(高圭相) 집에 가서 21두락의 논을 155냥에 구입하고서 문서를 받아왔다.⁷⁸

기행현은 이처럼 농작을 통하여 수익을 남길 때마다 논과 밭 그리고 산지 등을 구매하였는데 논과

71 邑內辛月如 看坪來去(《홍재일기》 3, 1873. 9. 4.)

72 露積里高士心看坪次 昨暮來到宿 今日去(《홍재일기》 3, 1873. 9. 6.)

73 支石里林汝弘 沓事來去

74 昨日城山許碩士 以賭租事來去

75 與金陽彦 偕往馬項蒼田梁相豐處 此畝七斗落 以十三兩文 成文而來(《홍재일기》 2, 1868. 12. 9.)

76 苧田一垧買置(《홍재일기》 2, 1869. 1. 10.)

77 鳳隱洞村後先山禁養處 以二十三兩買置(《홍재일기》 2, 1869. 1. 30.)

78 往露積里高圭相家 二十一斗落畝 以百五十五兩 受文而來(《홍재일기》 2, 1870. 1. 27.)

밭은 가족과 노비 및 머슴을 동원해서 경작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머슴과 노비가 품팔러 집에 입출입하거나 도망한 사실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이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던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머슴[雇奴]으로 13살 먹은 아이 최대성(崔大成)이 어제 저녁 들어왔다가 오늘 나갔다.⁷⁹

머슴 김용술(金龍述)이 새로 들어왔다.⁸⁰

머슴 이용업(李龍業)을 얻어 왔다.⁸¹

사내종 판실(辦實)과 계집종 나금(羅今)이 어젯밤 도망갔다.⁸²

기행현은 이처럼 가족과 머슴 및 노비를 동원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와 궁방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토지에서 경작을 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와 산지 등을 매입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매입한 토지가 많고 경작할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병작을 준 사실도 있다.

백석리(白石里)에 가서 간평하고 왔다.⁸³

일기에는 백석리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백석리에 가서 간평을 한 이유는 자신의 논이 그곳에 있어서 그 해의 도조(賭租)를 받기 위해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개방된 사고의 인간형

기행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책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서책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후기에는 지방에서도 민간출판업자에 의해 서책 간행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서책의 시대라고 칭할 정도였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이를 구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리고 서책이 고가였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책을 구입해 소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기행현들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뜻 빌려주고 반환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가 책을 빌려준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1868년 9월과 10월의 기록만 보면 다음과 같다.

79 雇奴十三歲童崔大成 昨昏入來 今日出去(《홍재일기》 2, 1869. 1. 27.)

80 雇奴金龍述新入

81 僱奴李龍業得來(《홍재일기》 2, 1869. 11. 19.)

82 奴子辦實婢羅今 昨夜逃走(《홍재일기》 3, 1872. 1. 25.)

83 往白石里 看坪來(《홍재일기》 3, 1873. 9. 22.)

옹점(瓮店)에 사는 장학규(張學奎)가 와서 《시전(詩傳)》 제7권과 언해(諺解) 3권을 함께 빌려갔다.⁸⁴

배장흠(裴璋翕)이 《시전》 제2권을 빌려갔다.⁸⁵

행산(杏山)에 사는 내당질 김정종(金景種)이 《시전》 초권(初卷)을 빌려갔다.⁸⁶

배장흠이 《시전》 제 3, 4, 5권과 《언해》 1권 도합 4권을 다시 빌려갔다.⁸⁷

장학규와 배장흠 및 김정종 등이 기행현이 소장하고 있던 《시전》과 《시전언해》를 빌려갔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시(詩)를 짓지 못하거나 모르면 행세를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조선후기에는 사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 중에도 시를 짓고 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시전은 그들에게 반드시 읽고 암송해야 하는 교과서였다. 이외에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책은 《논어》를 비롯하여 《시전》, 《서전》, 《주역》, 《주주벽(周珠碧)》, 《주역구해(周易俱解)》 등이었다. 기행현은 이처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을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빌려주곤 했다.

한편 그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과 폭넓은 교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와 절친하게 지냈던 아전 신응환은 면으로 출장나왔다가 늦어지면 대부분 그의 집에서 자고갔으며 반대로 그가 읍내에 들렀을 때에도 역시 신응환의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1868년 10월에 그는 서림정의 시회에 참여했는데 이 날은 참여자가 적어서 고을 선비와 아전 10여 명이 겨우 모였다. 그러나 수창(酬唱)을 하다 늦어져서 신응환의 집에서 머물렀다.⁸⁸ 그는 아전인 김사여(金士汝)와도 절친하게 지냈는데 그 역시 신응환과 마찬가지로였다.

읍에 사는 김사여가 저녁에 비가 오는 중에 와서 자고 갔다.⁸⁹

한밤중에 검세리(檢稅吏) 김사여가 왔다. 함께 백석(白石)에 사는 친구 최태보(崔泰甫)의 집에 가서 잤다.⁹⁰

검세리 김사여가 본 면의 주인[本面主人]과 함께 와서 잤다.⁹¹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출입하는 장소가 달랐다. 같은 향교에 출입해도 양반은 동재에 기거했으며 비양반은 서재에 기거했다. 서원과 서당도 마찬가지여서 양반이 출입하는 서당과 평민이 출입하는 서당이 달랐다. 같은 동네에서도 양반들이 모이는 사랑방과 평천민이 모이는 사랑방이 달랐다. 그런데 기행현의 사랑방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반과 구실아치들이 함께

84 瓮店張學奎來到 詩傳第七卷俱解三卷偕去(《홍재일기》 2, 1868. 9. 7.)

85 裴璋翕 詩傳第二卷偕去(《홍재일기》 2, 1868. 9. 18.)

86 杏山內堂姪金景種 詩傳初卷偕去(《홍재일기》 2, 1868. 9. 29.)

87 裴璋翕詩傳第三四五卷解一券 合四卷更借(《홍재일기》 2, 1868. 10. 2.)

88 午後 往西林亭 鄉士鄉吏十餘員會 … 夜宿辛應煥家(《홍재일기》 2, 1868. 10. 3.)

89 邑居金士汝 暮天雨中來宿去(1886. 5. 9)

90 夜半檢稅吏金士汝來到 故偕往白石崔友泰甫家宿(1889. 12. 24.)

91 檢稅吏金士汝 本面主人來宿(1890. 4. 11)

와서 기거하였다. 이는 그 집주인이 신분에 따라 사람을 가려 기거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또 그 집을 출입하는 사람도 이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맺음말

기행현의 《홍재일기》는 근대전환기의 부안의 여러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세밀히 연구할 경우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전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사료를 통해서 동학농민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한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단기간의 성공으로 끝나버렸지만 전주감영을 점령하여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홍재일기》를 분석하여 근대전환기에 부안에서는 지역의 대소사를 향회와 면회를 통해 해결했음을 밝혔다. 양반들을 위시하여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현출하고 숙의를 통해 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많은 경험들을 축적했고 이곳이 훗날 집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조선후기 내내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역의 부유한 양반과 아전들이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소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학농민전쟁 발발 후 가장 적은 희생자를 낸 고을이 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편 기구만장한 삶을 살아온 기행현의 행적을 분석해보면 그는 하층양반에게 굴레 씌워진 갖가지 제약을 스스로 벗어 던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도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낡고 묵은 전통시대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의 머리는 실용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였으며 눈은 합리적인 근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는 낡고 묵은 전통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일러주는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전환기 부안의 상황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토론문

김경성(부안문화원 사무국장)

전경목 교수님의 논문은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기에 이르는 부안 지역의 사회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대 전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을 규명하려는 논문이다. 『홍재일기』는 이 시기의 부안 지역의 일상, 경제활동, 문화생활, 인간관계, 제도운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생활사를 보여주고 있다.

교수님은 이를 통해 전통적인 조선 후기 사회 구조 속에서 형성된 인물상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특히 전근대적 유학자상과는 다른 합리적·실용적 사고를 지닌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을 부각시켰다고 논술하고 있는바, 이 논문은 단순한 지역사 서술을 넘어, 조선 후기와 근대 초의 과도기적 사회 변동과 인간상 변화를 다루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먼저 향회(鄕會)와 면회(面會)를 통한 의사결정에 있어 기존의 조선 후기 지방사회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지방관과 아전의 가혹한 세금 징수, 주민 불만과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홍재일기』에 보이는 부안은 다소 다른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군역 동원, 세금 부과, 서원 복설, 향교 건물 중수 등 중요한 사안이 향회와 면회라는 회의체를 통해 논의·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양반뿐 아니라 평민, 천민까지도 하유사 등의 직책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부안이 단순히 상층 양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인 자치였는지, 아니면 중앙과 지방 관청의 부담 전가를 합리화하는 수단이었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민을 대하는 수령의 태도 변화는 부임한 일부 수령이 권위주의를 버리고 주민과 직접 소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필의(李弼儀)는 1864년 6월부터 1869년 7월까지 6년간 재임하며 민생 안정과 공공사업에 봉급을 기부하였고, 특히 삼암(三巖) 조연명(趙然明) 현감이 세운 서림정을 계(契)를 만들어 시회를 열고 중수하는 등 유림들과 소통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주민뿐 아니라 상급 관청에서도 칭송받아 이들 현감을 기리는 ‘임정유애비(林亭遺愛碑)’가 국가산립자원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또한 1869년 7월에 부임하여 1870년 3월까지 역임했던 이재영(李載英)은 ‘유학전’ 징수 시 직접

주민을 설득하였다.

다른 사례를 하나 보면 1873년 12월에 부안 현감으로 부임 직후 이현영(李鑑永)은 고을의 당면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자신이 구상하던 교화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당시 부안의 최대 현안은 관내 격포(格浦)에 설치된 조창(漕倉) 문제로 1873년 정부는 부세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격포에 조창을 설치하였고, 부안을 비롯해 7개 고을의 대동세(大同稅)를 옮겨오게 했다. 하지만 이 조치는 7개 고을의 부세 부담을 가중시켰다. 7개 고을 백성들은 원정(願情)을 올려 그것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정부는 그 실상을 파악한 후 1874년 3월 조창 혁파를 지시하였다. 이현영은 부임 초기 조창으로 인해 발생한 고을의 여러 문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수해로 해변의 민가가 많이 침수되자 돈을 내어 구휼하는 등 민심 수습에 힘을 기울였다. 당면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되자, 1874년 9월 각면(各面)의 향약장(鄉約長)과 강장(講長)을 선임하고 고을 단위의 향약 시행과 강학 활동을 위해 관련 조직을 결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 1875년 1월 27일 향음주례를 거행하여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향촌의 유림들과 협력하며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새로운 수령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부안만의 특수한 현상인지 당시 전국적 보편성 때문인지는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부담의 공동 분담은 조선 말기 국가 재정 악화로 세금·부역이 늘었지만, 전통적으로 평민·천민이 이를 전담했다. 그러나 근대 전환기의 부안에서는 양반과 평민이 부담을 나누고,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신분제 원칙에 반하는 변화로, 비록 신분제 해체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세금 구조 완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안은 숭문학 풍속이 강해, 수령과 유림이 학문 진흥에 적극 나섰다. 백일장, 시회(서림정계) 개최, 향교 중수, 명망 있는 훈장 초빙 등 활동이 활발했다. 시회에는 아전 출신 문인도 참여해 장원을 차지했으며, 이는 신분 장벽 완화의 한 단면이다. 향교 앞에 세워진 흥학비는 교육 진흥에 기여한 수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이며, 교육·문화·행정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주고 있다.

『홍재일기』의 내용을 통해 기행현의 생애에서 나타난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실용주의 형 양반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새로운 인간형’이라는 단어로 제시하여 주었다.

기행현은 하층 양반 출신으로 과거 준비를 하다 부친 사망 후 현실적인 생계 활동으로 전환했다. 향촌 실무직(훈집, 집강, 사수 등)을 맡고, 농업 경영과 시장 활동에 적극 나섰다. 그는 문종과 사제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 유학자의 가치관을 지니면서도, 물가 변동 관찰, 작물 다양화, 경제 합리성 추구 등 근대적 실용성을 보였다. 이러한 이중성은 근대 전환기의 과도기적 인간형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경목 교수님의 논문은 『홍재일기』라는 귀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전환기 부안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향화·면회, 수령의 역할, 세금 분담, 흥학 정책, 시회 운영, 그리고 기행현이라는 인물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구조와 인간상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부안의 사회상의 모습을 『홍재일기』를 통해 부안 지역사 뿐 아니라 한국 근대전환기 지역사와 인간상 연구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논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교수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4가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향회·면회의 자치성에 있어 주민 참여 확대라는 긍정성과, 부담 전가라는 부정성이 공존하고 있는데, 실질적 의사 결정권이 지역민에게 있었다고 보시는지?
- 수령의 역할과 지역 사회에 있어 부안의 협력적 수령의 모습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보편 현상인지, 특정 지역·인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 신분제 변동과 한계에 있어 세금 분담·문화 활동에서 신분 장벽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하층 양반이 주요 임원직에 오르지 못하는 장벽은 여전했다. 이는 신분제 해체 전의 점진적 변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는지?
-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인간형'의 범주와 평가에서 기행현은 전통과 근대를 아우른 인물로, 경제적 합리성과 실용주의를 실천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기행현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예외인지, 아니면 당시 지역 유림 전반의 경향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안의 기록물인 『홍재일기』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민속 등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좋은 사례 연구를 해 주신 전경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총괄: 김양식 (연구소장)

기획: 이병규 (연구조사부장)

진행: 김미연 (연구조사부)

지원: 정유리 (연구조사부)

인쇄: 2025년 8월 18일

발행: 2025년 8월 20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누리집: www.1894.or.kr

전 화: 063-530-9431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5

편집인쇄: 흐름(www.heureum.com)

본 학술대회와 자료집은 부안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비매품〉